

KIPF Public Institutions Issue Focus

KIPF 공공기관 이슈포커스

—
2017 | vol. 22



● 권두언

04 공공기관 통합공시의 성과와 발전 방향 | ()

● 전문가의 눈

08 협업의 필요성과 제약 | ()

13 공공기관 성과정보의 활용체계 개선방안 | ()

17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발전방안 | ()

● 심층동향

26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황 및 활용 방안 | ()

42 월성 1호기 계속운전처분 취소 판결과 시사점 | ()

54 정책금융기관 현황 및 쟁점 | ()

72 뉴스테이 현황 및 쟁점 | ()

88 공공기관과 고용정책 | ()

113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현황 및 쟁점 | ()

● 해외동향

140 중 국 | 중앙국유기업 책임자 경영실적평가방법 개정

148 OECD | 해외 주요국의 공기업 소유권 모델 및 공시 체계

158 베트남 | 베트남 공기업 개혁과제 추진현황

165 중남미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공기업 이사회의 효과성과 구조(1)

● 정책동향

176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87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196 2016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소통의 장

기관장 인터뷰

208 충남대학교병원 송민호 원장

전문가 좌담회

226 공공기관 통합공시 발전방향



경영연구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기관 통합공시의 성과와 발전 방향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면서, 언론은 한동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다각도로 보도하였다. 이때 언론이 비정규직 통계를 언급하며 밝힌 정보의 원천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이다.

공공기관은 경영공시제도에 따라 최종적인 소유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에 의한 경영감시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동법의 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제도는 경영공시 항목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알리오 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에 의한 직접적인 감시·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이 최종적인 소유주임에도 정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영정보 공개는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상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감시효과도 가져다준다.

공공기관이 300여 개가 넘다보니, 개별 기관에 대한 정보보다는 전체 또는 일부 기관들에 대한 집합적인 정보가 감시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통합공시는 정보 항목의 수, 공시 방식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알리오시스템은 2006년 20개 항목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40개 항목을 공시하고 있다. 지난 5년간은 양적인 확장과 더불어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 공시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의 정확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을 제고하고, 의도적인 불성실 공시를 뿌리뽑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용자의 편의 측면에서의 개선도 이뤄졌다. 2015년에는 민간기업의 공시시스템인 DART 수준으로 알리오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또한, 표준화라는 이점을 살려 수치화된 주요 항목은 공공기관 간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시켰고, 국민, 특히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에 의한 감시가 가능해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상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2016년 6월부터 1년간 알리오의 40개 항목 중 가장 많이 인용된 항목은 직원평균보수로서 409건 중 89건을 차지한다. 여기에 임원연봉 현황까지 합치면 116건으로 전체 기사의 28%에 해당한다. 보수와 연봉 관련 뉴스는 대부분 보상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내용이었다.

양적인 성장, 정확도 개선 등 지난 10년간 통합공시제도는 쉽없이 발전하면서, 공시시스템으로서 기본을 충실히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해 통합공시제도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와 정보 공시의 효율화를 요구받고 있다. 국민에 의한 직접적인 감시를 지원하는 체계를 표방하고 있으나 알리오 시스템을 손수 이용하는 일반인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언론이 선택한 내용을 접하고 있을 뿐이다. 현실에서 개별 국민에 의한 감시가 쉽지는 않겠으나, 적어도 이의 전제가 되는 정보 제공 방식은

개별 국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 알리오 시스템상의 정보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가공 자료(raw data) 수준으로, 특정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정보의 함의를 쉽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시방식의 효율화도 필요한 부분이다. 공시는 관리자인 기획재정부와 정보의 생산·제공자인 공공기관 양측의 노력이 함께 투입된 산물로서, 이들의 적지 않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과 비교하여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알리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항목들이 적정한지, 각 항목이 생산·제공되는 방식이 효율적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합공시 제도는 경영공시의 주요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적으로 공시함을 목적으로 하나 현재는 경영공시와의 차별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양 공시방식 간의 차별성을 회복함으로써 통합공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선방향이 될 것이다.

*

.< >

전문가의 눈

협업의 필요성과 제약

금현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공공기관 성과정보의 활용체계 개선방안

조문석 |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발전방안

윤지웅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01



금현섭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협업의 필요성과 제약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예를 들어, 저성장 기조,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양극화 등)은 난제(wicked problems)라는 말로 통용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슈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많아서 문제였지 적다는 것이 문제가 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다. 예상치 못한 문제인 만큼 대안을 찾기도 어렵고,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선진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방식도 적용하기 어렵다. 그들 역시 유사한 문제에 당면했거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그들과 견줄 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둘째, 문제 자체가 복잡적이기 때문이다. 이들 문제들은 어느 한 부처 또는 어느 한 분야에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양극화 문제는 더 이상 소득 차원에 그치지 않고, 고

용, 건강, 교육, 문화, 사회관계, 삶의 질까지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고령화 문제도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부양해야 할 청장년층은 물론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역시 상품·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 문화, 고용, 삶의 방식이 모두 연동되며, 부분의 해결이 전체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수도 있지만 도리어 부정적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마냥 추진할 수도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당면하는 문제들은 놀랄 만큼 새롭고 복잡한데 이에 대한 대응은 놀랄 만큼 그동안 익숙했던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저출산이 문제가 되니 출산을 장려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유인(특히 금전적)이 효과적이었으니 출산에도 유인을 제공한다. 중앙정부가 나서니 지방정부도 경쟁적으로 뒤따른다. 그 결과 관련 정책은 현재 약 200여 개가 넘고 있고, 이런 지원하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손해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난 10년의 노력에도 합계출산율은 도리어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성과가 변변치 않으니 이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거나 지원을 더 늘리자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난제의 의미는 문제의 성격에 있기보다는 대응 방식에 있는 듯하다. 마치 불만 나면 무조건 물부터 들이붓는 형국이다.

문제가 복합적인만큼 대응 역시 복합적이어야 한다. 걸친 분야가 복합적이고, 그 대상자가 복합적이며, 수요가 복합적이라면 그 대응 방안 역시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원만하고 체계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마치 길을 건너려 할 때 지름길(short-cut)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보행자의 특성에 맞게 안전하고 용이하게 건널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를 위한 기초는 해당 문제에 대한 수요자 입장에서의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분야별로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대응해왔다면 이제는 수요자 입장에서 복합적 수요에 맞게 공급자들이 뭉치고 흩어져야 한다. 분야별 정책대상자를 지목하기보다는 대상자에 따른 정책분야의 조합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 기관 간 협업(inter-agency collaboration)에 대한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유럽에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대응하고자 공공서비스 제

공방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3.0이라는 슬로건하에 기존 정부활동에서의 문제점 즉, 조직 간 할거주의의 폐해, 부문별 사각지대의 지속, 투입 대비 산출 측면에서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뿐 아니라 신규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제시되었다. 그 취지는 기존의 조직과 업무 범위 내에 안주하거나 또는 이를 지속적으로 확장해가기보다는 관련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에 대응하자는 것으로, 정보 개방과 공유, 그리고 소통과 협력이 그 전략으로서 제시되었다.

실제 지난 수년간 공공분야에서 협업은 다양하게 시도되었고, 일부의 경우 협업이 아니었다면 수행되지 않았을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심한 경우 협업 추진의 목적이 협업 그 자체인 경우도 없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협업이 갖는 장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충분해 보이며, 도리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로 협업의 작동방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혁명 이후 조직의 운영원리는 기본적으로 분업과 경쟁이라 할 수 있는데, 분업을 통한 전문화와 분업에 따른 분야 내 경쟁과 분야 간 경쟁은 획기적인 생산성 제고로 이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조정의 역할인데, 업무 또는 생산물이 수없이 많은 부분으로 분해될 수 있는 것은 조정이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전통적 조직 관리에서 조정은 대부분 위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 수행되어야 하는지가 권위와 정보관리를 통해 조정되었다. 하지만 협업처럼 상이한 기관 간 수평적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그리 용이하지 않다. 무엇보다 (잠재적) 경쟁 상대와 성과나 책임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분야와 같이 성과는 공유하고 실패는 전가하려는 경향이 높은 경우 더욱 어렵다. 그렇다보니 칸막이 경쟁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물론 공개,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협업의 전략은 어찌 보면 위계적 권위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교류를 이용한 자율적 조정을 기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협업과제가 형식적으로 추진되거나, 평가 지향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본래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인데, 정보 가치는 가산적(additive)이기보다는 가중적(multiplicative)이어서 규모가 클수록 활용 가능성이 높고, 활용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가치를 생성하기에 기관 간 정보공개와 공유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공개와 공유를 담당할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기제가 구비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지는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관 간 수평적 조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협업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협업은 단순히 문제 해결에 필요한 두 개 이상 기관의 협력 또는 이를 위한 관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협업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부가가치 특히 공공가치를 생성하는 일이다. 물론 기존 담당 업무에 기초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비공식적 네트워크나 단순한 협의에 의해 추진되기보다는 공식적이고 전략적이며 조정된 기획(coordinated planning)에 의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참여관계가 지속적일수도 없고 참여자의 사명감도 유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협업은 기관 간 동시에 참여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고, 다양한 기관과 다양한 시점에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협업관계는 다소 느슨해 보이지만⁰¹ 기관 간 업무재배열(reconfiguration)이나 거래관계(partnership)를 넘어서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협업관계의 특성은 조정기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협업이 조정된 기획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또 다시 top-down 방식의 조정방안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보다는 기관 간 상호작용이 일정 기간 유지되거나 반복될 수 있는 느슨하지만 굳건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수평적 조정은 제3자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복적 상호작용을 통한 기대이익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때 자발적으로 행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작 기대되는 것은 협업을 통한 목표 달성보다는

01 이때 느슨하다는 의미는 기관 간 상호작용이 일정 기간 유지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협업과정 즉, 문제해결을 위해 기관 간 긴장과 대응을 통한 상호 학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기관의 대안이 다른 기관을 자극해 새로운 대안을 유발하거나 환류를 통해 정체됨으로써 주어진 문제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대안으로 진화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협업은 기존의 정보·지식 및 기술의 호환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개발, 개선, 변형,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형적인 혁신체계(system of innovation)를 통한 혁신의 생성과정과도 유사하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의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의제가 제시될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은 정치적 지향과 상관없이,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 추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기관의 전략적 행태에 대한 개선과 협업의 본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에 대한 검토는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보인다.

* 본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조문석 교수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공공기관 성과정보의 활용체계 개선방안

성과관리의 목적은 조직, 인력, 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성과정보를 이용하여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평가제도에 대한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동법 제5장(평가결과의 활용)의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부터 제30조(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에 이르기까지 성과정보의 활용 방식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성과정보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조항 또한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과 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당초의 성과관리제도의 취지에 따라 성과정보가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이후 기관 차원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이 부여

되고 이에 따라 인사, 조직, 예산 등에서의 활용에 있어 과거에 비해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평가를 위한 보고서 작성과 같이 평가가 오히려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고, 평가를 통한 환류보다는 평가를 위한 평가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성과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을 개선하고 조직, 인력,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 전체의 책임성과 효과성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목표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목표 달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를 설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대상 집단이 다양하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수록 목표가 불분명하게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목표가 모호하게 규정될수록 성과지표는 공공기관 사업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며, 구성원들의 목표에 대한 몰입 수준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명확한 목표 설정이 불가능할 경우 성과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측정의 왜곡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의 불균형, 응답자의 주관성 개입, 기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 등으로 인해 성과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둘째, 목표가 모호하더라도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구조화된 틀이 제공된다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목표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한 구조화된 틀이란 어떤 자원을 투입하여, 수행한 활동과 산출물이 무엇이고, 이를 이용하여 당초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보고서는 투입과 산출 그리고 결과가 혼재되어 있어 무엇이 사업의 실제 성과인지 그리고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와 방식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성과정보에 대한 접근성 문제이다. 공공기관의 사업은 여러 부서의 활동에 기반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과측정 및 관리 과정에서 부서 간에 성과정보가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의 성과정보만으로는 공공기관 고유의 사업 혹은 활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성과정보를 확보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정 성과지표가 향상되었더라도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나 다른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과정보는 기관 내부에서 생산되기도 하지만 기관 외부에서 생산 및 관리되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기관과 기관 간에 성과정보의 공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정보의 공유를 기피한다면, 사업성과 확인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성과관리와 관련한 취약한 조직문화와 성과정보 활용에 대한 관리자의 낮은 관심, 그리고 성과계획 수립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구체적인 활용 방식의 미비 등이 공공기관 성과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공공기관이 수행 중인 사업 목적과 관련하여 성과측정 지표를 가능한 단순하고 명확하게 재설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복합지표를 구성하거나, 혹은 지수(index)를 구성하여 성과를 제시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복합지표나 지수의 수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가적인 설명과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외부에서 쉽게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복합지표의 경우 우수한 성과정보로 성과달성 수준이 미흡한 분야를 희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정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거나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과정보를 이용하여 공공부문 사업이 목표 달성 및 성과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의 성과달성 과정을 구조적으로 표준화하여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자원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의 활동을 통해 산출과 결과물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평가자나 공공부문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공기관 사업의 성과구조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논리모형과 같은 구조화된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과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 여부에 대한 타당성 있는 설명을 위해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면밀한 분석 작업이 요구된다. 즉, 공공부문의 사업이 성과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어느 정도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른 외생요인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논리모형을 토대로 구축된 이론 모형을 기반으로 성과 정보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인사, 조직, 예산, 사업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정보 활용 방식을 현재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과 달성 수준이 미흡할 경우의 대응 방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반영 비율, 사업 유형별 혹은 조직 단위별 성과평가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식과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성원들로 하여금 성과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활용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성과정보 생산 및 활용 과정에 관심을 갖고 활용함으로써 성과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본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윤지웅 교수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발전방안

현대 정책학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의 투자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인 성장동력 중 하나로 인식되었지만, 양(+의 외부성 문제가 존재하는 분야로, 각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1960년대 말부터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6년 한국과학기술원(KIST)와 1967년 과학기술처 설립을 시작으로, 민간과 공공의 연구개발 역량이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왔다. 특히, 198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연구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1990년대에는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연구개발 성과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은 다양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이제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시스

템에 있어서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소고에서는 지금까지 설립된 주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과 기준에 논의된 이슈를 검토하고,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발전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시장실패론, 내생적 경제성장론, 시스템 실패이론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정부가 국립연구소를 설립하여 직접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부가 필요한 연구 성과물이나 목표로 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이다. 둘째, 정부가 민간에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 또는 출연하는 경우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심화되면서, 연구개발 활동의 규모가 커지고, 이에 정부가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민간의 연구개발 역량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하면서 민간에 연구개발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Lepori et al, 2007). 그런데, 정부 관료는 민간의 연구자와 비교하여 다양한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해당 분야의 연구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 관료와 연구자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의 완화, 연구수행 주체의 다양화에 따른 수요충족의 어려움 극복, 급변하는 과학기술환경의 특성과 전문 분야의 성과관리를 이유로 연구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길우 외, 2009).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그 유형에 따라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부처가 직접관리’ 하는 단일단위 사업으로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형식의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직접관리 형태에 속한다(이길우, 2007). 두 번째로 ‘위탁관리’ 사업(PBS)으로 연구개발 수행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유형은 출연기관육성지원비, 교육공무원 인건비, 국공립(연) 및 출연(연)의 경직성 경비 등 별도의 체계적 기획·평가·관리 업무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임길환, 2015). 이 중에 연구관리전문기관⁰¹은 정부의 대리인 형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탁관리하는 기관

01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이다. 이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은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주무부처의 대리인 기관(agency)로서, 또한 국가로부터 예산과 관리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그리고 과학기술 국가혁신체제의 구성요소로서 다양한 부처들 및 행위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운영되어 왔다(홍지만, 2011).

구체적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 분석 등 연구개발 현장에서 연구개발을 희망하는 기술을 파악하는 수요조사 또는 사전조사부터,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관리한다고 볼 수 있다(이형진 외, 2015). 즉,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과제 수행 중 중간결과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하며, 과제의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파악한다. 또한, 연구기관 종료일 전에 정산관리와 최종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과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윤별아, 2016).

대한민국은 국가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1977년에 한국과학재단을 설립한 것이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시초라고 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의미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설립은 1980년대 들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다양한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시도되면서, 각 분야별 연구개발사업을 전문적으로 기획, 관리, 평가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변천 과정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태동기(1982~1992년), 도입기(1992~1998년), 분화기(1999~2004년), 확대기(2005년~현재)로 살펴 볼 수 있다(이길우 외, 2009). 구체적으로 보면, 1987년 과학기술정책평가센터를 시작으로, 정보통신연구관리단(정통부), 1993년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 연구기획관리단, 1995년 산업기술정책연구소(산자부) 등 초기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각 부처 산하 R&D기관의 부설센터 형태로 운영되거나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었다(이길우, 2009). 이를 바탕으로 1999년 이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설립,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

가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전문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었고, 연구관리 전문기관 설립이 본격적으로 분화 및 확산되었다.

2000년대 초·중반은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함께 연구관리 전문기관도 성장하는 시기였다. 2004년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된 것과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및 종합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 것과 함께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서 총괄기획·조정·평가·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개별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해당 조직의 R&D 전문화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의 규모를 키우는 바탕이 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2006년 과학기술부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효율화 방안’을 통해 부처별 전문기관 분산운영체제를 전제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는 적정규모의 연구기획·평가비와 전문인력 확보를 강조하였다(정용남, 2009). 또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 수렴 및 추진 방안 협의를 위해 1997년에 발족한 연구관리전문기관 협의회를 ‘연구관리혁신협의회’⁰²로 재출범시켰다.

이처럼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확대되면서 각 부처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관리기관들을 경쟁적으로 설치·운영해 왔기 때문에 기능중복 문제가 종종 제기되었고, 공공기관 개편 논의와 함께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범부처 통합논의가 존재하였다. 노무현 정부 때, 7개 부처 소관 14개 전담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운영되었고, R&D 기획, 평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타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12개 부처(청)에 약 30개 이상의 R&D 관리기관이 운영되고 있었다(이길우 외, 2009).

⁰² 연구관리혁신협의회(COFRA : Korea Council of R&D Funding Agencies)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위임·관리하는 13개(2017년 기준)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의 협의체

〈표 1〉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변천

구분	시기	세부추진전략
1단계 (태동기)	'82년~ '9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단위과제 중심, 연구과제 수행자가 과제수준의 Bottom-up 기획 - '87년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설립(과기부)
2단계 (도입기)	'92년~ '9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성과를 목표로 한 범부처 차원의 장기 대형 과제(G7), 전략개념에 의한 Top-down형 사업과 Seed 형성을 위한 Bottom-up 사업을 기본 골격으로 형성 - '92년 정보통신연구관리단(정통부), '93년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연구기획관리단(과기부), '95년 산업기술정책연구소(산자부)
3단계 (분화기)	'99년~ '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일류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특정 전략분야를 선정·지원,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점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사업단 중심의 운영체계 도입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시행, '99년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설립, '00년 한국환경기술진흥원, '02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설립 등 전문기관이 본격적으로 분화 - '99년 프론티어사업 착수, 사업단에서 기획·관리 업무 수행
4단계 (확대기)	'05년~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년 말 정부부처 간 R&D 사업 기능조정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발족에 따라 과학기술부 소관 사업 중 기초 원천 분야를 제외한 개발 산업화 분야는 산업자원부 등으로 이관 - 1부처 1전문기관 형태에서 기능이 분화되어 추진 사업 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이 세분화

자료 : 이길우 외, (2009).

하지만 부처와 연구관리 전문기관 수에 대한 부담이 있던 중,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부처가 통합되었고, 관련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통합 논의가 뒤따랐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합은 2008년 초 부처 통폐합 이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8년 8월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원을 중심으로 지식경제부 산하 7개 R&D 관련 기관이 통합되었다. 당시 한국산업기술평가원(1999), 한국산업기술재단(2001),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2005), 한국기술거래소(2000)는 해산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1999), 한국디자인진흥원(2001),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1999)의 R&D 기능만을 이관하여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개편되었다(지식경제부, 2009). 박근혜 정부 들어와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은 개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지식경제부 산하 6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2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연구개발 기능을 이관한 이후, 2014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개소하였다.

연구개발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어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획·관리·평가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 차원의 관점에서 정책목표가 명확히 설정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세부사업들이 기획과정을 통해 그 우선순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획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배분되고, 예산이 집행된 이후에는 성과평가를 근거로 성과 미달성의 원인 혹은 성과 달성의 요인을 분석하여 차기 전략기획과 예산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이형진, 2015).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시스템에서 위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이다. 이들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20조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근본 목적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시점에 다양한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이 설립되면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범위가 조금씩 다르게 확립되었다. 예를 들어, 출연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비출연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경우는 정부재원의 지원방식이 다르다. 이들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진정한 정부의 대리인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본 소고는 아직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진행 중이지만, 기존 문헌에서 많이 언급되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한 문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하나는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제도 확립이면, 다른 하나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연구관리 시스템의 정착이다.

1. 안정적인 조직의 운영 및 관리 여건 마련

조직이 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적절한 인력의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재원 마련이다. 이 두 가지가 적절히 확보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 취지를 살리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중에서 인력충원이나 관리 이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제를 받기에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수입구조를 보면, 정부출연금과 연구기획평가비, 그리고 정부수탁사업비가 주를 이룬다. 그 중 기관의 주된 임무인 기획, 관리, 평가에 쓰이는

주된 항목은 정부출연금과 기획평가관리비 항목이다. 그런데, 이 연구기획관리평가비의 산정기준이 공통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매년 사업을 기획, 관리, 평가하는 데 안정적인 임무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김민기 외 (2011)는 연구기획평가관리비 측면에서 연구기획평가비 운영체계, 해외사례의 특성 비교분석,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의 투입 및 산출요소로 DEA 분석을 통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획·평가재원에 대한 안정성과 독립성의 미흡이 기관 운영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송광석 외(2015)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예산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기관별 기획·평가·관리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차별적 지원방안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통합 정보시스템 및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2.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된 사업 관리

주인-대리인 이론은 이미 시장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민간부문에서나 공공부문에서나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바람직한 성과를 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공기업 민영화, 책임운영기관의 설립 등이 그 예로 들 수 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도 과연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조직의 주인의식 확보방안을 제안한다. 민간기업에서 주인-대리인 문제를 풀기 위해 활용하는 주인의식 확보방안은 지분공유 또는 주식옵션 같은 방식이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주인의식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율성은 자유와 규율, 즉 책임을 동반한다. 자율성을 주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세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정부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지나치게 미시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주어진 임무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을 보면, 연구관리 전문기관마다 그 역할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4항에서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기획, 관리, 평가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에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 통계작성,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또는 과제 기획, 관리, 평가는 주무부처의 권한이고 책임이다.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업무를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의 2).

이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사업이나 과제의 성과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관리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연구개발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확실성이 높아 성과를 거두기 힘든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더욱 더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조사분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정치적인 고려나 배려 없이, 해당 과학기술 분야의 세밀한 사업 기획과 관리, 그리고 평가 그 자체에 대한 자율과 책임을 줄 경우,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은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심층동향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황 및 활용 방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박미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월성 1호기 계속운전처분 취소 판결과 시사점

민경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정책금융기관 현황 및 쟁점

정예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뉴스테이 현황 및 쟁점

이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공공기관과 고용정책

서니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해외 자원개발 공기업 현황 및 쟁점

송신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황 및 활용 방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박 미 선⁰¹

I. 서론

- 빅데이터란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을 말함⁰²
일반적으로 빅데이터의 주요 특성을 규모(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로 보고 있음⁰³
3V(Volume, Variety, Velocity) 외에 가치(Value)나 복잡성(Complexity)의 특성을 추가하여 설명하기도 함
- 정부, 기업, 의료, 학술연구 부문에서 빅데이터의 가치가 입증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mspark@kipf.re.kr)

0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 보고자료 별지, 2011, p. 2.

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제193호, 2012, p. 70.

서 빅데이터를 도입·활용하고 있는 추세임⁰⁴

공공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비용절감, 부정 및 오류에 따른 손실 감소 등으로 한국의 경우 10.7조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EU의 경우에는 1,500억~3,000억유로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구글 등 글로벌 선진기업들은 웹사이트 방문기록, 검색통계, 소셜 미디어 기록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하고 있음

■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와의 융합이 친화적이기 때문에 ICT와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수집되는 빅데이터가 많고 활용이 용이함

따라서 경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빅데이터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힘(McKinsey, 2013)⁰⁵

미국 McKinsey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 전체 의료비 절감에 대한 중장기 기대효과를 계산한 결과, 최대 450억달러까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남⁰⁶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의료비 절감 기대효과를 산출한 결과 2011년 국민의료비 91조원을 기준으로 최소 5.5조원에서 최대 8.2조원에 달하는 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계산됨⁰⁷

■ 한국 또한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의 국가적·경제적 가치를 인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빅데이터 공개·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2011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정부 구현(안)」을 발표하면서 빅데이터 시대의 정부 역량 강화 및 ‘과학기술·의료’ 선진화를 강조하였음⁰⁸

2012년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04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 보고자료 별지, 2011, pp. 3-4.

0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정책동향』, 제8권 6호, 2014, p. 23.

06 『메디파나뉴스』, 「장밋빛 기대 건보 빅데이터?...누굴 위한 것인가」, 2014.07.02,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5356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검색일자: 2017.2.6.

07 각주 6)과 동일함

08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 보고자료, 2011.11.

에서는 ‘유전자·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등 데이터 개방 및 공유 확산을 강조하였음⁰⁹

2013년 5월에는 공공부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 평가 인증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하였음¹⁰

-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유 현황과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II. 공공부문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유 현황

- 공공부문에서 생성 및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황은 <표 1>과 같으며, 이하에서는 각 기관별로 보유·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살펴보았음¹¹

<표 1> 공공부문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유 현황

기관명	세부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정보¹⁾ • 자격 및 보험료 정보 • 건강검진정보 • 노인장기요양정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정보²⁾ • 의약품 정보 • 치료재료 정보 • 의료자원 정보 • 비급여 정보 • 의료의 질 평가정보 등
질병관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영양조사 • 지역사회건강조사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퇴원손상심층조사 등
국립보건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유전체정보(DNA, RNA, Protein, Metabolite, 임상연구 자료를 수집함)
국립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암등록자료 등

주: 1) 관련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임
출처: 1.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2.6.
2.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홈페이지, 검색일자: 2017.2.6.
3. 강희정 외 24명,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pp. 267-269.

09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2012.11.28.

10 관계부처 합동,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2013.6.19.

11 이 외의 다양한 기관에서도 기관의 고유한 업무 수행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 자료를 생성·보유하고 있음

1.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 보험 포함) 및 건강검진을 통해 수집된 자격 및 보험료 자료, 노인장기요양 자료, 건강검진 자료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다수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

건강보험 빅데이터¹²는 단일 보험자 제도하에서 수집된 국민 전체의 사회경제적 정보와 건강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시간적 선후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종단연구에 활용할 수 있음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통해 보건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큰 자료로 평가받고 있음¹³

〈표 2〉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보유 현황

DB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진료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명세서, 의료행위, 환자분류, 질병명, 수가 마스터 	당해 진료 대상자
자격 및 보험료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년월일, 성별, 나이, 거주지역, 사업자·가입자, 해외출입국자료 등 • 과세자료, 보수월액 • 국가유공자, 장애등급·장애유형 등 장애인 	건강보험 대상자
건강검진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일반, 생애전환기, 5대암, 구강 건강검진 • 생활습관, 가족력, 기왕력 등 문진 • 5대 암검진 결과정보 • 검진기관 기본·인력·시설 	당해 검진 대상자
노인장기요양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 신청내역, 노인상태 등 인정조사 • 등급판정 • 의사소견서, 장기요양급여 청구 및 심사, 기관평가 • 희망급여종류, 시설·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급여제공기록 등 • 장기요양기관 기본·인력·시설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및 신생아 • 회귀, 중증질환 등 환자등록 • 의료급여 자격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¹² 건보공단에서는 해당 정보를 '국민건강정보DB'라고 칭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자격 및 보험료, 건강검진결과, 진료내역, 노인 장기요양보험 자료, 요양기관 현황,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정보 등 1조 3천억건에 달하는 방대한 빅데이터임

¹³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내부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¹⁴ 웹사이트를 통해 보유한 자료 중에서 외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가공한 표본연구DB, 맞춤형DB, 각종 질병통계 등을 연구학술용으로 제공하고 있음

표본연구DB란 국민건강정보DB가 방대하고,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보에 대한 연구자의 접근과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표본을 추출하여 외부 공개가 가능한 형태로 규격화한 데이터를 말함¹⁵

- 표본연구DB는 동일 대상자에 대해 사회·경제적 변수(거주지, 사망연월, 사망사유, 소득수준 등)가 포함된 자격자료, 진료내역 및 건강검진자료 등을 연결한 코호트 자료로 장기간의 관찰이 가능함
- 현재 표본코호트DB, 건강검진코호트DB, 노인코호트DB, 직장여성코호트DB, 영유아검진코호트DB 등이 제공 중임

맞춤형DB는 표본연구DB로 구축하기 어려운 건강정보자료를 정책 및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맞춤형 자료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를 말함¹⁶

- 맞춤형 건강정보자료를 열람하고 분석할 수 있는 PC가 설치된 건보공단 내의 장소인 데이터분석실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통계분석 툴을 이용할 수 있음

〈표 3〉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공개 현황

DB 구분	세부 내용
표본연구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코호트DB(100만명, 14년간) • 건강검진코호트DB(50만명, 단년) • 노인코호트DB(50만명, 단년) • 직장여성코호트DB • 영유아건강검진코호트DB
맞춤형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연구DB로 구축하기 어려운 주제를 맞춤형DB로 가공 및 제공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중점개방데이터(1백만명, 3종) • 혈압·혈당 데이터(20백만명) • 신체계측데이터(18백만명, 5종)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¹⁴ 홈페이지 주소: <https://nhiss.nhis.or.kr/bd/ay/bdaya001iv.do>, 검색일자: 2017.2.6.

¹⁵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용어설명」, <https://nhiss.nhis.or.kr/bd/ab/bdaba016iv.do>, 검색일자: 2017.2.6.

¹⁶ 각주 14)와 동일함

- 자료는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웹사이트상에서 ‘데이터신청’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신청 → 서류심의결정(신청일로부터 25일) → 비용납부(신청일로부터 40일) → 자료수령(신청일로부터 45일)’의 단계를 거쳐 제공됨

표본연구DB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서를 신청단계에서 접수하여야 함

표본연구DB의 제공수수료는 1GB당 15,000원이며, USB 등 저장장치 비용 등을 포함한 반출비용은 자료 반출 요청 횟수당 35,000원으로, 학술연구 이용자는 기본비용의 50%, 대학원 이용자는 기본비용의 80%가 감액하여 적용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전체 국민의 진료정보와 의료기관, 제약회사, 유관기관 등 다양한 경로에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정제한 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8만 7천여 의료기관 청구자료 기반의 자료로 수집된 상병, 수술·처치 및 의약품 처방·조제 등의 데이터

생산·수입·사용 등 의약품 유통 정보, 의약품 인·허가 정보, 부작용 등 의약품 안전정보, 마약류 등 집중관리 의약품 융합 데이터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장비 정보, 의료기기정보, 의료처치용 치료재료 정보 등의 의료자원 데이터 등

〈표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보유 현황

DB 구분	세부 내용
진료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명세서 정보 (환자, 의사, 의료기관, 진료내역 등) • 의료행위 정의 및 환자 분류 정보 • 수가마스터 정보: 85,722개 ('15.5월) (분류 유형, 상대가치점수, 금액, 변경이력 등) • 질병군(DRG) 요양병원 수가 마스터정보 (분류군, 금액 등) • 의료행위별 심사기준 정보 (보장 범위) • 질병군(DRG) 요양병원 수가 마스터정보 (분류군, 금액 등) • 의료행위 18개 분류별 진료규모 정보 (진료량, 금액) • 질병군(DRG) 및 요양병원 진료규모 정보 (진료량, 금액 등) • 질병정보(주상병) 및 질병단위 진료규모 정보

DB 구분	세부 내용
의약품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의약품 마스터 정보: 17,750품목 등재 ('15.6월) (약효분류군, 성분, 금액, 제조사, 제품 형태, 투여경로 등) • 급여의약품별 심사기준 정보 (보장 범위) • 의약품 생산·제조 및 도매상 정보 •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제조·생산부터 유통 단계별 자료) • 급여의약품 사용 정보 • 의약품 안전관리 정보 (병용금지, 연령금지, 임신부 금지 등)
치료재료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재료 마스터 정보: 24,282품목 ('15.6월) • 의료기관 구매 정보 (구입일자, 구입단가, 구매수량 등) • 치료재료별 사용정보 • 특수 재료관련 정보 (복강경기술, 조영제 등)
의료자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기관 개폐업 정보 : 87,221개 ('15.4월) • 의료기관 시설 정보 (병상, 집중치료실, 수술실 등) • 인력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현황 및 자격 정보 • 장비 보유현황 (장비별 이력관리) • 장비별 사용 정보 (급여청구 현황)
비급여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급여 항목 정보 (수가, 유형 등) • 기관별 비급여 가격 정보
의료의 질 평가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개 평가항목 기준 정보 (의료제공 구조, 제공 과정, 결과) • 의료기관별 평가 결과 정보 •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등 의료 질(quality)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표 정보

출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데이터 소개」, <http://opendata.hira.or.kr/op/opb/selectHelthMedDataView.do>, 검색일자: 2017.2.6.

- 심평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¹⁷을 통해 보건의료 자료는 건강보험자료 범위 내에서, 맞춤형 자료는 심평원에서 제공 가능한 형태의 자료로 제공하고 있음
연구자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산하기관이나 연구 중심 병원 및 학술 연구 수행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체자료는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았거나 예비 창업자인 경우, 컨설팅 회사 및 제약·의료기기 업체에 제공하고 있음
- 심평원의 빅데이터는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먼저 상담신청을 한 후에 상담이 완료되면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서 요청할 수 있음. 요청 자료에 따라 추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나 2~4주 기간 내에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¹⁷ 홈페이지 주소: <http://opendata.hira.or.kr/home.do>, 검색일자: 2017.2.7.

연구자료에 대한 사용료는 1일당 이용료인 50,000원이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단체는 제외)는 사용료가 면제되며, 통계·데이터 등의 교환 및 제공에 관한 MOU를 체결한 기관은 기본비용의 50%가 감액 적용됨

3. 기타 기관

-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각 과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원시데이터가 많으며, 그 중 통계청에 등록된 자료는 총 10개, 통계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질병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1개, 코호트사업은 5개가 있음¹⁸

통계청에 등록된 통계로는 결핵현황, 법정전염병발생보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전국 예방접종률조사, 전국민 장내 기생충감염실태조사, 급성심장정지조사, HIV/AIDS 신고현황, 지역사회건강조사, 퇴원손상심층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등임
그 외에 질병관리본부 업무상 발생하는 데이터로는 기초영양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며, 코호트사업으로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증외상조사, 특정수혈부작용조사, 집단시설접촉자조사, 설치류 채집을 통한 털진드기 전국분포조사 등이 있음

- (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은 인간유전체 분석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인 ‘임상오믹스 데이터 아카이브(Clinical & Omics Data Archive, CODA)를 운영하면서 유전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음¹⁹

-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는 갑상선암 역학적 특성 조사자료, 암등록자료, 검진자코호트, 중앙은행 DB를 생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개인정보 등의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²⁰

암등록통계DB는 암 확진 환자 자료를 담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자료로, 주민등록번호, 성명, 나이, 초진일, 원발부위(ICD-O-3), 조직학적진단명(ICD-O-3), 국제

18 강희정 외 24명,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pp. 251-266.

19 강희정 외 24명,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pp. 267-270.

20 강희정 외 24명,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pp. 272-290.

질병사인분류(ICD-10), 치료, 진단방법, 입원일, 퇴원일, 의료기관명, 병기분류 등의 자료를 제공함

검진자료호트DB는 설문조사를 통해 역학자료 및 임상검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시료은행을 함께 구축하고 있음

Ⅲ.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방안

1.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 ‘정부3.0’에 따라 기관별로 핵심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빅데이터 활용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니 기관 간 중복 투자 및 정보 연계 미흡으로 정보 공개와 이용자의 편익에 한계가 있음²¹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품질이 우수²²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경우, 자료 공유 및 정보 연계를 통하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타 기관과의 정보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에 대한 국회의 지적사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건보공단은 2016년 국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실시하고 있는 빅데이터 사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 하라는 지적을 받았음
- 심평원 또한 2015년 국회에서 ‘사회보장원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와 심평원이 보유한 빅데이터 자료 간의 연계성을 확보’ 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건보공단과의 협조체계 마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 법적근거 마련, 질적 수준 제고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²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제238호, 2016, p. 67

²² 건보공단의 ‘자격보험료통합징수DB’가 2014년에 한국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 인증(DQC-V)에서 최고 수준인 플래티넘 클래스(Platinum Class)를 획득하였으며, 심평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은 2016년에 플래티넘 클래스(Platinum Class)를 획득하였음

■ 따라서 보건 의료 정보를 수집·생성·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계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과 장소에 관계없이 통합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함²³

보건 의료분야에서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경우, 두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기관 업무에 따라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연구주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진료정보와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소가 포함된 자격정보를 연계하여 분석할 때 더 큰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음

단기적으로는 데이터 연계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 연계서비스와 더불어 데이터 저장, 보관,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공 서비스의 범위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확대하여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더욱 크게 할 수 있음²⁴

정보 연계 및 통합 제공과 더불어 데이터 이용료를 연계하는 등의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2016년 하반기에 ‘공공 빅데이터 이용료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빅데이터 이용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²⁵

■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의 연계와 공유를 위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① 범정부 차원의 조직 구성, ② 데이터 개방의 표준 설정, ③ 공공데이터 품질보장 체계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함²⁶

빅데이터의 목표와 방향성을 정립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공익적 목적의 보건 의료 연구를 위해 데이터 연계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 식별 정보의 사용과 저장을 허용해 줄 범부처 차원의 조직이 필요함²⁷

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제238호, 2016, p. 68

24 각주 19)와 동일함

25 『동아일보』, 「건보공단-심평원, 국민건강 빅데이터 이용료 재평가 착수」, 2016.06.13., <http://news.donga.com/3/all/20160613/78639750/1>, 검색일자: 2017.2.7.

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제193호, 2012, pp. 74-76;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제238호, 2016, pp. 67-7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정책동향』, 제8권 6호, 2014, pp. 29-31.

27 『보건복지포럼』, 제193호의 「보건복지 빅데이터 효율적 활용방안(송태민)」에서는 범부처 차원의 '보건복지 빅 데이터 관리 위원회(가칭)'를 제안하였고, 『보건복지포럼』, 제238호의 「보건 의료 빅데이터의 정책 현황과 과제(강희정)」에서는 보건복지부

[그림 1] 공익적 목적의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플랫폼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제238호, 2016, p. 68.

기관별로 데이터를 생성·개방하고 있어서 데이터 구조 및 양식이 서로 달라 데이터가 연계가 어려우므로 데이터 구조 및 양식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데이터 포털²⁸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셋의 확장자 유형을 살펴보면 엑셀 파일, 한글·문서파일, 텍스트 파일, 웹파일, 오피스 파일 등으로 다양한 데이터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²⁹

소속의 '보건의료 데이터 전략 위원회(가칭)'를 제안하였음

²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통합제공 시스템임

²⁹ 강희정 외 24명,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p. 322.

〈표 5〉 공공데이터 서비스 제공 데이터 확장자 유형(복수)

(단위: 건)

확장자 유형	보건분야
오피스 파일 ¹⁾	7
엑셀파일 ²⁾	806
웹파일 ³⁾	15
텍스트파일 ⁴⁾	19
한글/문서파일 ⁵⁾	132
기타 ⁶⁾	13
총합계	992

주: 1) 오피스파일: PPT, DoC, Docx 유형의 파일

2) 엑셀파일: CSV, Excel, XLS, XLSX, XLXS 유형의 파일

3) 웹파일: JSP, HTML, 유형 파일

4) 텍스트 파일: TEXT, TXT 유형 파일

5) 한글/문서 파일: HWP, PDF 유형 파일

6) 기타: DICOM, SHP, STL, Zip, 이미지 유형 파일

1. 공공데이터 현황파악 조사: 2015.8.5. 기준, 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 확장자 유형이라고 공개된 정보만을 취합하여 정리하였음
출처: 강희정 외 24명,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p. 322.

데이터의 품질은 크게 내재적 품질, 접근성 품질, 상황적 품질, 표현적 품질로 나눌 수 있는데, 빅데이터의 특징을 고려하여 데이터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2〕 빅데이터의 품질 구성 요소

1	내재적 품질(Intrinsic)	2	접근성 품질(Accessibility)
- 정확성, 객관성, 진정성 등 데이터 자체의 우수성		- 접근성, 접근보안성 등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적 우수성	
3	상황적 품질(Contextual)	4	표현적 품질(Representational)
- 데이터 완전성, 초시간성 등 사용자가 목적하는 상황에 적합성		- 해석력, 간결성, 용이성, 일관성 등 데이터 표현의 명확성	

출처: 강희정 외 24명,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p. 369.

2. 빅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 빅데이터 활용의 핵심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 → 저장 → 분석 → 추론’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기술 개발은 대용량 정형·비정형의 고속 데이터 처리 및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위한 각각의 기술과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 기술 개발, 빅데이터 운영·분석 기술 개발 등이 있음³⁰

- 또한, 관계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비구조적인 대규모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고 핵심 정보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³¹

빅데이터의 핵심역량은 창의적인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의 양성이므로 교육 과학기술부 등과 협력하여 보건복지분야의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베이나 미국 IBM과 같은 글로벌 업체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와 같은 인력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MOU 체결에 따라 연구자 및 보건의료산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교육을 실시하였고³²,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시험을 실시하여 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가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하고 있으나³³ 보다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인력 양성 추진 체계가 필요함

3. 법과 제도의 정비³⁴

-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서 가장 민감한 개인

30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 보고자료 별지, 2011, pp. 24-26.

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제193호, 2012, pp. 74-76.

32 『쿠키뉴스』, 「심사평가원-건보공단,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교육」, 2016.11.08.,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6838>, 검색일자: 2017.2.7.

33 『뉴스시스』, 「'빅데이터 시대' 건보공단, 정보분석사 45명 추가 배출」, 2016.6.20.(등록일자 기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0_0014163489&clD=10201&pID=10200, 검색일자: 2017.2.7.

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제238호, 2016, p. 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정책동향』, 제8권 6호, 2014, pp. 30-31.

정보이자 기밀 영역이면서도 대량으로 수집되어야 분석 및 활용이 유용하다는 특수성을 가짐

-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자유’가 상충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엄격하고 명확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집·공유·활용 각 단계에서 정보보호 문제, 데이터 소유권 및 사용권 문제, 공개된 데이터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란 등 데이터 소유자·활용자·이용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음

빅데이터 활용의 자유 측면에서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건강보험법」 등으로 분산되어 법령 간 내용이 배치되거나 해석이 곤란하여 빅데이터의 수집·공유·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의 공익적 구축·분석·활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 수집, 보안, 교류 및 활용범위, 환자의 동의 절차 등을 명확히 해야 함

IV. 결론

- 본고에서는 공공부문의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현황과 활용방안만을 다뤘지만 선진국들은 공공·민간부문 데이터가 연계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신성장동력으로 보고 있음³⁵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향상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ICT의 높은 기술력, 우수한 보건의료 인재, 고품질의 보건의료 빅데이

³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정책동향』, 제8권 6호, 2014, p. 31.

터 보유³⁶ 등으로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의 글로벌 경쟁력과 잠재적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음³⁷

- 따라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마스터플랜과 전략하에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자유’의 균형을 잡아줄 법과 제도의 정비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가 공유·연계되어야 함

참고문헌

- 강희정 외 24명,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정책동향』, 제8권 6호, 201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제193호, 201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제238호, 2016.
-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2012.11.28.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 보고자료 별지, 2011.
- 관계부처 합동,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2013.6.19.
- 『뉴시스』, 「‘빅데이터 시대’ 건보공단, 정보분석사 45명 추가 배출」, 2016.6.20.(등록일자 기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

³⁶ OECD(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환자의 의료경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성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건강정보라고 함

³⁷ 각주 3)과 동일함

- 20_0014163489&cID=10201&pID=10200, 검색일자: 2017.2.7.
- 『동아일보』, 「건보공단-심평원, 국민건강 빅데이터 이용료 재평가 착수」, 2016.6.13.,
<http://news.donga.com/3/all/20160613/78639750/1>, 검색일자: 2017.2.7.
 - 『메디파나뉴스』, 「장밋빛 기대 건보 빅데이터?...누굴 위한 것인가」, 2014.7.2.,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5356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검색일자: 2017.2.6.
 - 『쿠키뉴스』, 「심사평가원-건보공단,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교육」, 2016.11.8.,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6838>, 검색일자: 2017.2.7.

 -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홈페이지 <https://nhiss.nhis.or.kr/bd/ay/bdaya00liv.do>, 검색일자: 2017.2.6.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홈페이지 <http://opendata.hira.or.kr/home.do>, 검색일자: 2017.2.6.

월성 1호기 계속운전처분 취소 판결과 시사점

민 경 석⁰¹

I. 서론

- 서울행정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5년 2월 27일에 내린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처분을 지난 2017년 2월 7일 판결을 통해 취소하였음⁰²

환경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심사·심의 관련 안전성과 절차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며 2015년 5월 18일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무효 처분을 청구하였음⁰³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공동행동’이 제기한 절차상의 흠결을 일부 인정하고 무효 대신 취소 판결을 내림

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ksmin@kipf.re.kr)

02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월성 1호기수명연장을위한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등」, 2017. 2. 7.

03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2015. 5. 18., <http://ktem.or.kr/?p=150541>, 검색일자: 2017. 3. 6.

-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이며, 설계수명이 임박한 원전이 상당수 존재함
2023년부터 매년 1~2기의 원전이 수명 만료 연도에 도달함

〈표 1〉 1세대 원전의 설계수명 만료연도

만료연도	원전명
2023	고리2호기
2024	고리3호기
2025	고리4호기, 영광1호기
2026	영광2호기, 월성2호기
2027	울진1호기, 월성3호기
2028	울진2호기
2029	월성4호기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심층평가』, 2015, p. 87, 재인용
원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14년 원자력안전연감』, 2015.

-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취소하라는 것으로 앞으로의 원전에 관한 찬반 논쟁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됨⁰⁴
서울행정법원은 심사과정 중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해 준 것이나, 월성 1호기 및 타 원전의 안전성의 문제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음
특히,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결정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날치기 통과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있었음⁰⁵
- 이에 본 심층동향에서는 원전 계속운전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월성 1호기 계속운

04 『경향신문』, 「『월성 1호기' 연장 취소』 '안전 불감증'에 경중...대선주자들도 공감 '원전 정책 분수령』, 2017. 2. 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72209025&code=940100#csidx14ba1f8daa5cc695772ca456e867ad, 검색일자: 2017. 3. 6.

05 『연합뉴스』, 「野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은 날치기"...재고 촉구」, 2015. 2. 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7/0200000000AKR20150227081100001.HTML?input=1195m>, 검색일자: 2017. 3. 6.; 『연합뉴스』, 「동경주 주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 2015. 3. 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03/0200000000AKR20150303127700053.HTML?input=1195m>, 검색일자: 2017. 3. 6.; 『뉴스1』, 「"원안위,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은 무효"」, 2015. 2. 27., <http://news1.kr/articles/?2113058>, 검색일자: 2017. 3. 6.

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여 추후에 있을 원전 계속운전 심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1. 법적 근거⁰⁶

-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에 도달한 원전이 「원자력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만족하여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함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일 이후 계속운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그리고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 등의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설계수명(design life)은 원전 설계 시 설정한 운영목표기간으로서 원전의 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면서 공학적으로 안전하게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 최소한의 기간임
- 설계수명의 종료를 앞둔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운전을 하려면 설계수명 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내지 2년 이전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정부는 18개월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9조)

늦어도 2년 전에는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18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하므로 원칙적으로 설계수명 만료 6개월 전에는 계속운전의 허용 여부가 결정됨
- 허가된 계속운전기간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이며, 이는 실제운전기간이나 계속운전 개시 시점과 상관없음

⁰⁶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심층평가』, 2015, pp. 84-86

따라서,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2년의 공백기를 가지고 계속운전이 개시된 경우 실제로 계속운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8년임

2. 계속운전의 지연⁰⁷

- 우리나라 원전의 계속운전 사례는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가 있으며, 두 사례 모두 바로 계속운전이 재개되지 않고 지연되어 가동이 중단된 기간이 있었음
이에 따라 실질적인 계속운전 기간은 고리 1호기의 경우 9년 6개월, 월성 1호기의 경우 7년 5개월에 불과함

〈표 2〉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사례

만료연도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상업운전 시작	1978. 4.	1983. 4.
설계수명 종료	2007. 6.	2012. 11.
재가동 시작	2008. 1.	2015. 6
계속운전 종료	2017. 6.	2022. 11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심층평가』, 2015, p. 87, 재인용
원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14년 원자력안전연감』, 2015.

- 월성 1호기의 가동중단이 장기화된 주된 이유는 일련의 원전 관련 사건·사고로 인한 계속운전 심사기간의 연장임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수명 종료일보다 3년 정도 앞서 계속운전 인허가를 신청하였음
하지만, 제출한 서류 적합성 평가에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부품 비리사건이 발생하면서 심사가 지연됨
대통령은 계속운전의 승인 조건의 하나로 유럽식 스트레스 테스트를 공약으로 제시하여 심사에 추가 반영됨
인허가 신청에서 최종 계속운전 인허가까지 약 5년가량 소요됨

⁰⁷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심층평가』, 2015, pp. 87-89.

-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속운전 인허가 후에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였고, 지원금 규모를 두고 의견 차이로 합의가 지연 되면서 실제 재가동일이 늦춰졌음

주민대표인 동경주위원회는 2,810억원을, 한국수력원자력은 1,100억원을 지원금으로 제시하였음

2007년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승인 당시 지역에 제공된 지원금인 1,310억원에 양측이 최종 합의함

최종합의 이후에도 협상에 나선 주민대표의 대표성을 지적하며 일부 주민이 재협상을 요구하기도 하였음

- 한편, 계속운전 인허가 과정에 관하여 ‘공동행동’은 심사·심의 관련 안전성과 절차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며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 처분을 청구하였음 (2015년 5월 18일)⁰⁸

‘공동행동’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한 심의 대상 일부 서류의 부재를 허가의 무효 사유로 지적함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 점 또한 무효의 사유라고 밝힘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였음

⁰⁸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2015. 5. 18., <http://kitem.or.kr/?p=150541>, 검색일자: 2017. 3. 6.

Ⅲ.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결문

- 서울행정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린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처분을 지난 2017년 2월 7일 판결을 통해 취소하였음⁰⁹

서울행정법원은 다음 3가지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그 하자들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무효 대신 취소 판결을 내림

- ①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필요한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변경허가 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을 하지 않았음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법상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였음
- ③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1. 심의·의결 관련 적법성¹⁰

-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및 그 심사를 전후하여 운영변경허가사항에 해당하는 설비교체가 여러 차례 진행되고, 이에 대한 운영변경허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과장 전결로 이루어져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잠탈함

원자로의 핵심설비인 압력관 380여개의 교체 작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과장 전결로 이루어졌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계속운전 심사결과에서 월성 1호기의 설비 교체 사실을 적시하면서 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해당 설비교체는 사실상 계속운전을 허가받으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운영허가 및 운영변경허가 모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되며, 해당 교체 작업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된다고 판결함

⁰⁹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위한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등」, 2017. 2. 7., pp. 24-25.

¹⁰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위한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등」, 2017. 2. 7., pp. 14-16.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사항의 세부적인 변동내역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운전을 허가한다는 결론을 의결하였음
허가사항의 변동내용의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면 표제와 상관없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시 첨부서류인 비교표로 인정할 수 있음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 허가심사 당시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안)’에는 앞서 언급한 핵심설비의 교체에 관한 허가사항의 변동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기 전에 운영변경허가를 수반하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교체 등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없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를 전후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들 간의 협의 하에 설비교체를 먼저 진행하는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에 계속운전이 허가되리라는 기대를 심어주게 됨
이런 경우에 설비교체를 협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원들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워짐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¹¹⁾

- 원자력이용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사내 위원회에서 활동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 2명은 결격사유가 인정되어 당연퇴직해야 하며, 해당 두 위원들이 관여한 의결은 위법함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였던 사람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됨(「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
 - 위원 A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영향력 있는 유력인사의 정책결정 참여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설치한 원자력정

11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위한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등」, 2017. 2. 7., pp. 16-19.

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하였음

- 위원 B는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 및 사업자지원사업 본사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였음

-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찬성만으로도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의결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의결의 위법성은 해소할 수 없음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위원들은 계속운전을 위한 위원회 심의·의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음

- 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끝에 일부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루어졌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되어 해당 의결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3. 최신 기술기준의 미적용¹²

-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를 할 때 적용할 기술기준은, 적용하지 않아도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평가기준일 당시의 국내·외 최신 기술기준을 모두 포함해야 함

법원은 원자력 안전 관련 규정의 취지가 설계수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당초 신규 운영허가를 할 당시의 기술기준이 아닌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신규 원전의 안전성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것이라고 판단했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4. 안전성평가 당시 해당 원자로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② 제36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2.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

¹²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위한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등」, 2017. 2. 7., pp. 16-19.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 ④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의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2.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자연환경 및 부지특성 등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최신 기술기준에 만족되도록 할 것

- 해당 계속운전 심사과정에서 R-7, R-8 및 R-9¹³ (이하 ‘R-7 등’)과 같은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따라서 계속운전 결의는 위법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정한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R-7 등이 기술기준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심사하면서 R-7 등을 적용하지 않았음

또한, 상기 지침이 기술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캐나다 기술기준 G-360(원자력시설의 수명연장)은 국내·외의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최신 기술기준과의 격차분석(Gap Analysis) 및 격차의 중대성 및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R-7 등은 월성 1호기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 제정되어 월성 2, 3, 4호기에 적용되었으며, R-7 등이 월성 1호기에 적용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음

R-7 등을 적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답변한 것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R-7 등이 적용되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충분히 비교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법원은 R-7 등이 적용되지 않은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의 안전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R-7 등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¹³ R-7: 캔두형 원전의 격납건물계통을 위한 요건
 R-8: 캔두형 원전의 원자로 정지계통을 위한 요건
 R-9: 캔두형 원전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을 위한 요건

IV. 결론

-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법원은 심사 과정상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며, 물리적인 안전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거나 이를 인정한 것은 아님

심사 절차상의 하자들 또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운전 무효 청구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음
- 판결 이후에도 현재 월성 1호기는 안전하게 계속운전 중에 있음

‘공동행동’ 측은 월성 1호기의 가동 중지까지 청구하지는 않았음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상기 판결은 최종적인 것은 아님

 - 한국수력원자원은 제3자로 소송에 참여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로 밝힘¹⁴
- 해당 사건으로 인해 원자력 전문가 집단과 일반 시민 사이의 원자력 안전에 접근하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함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안전성 심사에 집중하는 한편 원자력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들은 올바른 행정 절차를 거친 적법성의 측면에서 보다 폭넓게 원자력의 안전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이는 일련의 원전비리 등으로 인해 원자력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음

원자력 전문가 및 관료들은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¹⁴ 『연합뉴스』, 「한수원,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소송 참여」, 2017. 3. 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8/0200000000AKR20170308118100003.HTML?input=1195m>, 검색일자: 2017. 3. 9.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속운전 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계속운전을 염두에 둔 부품 교체를 전결이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식 계속운전 심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원자력 안전관리임을 명심해야 함

또한 위원의 위촉 시에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원전 마피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켜야 함

시행규칙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단순한 구절보다는 국민 안전을 염두에 두고 법령의 취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최신의 안전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참고문헌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위한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등」, 2017. 2. 7.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4년 원자력안전연감』, 2015.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심층평가』, 2015, pp. 84-86
- 『경향신문』, 「[‘월성 1호기’ 연장 취소] ‘안전 불감증’에 경종…대선주자들도 공감 ‘원전 정책 분수령’」, 2017. 2. 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72209025&code=940100#csidxf14balf8daa5cc695772ca456e867ad, 검색일자: 2017. 3. 6.
- 『뉴스1』, 「“원안위,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은 무효”」, 2015. 2. 27., <http://news1.kr/articles/?2113058>, 검색일자: 2017. 3. 6.
- 『연합뉴스』, 「野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은 날치기”…재고 촉구」, 2015. 2. 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7/0200000000A_KR20150227081100001.HTML?input=1195m, 검색일자: 2017. 3. 6.

- 『연합뉴스』, 「동경주 주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 2015. 3. 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03/0200000000AKR20150303127700053.HTML?input=1195m>, 검색일자: 2017. 3. 6.
- 『연합뉴스』, 「한수원,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소송 참여」, 2017. 3. 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8/0200000000AKR20170308118100003.HTML?input=1195m>, 검색일자: 2017. 3. 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9B%90%EC%9E%90%EB%A0%A5%EC%95%88%EC%A0%84%EB%B2%95#undefined>, 검색일자: 2017. 3. 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9B%90%EC%9E%90%EB%A0%A5%EC%95%88%EC%A0%84%EB%B2%95%20%EC%8B%9C%ED%96%89%EB%A0%B9#undefined>, 검색일자: 2017. 3. 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9B%90%EC%9E%90%EB%A0%A5%EC%95%88%EC%A0%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검색일자: 2017. 3. 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9B%90%EC%9E%90%EB%A0%A5%EC%95%88%EC%A0%84%EC%9C%84%EC%9B%90%ED%9A%8C%EC%9D%9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 검색일자: 2017. 3. 6.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2015. 5. 18., <http://kfem.or.kr/?p=150541>, 검색일자: 2017. 3. 6.

정책금융기관 현황 및 쟁점

정 예 슬⁰¹

I. 서론

- 정부는 2017년 정책금융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계획을 발표한바 있음
 -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의 기능조정을 수행함
 - '17년에는 정책금융, 보건의료, 산업진흥 분야의 기능조정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되지 않음
- 정책금융기관과 관련하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쟁점은 다수 존재하나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다수의 정책금융제도들이 부처별로 산재한 가운데 상호간 협조 및 연계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중복 문제
 - 정책금융 과다로 인한 상업금융 구축 및 시장마찰 등 정책금융 기능 수행에 있어서

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yschung@kipf.re.kr)

의 민간과의 역할 배분 문제

현행 기업 구조조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와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주장 등 정부주도 기업 구조조정의 한계에 관한 문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운영의 효율성도 높지 않다는 지적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비효율에 관한 문제

- 본고에서는 향후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개편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현황 및 관련 쟁점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고자 함

정책금융기관의 업무중복 문제는 향후 개편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현황 중심으로 정리
정책금융 기능의 민간과의 역할 배분, 정부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의 한계,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비효율성에 관한 문제는 기존 연구 및 보고서에 언급된 쟁점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함

II. 정책금융기관 현황 및 역할

1. 정책금융의 개념 및 역할

- 정책금융은 시장실패로 인해 금융시장의 상업적 기능을 통해 해소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수요를 자금의 접근성·가용성·금융비용 측면에서 보완해 주는 공공적 성격의 금융을 의미함⁰²

금융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경제효과 등으로 시장실패가 항상 발생하는 데 비해, 상업금융은 목표수익률 달성이라는 이윤동기에 기초하고 있어서 모든 시장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음

⁰² 손상호·구정환·한재중·하준(2013),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 방안』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 p.5
조경호·김형성·장다정(2015),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사업 평가지표 개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보고서, p.7 재인용

즉 상업적 금융은 물리적 제약 또는 정보의 부족 때문에 고객의 자금 접근성이 제약되고, 비대칭적 정보와 외부경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자금가용성에도 제약이 주어짐이와 같이 시장 불완전성으로 인해 시장기능을 통해 해소하지 못하는 금융수요는 국가와 시대를 막론하고 공적 성격의 정책금융을 통해 보완되어 왔음

- 정책금융은 위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상업금융을 구축하거나 정치적 개입 및 대리인비용 유발 등 정부실패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음⁰³

정책금융에 따른 시장기능 보완과 경제개발, 금융안정화라는 사회적 이득이 상업금융 구축과 정치적 개입 및 대리인비용 발생이라는 부작용보다도 얼마나 더 큰가가 중요

만약 정책금융을 운영하는 비용이 이득보다도 크다면 정책금융은 결국 비효율화되고 부실화되어 (암묵적)보증을 제공한 정부의 추가 재정투입 등 사회적 비용으로 나타남

- 정책금융의 역할과 기능은 소극적 형태의 시장기능 보완, 보다 적극적 형태의 경제발전 지원, 경기대응적 형태의 시장안전판 역할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됨⁰⁴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경제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의 보정기능을 담당하며 중소기업금융, 서민금융, 농업금융 등이 이에 해당함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해당되며 중장기설비(인프라, 환경)금융, 기술개발금융, 중소기업금융, 농업금융, 지방정부금융, 자원개발금융 등이 이에 해당함

시장안전판 역할을 하는 정책금융은 시장의 불완전성 또는 금융위기 시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사용되는 시장안정화 기능으로 시장

03 손상호(2013), 『한국 정책금융의 평가와 분석 및 미래비전』,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pp.3-8 인용

04 손상호(2013), 『한국 정책금융의 평가와 분석 및 미래비전』,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pp.3-8 인용

에 유동성 위기가 초래되면 정책금융이 시장에 유동성을 대신 공급하여 공백을 메우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해당됨

- 우리나라 경제개발 및 금융발전 과정에서 정책금융은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금융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주요한 역할과 기능 및 지원방식 등이 지속적으로 변모하여 왔음⁰⁵

과거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70~80년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주로 시장실패 보완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제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음

또한 과거 정책금융은 민간의 금융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자금 투입 및 상업자금의 정책적 활용에 크게 의존하였음

그러나 경제 및 금융구조가 선진화되는 등 정책금융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전통적인 정책금융의 영역 및 방식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었음
- 정책금융의 역할 수정에 대한 요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금융기관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 확대되면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재차 강조됨⁰⁶

우리나라도 저성장시대 진입, 기업구조조정, 비젤Ⅲ의 단계적 강화 등에 따른 은행의 신용공급역력 축소 우려로 시장실패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특히 2016년부터 완충자본(Capital Buffer),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등 추가 자본규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2019년부터 바젤Ⅲ가 전면 시행될 경우 국내은행도 규제 충족을 위해 자산을 축소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향후 금융·경제 환경은 정책금융기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정책금융기관이

⁰⁵ 손상호·구정환·한재중·하준(2013),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 방안』,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연구원 연구보고서 pp.4-5 인용

⁰⁶ 변현수·이시은·윤경수·한용덕(2016), 『일본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분석 및 시사점』, KDB산업은행 보고서, p.14 인용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민간금융과의 시장마찰 문제가 발생하게 됨⁰⁷

따라서 시장마찰을 최소화하는 조건하에서 어떻게 하면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적 자금공급 역할을 극대화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

2. 정책금융기관 현황

- 정책금융은 시장의 실패로 인하여 해소되지 못하는 금융수요에 대하여 금융분야를 관장하는 금융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시장보완, 공공성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윤석현 외(2014)의 연구에서 정책금융은 예금은행과 정책금융기관으로 구분되고, 대출, 보증·보험, 투자 등의 수단으로 구분되며, 예금은행의 경우에는 금융자금과 재정자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은 정책성 금융기관으로 구분되며 자체적인 금융자금을 조달하여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하며 은행 외 정책금융기관들은 재정자금으로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함

〈표 1〉 정책금융의 분류

구분		세분	공급기관
정책금융 (광의)	정책성 금융	자체조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
	정책금융 (협의)	정책자금 대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타 정부부처
		보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 재단
	투자	모태펀드	

출처 : 윤석현 · 박래수 · 정재만(2014), 「정책금융 선진화 방안 연구」, 『금융정책연구』, p.5

⁰⁷ 변현수 · 이시은 · 윤경수 · 한용덕(2016), 『일본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분석 및 시사점』, KDB산업은행 보고서, p.15 인용

- 현재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총 13개 기관이 있으며 기관유형별로 살펴 보면 준시장형 공기업 1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7개, 기타공공기관 5개임⁰⁸

준정부기관은 모두 기금관리형 기관으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5개 기관은 금융위원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관유형이 모두 기타 공공기관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3개 기관은 모두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주무기관임

〈표 2〉 정책금융 공공기관 현황

기관명	기관성격	주무기관
예금보험공사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기타공공기관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금융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	기타공공기관	기획재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기업(준시장형)	국토교통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중소기업청

출처 : 알리오 <http://www.alio.go.kr/home.do> 공시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⁰⁸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분류기준은 연구마다 상이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2017년 지정된 공공기관 중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13개 기관을 임의로 판단하여 작성함

Ⅲ. 정책금융기관 개편에 관한 쟁점

1.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중복 현황

-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중복 및 비효율에 따른 역할 재정립과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금융위원회는 '13.8월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금융에 관해 제기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그러나 이러한 방안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과 관련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국회예산정책처(2015)는 정책금융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중복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 정책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혹은 민간기업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사업 현황은 아래의 <표 3>과 같음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중복에 관해서는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제도개혁을 통한 조정 또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기관 간 업무중복 문제는 발생하고 있음

<표 3> 정책금융기관 간 유사기능 수행 현황

기관명(사업명)	기관명(사업명)	유사기능 수행 민간기업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장기수출보험)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적전수출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대출보증), 기술보증기금(대출보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PF금융)	산업은행 (해외PF금융)	외국계 민간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장기수출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사업)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보증사업)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기관명(사업명)	기관명(사업명)	유사기능 수행 민간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정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사업)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 사업)	서울보증보험, 지역 신용보증재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민간은행
한국산업은행 (해외온렌딩 대출)	수출입은행 (해외온렌딩 대출)	

참고 : 2013년 감사원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결과보고서, 2013년~2015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015년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간 업무중복도가 높은 금융상품이 많고 분야별 지원사업도 유사하다는 지적을 제기된 바 있음⁰⁹

특히 무역보험공사의 ‘증장기수출보험’ 업무와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업무는 중복되는 업무로 2013년 3월 감사원은 두 기관의 업무중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금융기관 간 업무중복 논란과 과열경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두 기관 간 기능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함

‘13.8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은 양 제도를 동일한 중복상품으로 결론내고,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보증)을 중심으로, 수출입은행은 대출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관련 업무중복이 발생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5.10월, 금융위의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에 따라 역할조정이 이루어짐

중소기업은행은 창업·성장초기 지원을 확대하며 산업은행은 중견·예비중견기업 위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간 역할조정을 위한 기준이 마련됨
중소기업 대출 관련 업무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등에 따라 민간은행에서도 수행하

09 『세정신문』, 「류성걸,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업무중복 없애야”」, 2015. 10. 2., http://www.taxtimes.co.kr/hous01.htm?_id=209587, 검색일자: 2017. 4. 17.

고 있어 경쟁이 심화됨

- 신보와 기보의 업무중복 문제는 2013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두 기관의 중복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됨

두 기관은 업무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05.12월 '보증업무 특화 및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2.6월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한 거래보증기관 변경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15.11월 '신보증체계 구축방안'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함

그러나 정책적 필요성 등에 의해 여전히 일부 중복보증이 발생하고 있음

 - 예시, 신보에서 보증이용중인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기보의 기술평가와 기술개발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을 2개 기관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두 기관의 통합논의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음

- 2016년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보증업무 중복으로 인한 동일인 중복보증 문제가 제기됨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2016년 10월부터 동일인이 주택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합쳐 최대 2건까지만 중도금 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건, 4건 이상의 중복보증 건수가 많게는 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동일한 업무를 두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감사원은 2013년 감사에서 무역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제도가 신보, 기보의 '대출보증' 제도와 유사하다고 지적하여 금융위는 무역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지원비중을 축소하도록 권고함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라 무보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이용 규모는 2013년 3 조2,893억원, 2014년 2조 9,914억원, 2015년 2조 6,547억원, 2016년 2조 3,800억원 등 매년 줄었으며 2017년 예산안에서도 올해보다 5,700억원 줄어든 1조

8,100억원으로 편성됨

그러나 2016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무보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사고율은 '16년 9월말 기준 9.41%로 상반기 신보(3.9%)와 기보(4.5%)의 사고율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중은 줄었지만 사업수행에 따른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PF 금융업무와 관련해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¹⁰

'13.8월 발표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방안」에서는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해 대내 정책금융으로 단일화하고, 수은과 무역보험공사의 대외 정책금융을 유지시킴
그러나 '15.10월 발표한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방안」에 따라 산업은행의 해외PF 진출이 확대 개편됨

현재 두 기관 간의 해외PF 금융 관련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해당 업무는 국내 및 해외 민간은행과도 경쟁하는 영역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대외정책금융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및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두 기관은 해외온렌딩 제도와 관련해서도 업무중복이 발생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된 조정방안은 현재까지 제시된 바 없음

-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정리' 기능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자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다수 공공기관에 흩어져 수행되어 왔으나 '17년 상반기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하도록 추진함

금융위원회는 '17.3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음
금융위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은 적기에 대손상각하고, 상각된 채권은 전문기관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여 일원화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그동안

10 『뉴스웨이』, 「산업은행 해외PF 증가세 '뚜렷', 수출입은행 '주춤」, 2017. 2. 23.,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7022313195601127&md=20170223132051_AO, 검색일자 : 2017. 4. 17.

다수의 기관이 수행하여 발생된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2. 정책금융 관련 쟁점

가. 정책금융기능의 민간과의 역할배분

- 이동해(2017)는 정책금융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 과다로 인한 상업금융 구축 및 시장마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장도 있음을 언급하며 시장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는 정책금융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정책금융이 시장의 자율적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민간부문을 구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임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 정책금융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정책금융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함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조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을 보완하되 민간금융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선도적 역할을 하되 시장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정책금융의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함

- 윤석현(2016)은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존재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예를 들어 민간은행이 BBB 이상의 신용등급 회사채 대상으로 한다면 정책금융기관은 BB 이하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

같은 맥락에서 보증제도도 정부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간접보증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정부주도 기업구조조정의 한계

- 박상인(2016)은 현행 정부주도적 기업 구조조정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 구조조

정의 패러다임을 시장주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정부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은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와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기업퇴출이 시장의 평가가 아닌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이뤄지게 함으로써 정격유착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함
따라서 현행 구조조정 방식을 유지하면서 재벌총수나 공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국책은행 관계자 및 정부관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

- 정영철(2017) 역시 기업의 부실은 원칙적으로 주주와 채권자의 책임이며 기업경영에 국책은행이 신용을 제공하거나 추가적 자금제공 등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며 시장경제메커니즘을 이용한 금융정책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함

특정 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 판단으로 이는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고 금융규제기관이 정치적 판단을 대신하여 선별적으로 기업의 존속을 결정하는 것은 관료들에게 금융정책과는 관련이 없는 산업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또한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에 우려가 있다면 건전성 판단기준의 변화를 통하여 이를 보다 엄격히 감독하면 충분하며 특정 기업에 대한 여신을 연장할지 추가여신을 일으킬지 여부에 대한 금융위의 판단은 권한남용의 영역에 속한다고 지적함

- 금융위원회 역시 정부주도 구조조정의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현행 기업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하고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기업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하는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17.4월)을 발표함¹¹

금융위는 금융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어 채권은행 주도의 현행 구조조정 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함

이에 따라 현행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전환해 나갈 것을 강조함

¹¹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은행장 간담회를 통한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 발표」, 2017. 4. 13.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은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P-Plan 활성화 등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제도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 먼저,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하여 부실기업을 적기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강조하였음
구조조정 추진 단계에서도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엄격히 평가하여 채권금융기관 차원에서 효과적 워크아웃 추진이 곤란한 경우 신속히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그림 1]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 기본방향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 2017.4.13.

-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 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하여 적극적 채무조정, 신규자금 투입, 사업 개편 등 기업 정상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음
 -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하겠다고 하였음
 - 마중물로서 8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음
 - 정책금융기관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PEF 등 자본시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경영정상화의 필수 요소인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
 - 이처럼 앞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직접적인 구조조정 추진 주체에서 구조조정 관련 재원 공급 등 구조조정 시장 조성자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하였음

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비효율성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은 국가경쟁력 확보와 경제성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경제성장과 고용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시장실패,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창업과 성장단계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 대출, 투자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을 함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책금융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정책금융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운영의 효율성도 높지 않다는 지적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됨
 - 장우현(2016)의 연구에 의하면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지원기업의 생존율을 증가시켰으나 해당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은 절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으로 인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이상엽·이창민(2014)의 연구에 의하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지원대상의 선별능력 부족, 초기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발굴능력의 부족, 장기적인 안목 결여 등으로 인하여 정책금융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점
투자계약 방식의 다양성 부족, 자금지원 이후 사후관리 부실, 자금회수 방법의 다양성 부족 등의 지배구조 측면의 문제점
정부의 지원규모가 과도하다는 점과 정부부처 간 업무 중복 문제
이미 정부의 금융지원은 충분히 많은데 수요자 쪽에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 이상엽·이창민(2014)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 자원 배분의 개선과 지배구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대출(보증) 위주의 정책금융보다 투자 위주로의 전환, 투자대상 선정과 같은 정책금융의 심사단계에서의 경쟁원칙 마련 필요, 정책금융 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금융 지원대상 기업 선별능력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및 제도 도입 필요 등을 제시함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협조를 통한 투자 방식의 활성화, 투자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함

IV. 결론

- 공공기관에서 동일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중복수행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 시장기능의 발전 저해 등 역기능이 발생하면 조정되어야 함

정책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도 존재하며 이때는 앞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례에서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조체계가 중요

다만 다수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이 더 큰 경우, 해당 사업은 한 기관에서 수행토록 조정하거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비효율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
손상호(2013)는 정책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장과 마찰을 발생하거나 시장기능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시 정부는 역할배분 기준을 제도 중심으로 할지 기관 중심으로 할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선행해야 함

기존 개편관련 논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제도 중심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조정해왔으나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수행한 기능점검은 기관 중심의 개편으로 상충된 기준으로 접근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손상호(2013)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정책금융제도들이 부처별로 산재한 가운데 이들 상호간에 협조·연계가 미흡하여 업무의 중복·상충이 발생하고 종합금융서비스의 공급이 곤란하다고 지적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변화된 정책금융기관의 채널을 효율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중복기능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중장기적으로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공급채널을 일원화하는 것이라고 제시함

- 윤석현(2016)은 정책금융 체계와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책목표 충족(공공성)과 우량한 성과목표 달성(상업성) 간 상충관계가 존재하므로 양자 간 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기존 우리나라 정책금융체계 및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은 정책목표와 성과목표 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운영되어 더욱 비효율 발생

정책금융기관이 정책목표를 경시하고 성과에만 집착하면 이는 민간은행과 다를 바 없으며 반대로 정책목표에만 치중할 경우 정부 의존도가 높아져 관료주의 가능성이 높아짐

그러므로 정책금융기관은 민간은행의 성과지표를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정부는 목표를 제시하되 달성방법은 기관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참고문헌

- 박상인, 『구조조정의 유인체계와 책임소재』, (사)국가미래연구원, 2017.06.21.
- 변현수·이시은·윤경수·한용덕, 『일본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분석 및 시사점』, KDB산업은행, 2016.04.28.
- 윤석현, 『금융환경 변화와 향후 정책금융 추진방향』, KDB산업은행, 2016.4.28.
- 이상엽·이창민, 『정책금융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방안 : 중소기업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12.
- 홍재근, 『외국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운용 현황 및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2012.12.

- 감사원,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결과보고서, 2013.3.14.
- 2013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정무위원회)
- 2014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정무위원회)
- 2015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기획재정위원회)
- 2015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정무위원회)
- 2016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정무위원회)
- 2016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기획재정위원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2013.8.27.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업은행·산업은행 역할 강화」, 2015.10.29.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채무자 재기 지원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 간담회 개최」, 2017.3.7.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은행장 간담회를 통한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 발표」, 2017.4.13.

- 『파이낸셜뉴스』, 「정책금융기관 연내 새틀짜기...신보·기보 업무중복 손보나」, 2015.6.25., <http://www.fnnews.com/news/201506251718099494>, 검색일자:

- 2017.4.17.
- 『세정신문』, 「류성걸,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업무중복 없애야”」, 2015.10.2.,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09587, 검색일자: 2017.4.17.
 - 『SBS CNBC』, 「‘허점 투성이’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어떻게 이뤄지나」, 2015.10.19.,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63497>, 검색일자: 2017.4.17.
 - 『중앙일보』, 「[사설인사이트]정책금융 수술은 빠진 구조조정 대책」, 2016. 6.10., <http://news.joins.com/article/20154355>, 검색일자: 2017.4.17.
 - 『연합뉴스』, 「신보·기보, 중복보증·부실한 중소기업 보증 등 도마 위에」, 2016. 10. 1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4/0200000000A KR20161014104500051.HTML?input=1195m>, 검색일자: 2017. 4. 18.
 - 『뉴스1』, 「무보 수출신용보증 ‘구명승승’ ...페이는 돈 10% 육박」, 2016.10.23., <http://news1.kr/articles/?2809350>, 검색일자: 2017.4.17.
 - 『이투데이』, 「캠코,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기능 일원화 추진」, 2017.2.22.,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58723>, 검색일자: 2017.4.18.
 - 『매일경제』, 「신보·기보 합쳐도 모자랄 판에... “공사로 바꾸고 사업영역 확대”」, 2017.3.2.,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46017>, 검색일자: 2017.4.17.
 - 『국제신문』, 「[CEO칼럼] 정책금융에 대한 기대/이동해 해양종합금융센터장」, 2017.4.18.,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70419,22031190900>, 검색일자: 2017.4.19.

뉴스테이 현황 및 쟁점

이 슬⁰¹

I. 기업형 주택임대제도 도입 배경

- 임대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주택 임대차시장 구조는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어 전세거주 비중이 높은 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커짐⁰²

자가점유비중이 '08년 56.4%, '10년 54.3%, '12년 53.8%, '14년 53.6%로 꾸준히 감소⁰³

'14년 11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 중 보증부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0%로, '11년 같은 기간 대비 8.0%p 증가⁰⁴

'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이 전세 10.1%, 보증부월세 14.0%, 월세 18.3%로 나타남⁰⁵

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slee@kipf.re.kr)

02 진미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2017, p.18

03 국토교통부,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2015.01.13., p.1

04 국토교통부,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2015.01.13., p.1

05 국토교통부,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2015.01.13., p.1

- 전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거주연수는 4년을 채 넘지 못하고 있고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도 가중됨⁰⁶
- 반면 국내의 기존 민간임대사업자는 영세한 수준임
일본 임대사업자 평균 관리호수는 4,765호이지만 국내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평균 7.9호임⁰⁷
- 이러한 주거불안을 완화하고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록(제도권)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⁰⁸
하지만 그동안 등록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확대되다 보니 등록 민간임대주택 재고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었음⁰⁹
정부는 국내 기업형 임대주택은 아직 수요가 초기상태이고 공급기반도 부족하여 선제적으로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¹⁰
- 본고에서는 뉴스테이의 정의 및 지원정책, 도입과정, 사업구조 및 특징, 추진성과 등의 주요 현황과 이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정리하고자 함

II. 뉴스테이 정책의 주요 내용

1. 정의

- 국토교통부는 '15년 1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확

06 진미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2017, p.18

07 국토교통부,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 2015.1.13., p.13

08 진미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2017, p.19

09 진미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2017, p.19

10 국토교통부,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 2015.1.13., p.3

정·발표함¹¹

- 뉴스테이는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기간 8년 이상, 연(年)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중산층에게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임¹²
 -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공급규모와 임대기간, 자금지원 특성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과 일반형 임대주택으로 구분
 - 기업형 임대주택과 일반형 임대주택 중 준공공임대는 계약기간 2년,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4회 이상 갱신하며 거주 가능
 - 기업형과 일반형 임대주택(4년 단기임대)의 차이는 기금 출자 유무와 용자규모 차등
- 뉴스테이 정책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체계적 지원을 통해 중산층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고부가가치 신규산업 육성을 목표로 함¹³

〈표 1〉 기업형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비교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급목적	중산층의 주거안정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공급 대상	중산층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소득4분위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주택 규모	규제 없음	45㎡ 이하	60㎡ 이하	40㎡ 이하

출처: 국토교통부,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 2015.1.13, p.14

2.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정책

- 뉴스테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11 국토교통부,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 2015.01.13, p.1

12 신용상·이상명·이수욱·이태리 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2017.2, p.20

13 신용상·이상명·이수욱·이태리 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2017.2, pp.21~22

필요

정부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저렴한 택지공급,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 취득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 인허가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침을 수립하고 관련 법 제정 추진¹⁴

- 뉴스테이의 근거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8.28일에 공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9월 입법 예고, 지침 10월 행정 예고)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2015년 12월 29일 정식 시행됨¹⁵

위 법은 다음과 같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신설 또는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¹⁶

- 첫째, 기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함¹⁷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유기기간(5년)과 연간 임대료 인상률(연 5%)에 대한 규제만 유지

분양전환의무(임차인의 선취득권 인정), 임차인 자격(무주택자 등), 초기임대료 설정,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 및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됨

- 다만, 임대유기기간의 경우, 주택의 유형에 따라 기존의 5년과 10년간 부과되던 임대유기기간이 각각 4년과 8년으로 1년과 2년이 단축됨

- 둘째, 8년 이상, 일정 호수 이상을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각종 혜택 부여¹⁸

공공부문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택지를 공급하고, 개발면적이 일정규모(국토교

14 최현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15.12, p.80

15 건설경제연구실, 「2016년 건설부동산 7대 이슈」, 2016, p.13

16 장경석,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현황과 정책 과제」, 2015.12, p.336

17 장경석,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현황과 정책 과제」, 2015.12, pp.336-337

18 장경석,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현황과 정책 과제」, 2015.12, pp.336-337

통부는 1만㎡로 상정) 이상이 될 경우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절차를 간소화

- 대규모 촉진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동 지구지정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함
 - 또한 촉진지구 내 1/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협의매수한) 민간임대사업 시행자에게는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게 됨
-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함

■ 셋째,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 부여¹⁹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면제 및 감면대상을 확대
기업형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 8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및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감면

〈표 2〉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강화 (기존 10년 건설→8년 장기임대로 전환)

구 분	10년건설	준공공임대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	
			건설	매입
취득세	60㎡ 이하 면제 (60~85㎡ 25% 감면)	60㎡ 이하 면제	60㎡ 이하 면제 60~85㎡ 50% 감면	
재산세	60㎡ 이하 50% 감면 60~85㎡ 25% 감면	40㎡ 이하 면제 40~60㎡ 75% 60~85㎡ 50%	40㎡ 이하 면제 40~60㎡ 75% 60~85㎡ 50%	
소득세 법인세	85㎡ 이하 20% 감면 (기준시가 3억 이하)	85㎡이하 50% 감면 (기준시가 3억 이하)	85㎡ 이하 75% 감면 (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	
양도세	장특 30%	장특 60%(매입) (*17년까지 신규구입시 면제)	85㎡ 이하 10년임대시 장특공제 70% (매입임대는 *17년까지 신규구입시 양도세 면제)	

출처: 국토교통부,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2015.1.13., p.9

¹⁹ 장경석,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현황과 정책 과제」, 2015.12, pp.336-337

■ 넷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²⁰

임대사업자의 주택건설 및 매입자금의 대출금액한도를 높이고, 대출금리는 인하하며,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 출자를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 강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85㎡ 초과 주택에 대한 기금 대출도 허용

〈표 3〉 8년형 장기 건설임대 용자금리 인하

기간	현행		개선안				
	규모	60㎡이하	60~85㎡	85㎡~135㎡	85㎡~135㎡		
5/10년 민간공임		2.7%	3.7% (*15년 3.3%)	4년 (건설, 매입)	3.0%	3.5%	4.0%
10년 준공공매입		2.7% (*15년 한시 2.0%)		8년 (건설, 매입)	2.0%	2.5%	3.0%

출처: 국토교통부,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2015.1.13., p.8

■ 다섯째, 기존의 도시·건축 규제 대폭 완화²¹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업무·판매시설 등의 설치 허용
촉진지구 내에는 건축기준,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주차장 설치 및 주택건설기준 등 도시계획 및 건축 규제 완화

3. 도입 과정

■ 단기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로 빠르게 시
장에 정착되고 있음²²

뉴스테이는 공급목표는 도입 당시 '15년 1월에는 1만호였으나 동년 「9.3 대책」(서

20 장경석,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현황과 정책 과제」, 2015.12, pp.336-337

21 장경석,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현황과 정책 과제」, 2015.12, pp.336-337

22 허윤경, 「뉴스테이의 성과와 과제」, 2016, p.1

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서는 2만호로 확대됨²³

- 사업방식의 다양화(민간 제안, LH 택지공모, 도시정비 연계), 임대사업 종합금융 보증 실시(2015.3.18), 추가적인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를 이용함

국토교통부는 16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뉴스테이의 목표 물량을 13만호로 대폭 확대했고 '16년 「4.28 대책」(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에서 다시 15만호(부지 확보 기준)로 확대함²⁴

〈표 4〉 뉴스테이 정책의 도입 경과

시 기	내 용
2015.1.13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New Stay정책) 발표(관계부처합동)
2015.8.2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정, 동법 시행령(12.28), 시행규칙(12.29) 제정
2015.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통해 모리츠(허브리츠) 구조 도입. 기금은 리스크 분산 위해 모리츠에 출자, 모리츠가 다수의 자리츠에 재출자하는 모리츠 도입. 재무적 투자자(FI) 참여 유도를 위해 모리츠 주식상장 및 p-ABS 발행 추진
2015.11.13.	뉴스테이 사업에 모수형 리츠 적용위해 모리츠에 해당하는 'New Stay HUB 위탁관리리츠(자산관리회사 : LH)' 설립
2016.1.14.	국토부 업무보고(내수 진작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2017년까지 총 13만호 사업부지 확보, 8만 호 공급(리츠영업 인가), 4만 호 입주자 모집
2016.3.3.	토지지원리츠 도입방침 발표('뉴스테이에 민간자금 투자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4.27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 : 사업부지확보 2017년까지 13만 → 15만 호로 확대 (2016년 0.5만 호 ↑, 2017년 1.5만 호 ↑), 토지지원리츠 도입,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 강화 등 추가적인 규제완화 발표
2016.7.7.	'투자활성화 대책 : 신산업 육성 중심(관계부처 합동)' 발표, 뉴스테이에 대한 금융기관 투자 규제 개선, 부동산펀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리츠 공모 및 상장 요건 완화, 주택임대관리업 역량 강화 등
2016.7.25.	LH 공모형 뉴스테이 사업, 점진적인 토지지원리츠 형태로 전환 발표 (LH보유토지 활용한 공모형 → 토지지원리츠확대)

출처: 신용상·이상명·이수욱·이태리 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2017.2, p.18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23 진미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2017, p.20

24 진미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2017, p.20

4. 사업구조 및 특징²⁵

- 저소득층 임대주택 건설은 ‘재정지원+LH등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중산층 임대주택 건설은 ‘다각적인 정책지원+민간부문’으로 위임
민간임대주택 관리는 민간임대관리회사, 법인, 개인 등 민간부문(기업형 임대사업자 등) 육성을 통해 시행.
특히, 기업형 임대사업자 중 리츠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사·투자자·민간주택임대관리회사 등이 리츠를 설립하고, 계획과 시공·관리운영 업무까지를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방

- 뉴스테이 공급방식 및 사업구조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LH 공모사업, (연계형)정비사업, 민간제안사업 등 4개 유형임
뉴스테이 공급은 2015년까지는 민간제안(2014년부터 시작) 및 LH 공모사업 등 2가지 형태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법률 제정 이후 공급촉진지구와 정비사업 형태가 추가되어 2016년부터 시작
 - 공급촉진지구는 그린벨트, 노후공업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지 등을 활용(법 제 22조 등)
 - LH 공모사업은 LH 보유부지 중 주거여건이 우수한 부지 등 선정(법 제18조 등)
 - 연계형 정비사업은 장기간 사업이 침체된 재건축 재개발지구 활용
 -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도심내 택지 등 활용

- 뉴스테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리츠(REITs)라는 부동산간접 투자기구를 활용하여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대부분 리츠(REITs) 형태의 투자를 통해 확보하고 이에 따라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는 위탁형²⁶ 리츠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²⁵ 신용상·이상명·이수옥·이태리 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2017.2, pp.25-26

²⁶ 위탁형이 아닌 자기관리형이거나, 임대주택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는 법인세 부담

경우가 많음

뉴스테이는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임대주택리츠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법인세 면제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혜택을 받음

- 뉴스테이 공급 방식 다양화와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임대형 뉴스테이도 추진
 뉴스테이 리츠가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 이외에도, 기금·LH 등 공공이 출자하여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뉴스테이 리츠에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형 뉴스테이 도입

[그림 1] 토지임대형 뉴스테이(토지지원리츠 방식) 사업구조



출처: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에 민간자금 투자 확대한다」, 2016.3.3. p.3

5. 추진성과

- 뉴스테이 공급은 '15년부터 '17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음
 '15~'16년 부지확보 8.9만호, 영업인가 4.3만호, 입주자 모집 1.8만호 실적을 올렸으며, '17년 부지확보 6.1만호, 영업인가 4.2만호, 입주자 모집 2.2만호 공급을 추진할 예정
 17년 7월에 첫 입주 예정으로 서울에 한 653세대 정도 준공 예정임²⁷

²⁷ 『KBS』, 「[KBS 공감토론] "뉴스테이 도입 3년, 바람직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방향은?"」, 2017.4.26.

〈표 5〉 뉴스테이 실적 및 목표 (2015~2017년)

구분	공급목표('15~'17)	'15년(실적)	'16년(실적)	'17년(목표)
부지확보	15만호	2.4만호	6.5만호	6.1만호
영업인가	8.5만호	1.4만호	2.9만호	4.2만호
입주자모집	4.0만호	0.6만호	1.2만호	2.2만호

출처: 국토교통부, 「2017년에도 뉴스테이 6.1만호 부지확보 추진」, 2017.1.18., p.2

- 뉴스테이 공급방식 및 사업구조별 세부적인 공급호수는 다음의 〈표 6〉과 같음
2015년에는 비촉진지구 민간제한과 택지공모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법 시행 후인 2016년에는 공급촉진지구, 연계형 정비사업이 활발해짐²⁸

〈표 6〉 뉴스테이 추진사업 및 공급호수 (2015~2016년)

민간제한사업						
비촉진지구형				공급촉진지구형		
민간 보유 토지에서 공급				5천㎡ 이상 부지에서 50% 이상 뉴스테이 공급		
4개 단지('16년 이후 하나금융그룹 예정지)				15개 지구		
차수	권역	지역	주택호수	차수	지역	주택호수
'15년	수도권	인천 도화	2,105	선도 ('16년)	서울시 영등포 문래동	737
		서울 신당	718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5,200
		서울 대림	293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2,400
		수원 권선	2,400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300
'16년(하나금융그룹)	수도권	서울 종로구 송인동	170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600
		서울 용산구 청파동	268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1,400
		인천 논현동	376		부산시 기장군 청강리	1,100
		인천 부평구	1,186		대구시 남구 대명동	409
	지방	수원 팔달구 영동	62			
		대전 서구 둔산동	320			
		포항 북구 죽도동	420			
		전주 완산구 경원동	406			

28 허윤경, 「뉴스테이의 성과와 과제」, 2016, p.2

민간제한사업						
'17년 (하나금융 그룹)	수도권	서울 종로구 송인동	95	2차 ('16년)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1,500
		서울 동대문구	98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2,900
		수원 팔달구	341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5,700
		인천 중구	135			
	지방	부산 연제구	312	3차 ('16년)	경기도 화성시 능동	900
		부산 중구	183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대구 달서구	273		경기도 용인시 언남동	
		대구 남구	219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광주 동구	293			
		익산	415			
		목포	152			
	합 계		11,240	합 계		31,446
택지 공모사업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공택지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공급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정비사업지구 등에 공급			
16개 단지			18개 단지			
차수	지역	주택호수	연도	권역	지역	주택호수
1차 ('15년)	화성동탄2(A-14)	1,135	'15년 (3)	경기 1	인천 심정2	3,000
	위례	360			인천 청천2	3,500
	김포한강(Ab-04)	1,770		광주 1	광주 누문	3,000
2차 ('15년)	화성동탄2(A-95)	612	'16년 (15)	서울 1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	333
	충북혁신	1,345		경기 3	고양 능곡6구역 도시환경정비	2,278
3차 ('15년)	화성동탄2(B-15, B-16)	483		의정부 장암생활권 3구역 재개발	603	
	수원호매실	800		파주 금촌2동2지구 재개발	666	
4차 ('15년)	대구금호	591		인천 6	금송 재개발	1,942
	인천서창2	1,212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	1,384
	김포한강(Ab-22)	912			도화1구역 재개발	1,524
5차 ('16년)	화성동탄2 A-92	774			부평4구역 재개발	1,784
	시흥장현 B-6	651			미추8구역 재개발	2,744
	화성봉담2 B-3	1,004			송림1,2동(현대상가) 재개발	1,951
6차 ('16년)	광주효천 A-2	615		충남 1	천안 원성동 재건축	1,800
	영등포 교정시설	2,214		대구 1	내당내서 재건축	356
7차 ('16년)	대구국가 산단	1,038		부산 3	우암1구역 재개발	1,776
	김해율하2	974			우암2구역 재개발	2,691
	서울양원	332			감천2구역 재개발	1,806
	파주운정3	846				
합 계		17,668	합 계		33,138	

출처: 허윤경, 「뉴스테이의 성과와 과제」, 2016. p.2

국토교통부, 「'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15개 후보구역 선정」, 2015.2.17., p.1

국토교통부, 「하나금융, 도심형 뉴스테이 6천호 추가 공급 제안」, 2016.3.11., p.3

뉴스테이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newstay/sub_takij.jsp (검색일자: 2017.5.8.)를 이용하여 저자 재작성

- 뉴스테이는 리츠방식을 전제로 추진함에 따라 국내 리츠시장은 물론 관련 산업의 성장도 병행되고 있음²⁹

2015년 9월 말 현재 신규 인가 리츠는 27개(공공 임대 리츠 포함)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으며, 자산 규모도 17.2조원으로 성장

뉴스테이가 리츠로 추진되면서 금융기관들의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으며, 임대주택과 연계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회사, 가전 및 자동차 렌탈 회사, 카드회사 등에서도 뉴스테이와 연계된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음

뉴스테이 운영을 위한 주택임대관리회사는 2014년 19개에서 153개(2015. 6)로 급증하였으며 등록 준비 중에 있는 임대관리회사도 많아 내년에는 등록업체 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III. 뉴스테이를 둘러싼 쟁점³⁰

- 찬성하는 입장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침체된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움

뉴스테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제도적인 법령 정비와 함께 새로운 금융·세제지원정책 등이 실시되면 민간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인인 적정수익률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 수익성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중산층 이상의 가계를 겨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중산층의 주택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간접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

-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장점과 단점의 적절한 비교를 주장하고 있음

29 건설경제연구소, 「2016년 건설부동산 7대 이슈」, 2016, p.14

30 이순배,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공익성과 수혜귀착에 관한 연구」, 2017, pp.60-61 정리

임대주택시장의 불안정 해소, 건설투자의 경제효과 및 종합주거서비스 향상에 의한 부가가치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임대무기간 후 분양전환은 장기임대주택의 확보라는 취지에 부적합하고, 임대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대수요가 많은 도심에서의 지속적인 택지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와 공적지원에 상응하는 의무부여가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함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기본취지는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켜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려는 점도 있지만,

-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종전의 임대사업자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공공 기여에 대한 의무가 규제완화 조치로 대폭 감소함으로써 개발이익만 취하고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의 속성상 장기임대인으로 임대주택시장에 머물지 않고 수익을 가져다주는 분양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사업자에 준하는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적다는 주장을 제시함

■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8년 임대주택으로서의 단순한 공적기능은 이미 기존의 5년과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도 수행되어 왔음을 강조

임차료 등의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하여 국·공유지의 이용 매입 및 토지개발에 관한 수용권 부여와 공공택지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까지 두는 것은 과도한 특혜의 남발이라고 주장함

따라서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익성은 거의 없고, 매각에 의한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사업자에게 넘겨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함

수익성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특성상 저렴한 임대료보다는 시장논리에 바탕을 둔 임대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논리에 따른 고가의 임대료 책정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³¹

³¹ 최현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15 p.94

- 아래의 표는 정부가 발표한 동일한 시군구 내 유사한 면적의 유사한 주택을 대상으로 비교한 주변시세와 임대료임
- 정부가 책정한 임대료는 주변시세와 별로 큰 차이가 없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음

〈표 7〉 뉴스테이 예정지구 인근 임대시세

구분	평형	임대료	주변시세 (보증부 월세)	조사방법	비고
인천도화 (2,108호)	59㎡	5천/43만	5천/48만	반경 5km 이내, 준공10년 이내, 임대료 평균	시세 이하
	72㎡	6천/48만	6천/49만		
	84㎡	6.5천/55만	6.5천/57만		
수원권선 (2,400호)	59㎡	3천/70만	3천/69만	반경 5km이내, 준공10년이내, 임대료 평균	시세 수준
	74㎡	5천/75만	5천/75만		
	84㎡	6천/80만	6천/80만		
신당동 (729호)	24㎡	1천/65만	1천/63만	반경 5km 이내, 준공10년 이내, 임대료 평균	시세 이하
	30㎡	4천/75만	4천/77만		
	59㎡	1억/100만	1억/111만		
대림동 (293호)	29㎡	1천/70만	1천/70만	반경 5km 이내, 준공10년 이내, 임대료 평균	시세 수준
	35㎡	1천/100만	1천/100만		
	37㎡	1천/106만	1천/106만		

출처: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민간제한 리츠로 수도권에 5,500호 공급」, 2015.05.14., p.12

IV. 결론

-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뉴스테이 정책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임대주택 정책으로 임대료 상승률 5% 이하에 최소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약 15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실적을 거두었음

또한 뉴스테이 정책은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기금·리츠·FI·건설사

등 임대주택사업 참여주체를 다양화시켰다는 평³²도 있음

■ 하지만 한편으로는 임대료가 높으며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므로 뉴스테이의 공공성이 낮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음³³

■ 뉴스테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성(정부)-수익성(민간 공급자)-부담가능성(정책 수혜자) 간의 균형이 필요할 것임³⁴

민간기업과 투자자 등 뉴스테이 사업자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임대료가 높아질수록 수요자의 뉴스테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해야 함³⁵

- 뉴스테이 입주의향이 없는 이유로 '임대료가 일반 전월세 집보다 비쌀 것 같아서'를 26.1%로 가장 많이 꼽음³⁶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이 결실을 보려면, 사업주체와 공급방식의 공공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³⁷

32 『한겨레』, 「뉴스테이, 공급방식 다양화하고 임대료 낮춰야」, 2017.4.5.

33 『KBS』, 「[KBS 공감토론] "뉴스테이 도입 3년, 바람직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방향은?"」, 2017.4.26.

34 『한겨레』, 「뉴스테이, 공급방식 다양화하고 임대료 낮춰야」, 2017.4.5.

35 『한겨레』, 「뉴스테이, 공급방식 다양화하고 임대료 낮춰야」, 2017.4.5.

36 『비즈니스위치』, 「뉴스테이, 민간 임대주택산업으로 육성해야」, 2017.4.6.

37 『한겨레』, 「뉴스테이, 공급방식 다양화하고 임대료 낮춰야」, 2017.4.5.

참고문헌

- 건설경제연구소, 「2016년 건설부동산 7대 이슈」,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5.11.12, pp.8~27
- 신용상·이상명·이수욱·이태리 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7.2
- 이순배,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공익성과 수혜귀착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 77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pp.55~94
- 장경석,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5.12
- 진미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부동산포커스』, 제104권, 한국감정원, KAB 부동산연구원, 2017, pp.17~28
- 최현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제16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5.12, pp.79~100
- 허윤경, 「뉴스테이의 성과와 과제」,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주택학회, 2016, pp.539~549
- 관계부처합동,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2015.1.13.
- 국토교통부, 「『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15개 후보구역 선정」, 2015.2.17.
-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민간제한 리츠로 수도권에 5,500호 공급」, 2015.05.14.
-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에 민간자금 투자 확대한다」, 2016.3.3.
- 국토교통부, 「하나금융, 도심형 뉴스테이 6천호 추가 공급 제안」, 2016.3.11.
- 국토교통부, 「2017년에도 뉴스테이 6.1만호 부지확보 추진」, 2017.01.18.
- 『비즈니스위치』, 「뉴스테이, 민간 임대주택산업으로 육성해야」, 2017.4.6.
- 『한겨레』, 「뉴스테이, 공급방식 다양화하고 임대료 낮춰야」, 2017.4.5.
- 『KBS』, 「[KBS 공감토론] “뉴스테이 도입 3년, 바람직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방향은?”」, 2017.4.26.
- 뉴스테이 정책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newstay/sub_takji.jsp 검색일자: 2017.5.8.

공공기관과 고용정책

서 니 나⁰¹

I. 배 경

- 우리나라는 고용절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⁰²

지난 4월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두 번째 최대 실적을 거둬에 따라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나감. 반도체 수출이 역대 2위로 호황임을 보여주었고, 선박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이러한 수출 회복세에 비해 일자리는 정체수준에 머물러 고용 없는 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임

- 현 정부는 OECD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⁰³을 절반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함⁰⁴

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nnseo@kipf.re.kr)

02 『한국일보』, 「수출 증가하는데 일자리는 뒷걸음 '고용 없는 회복」, 2017.5.2.,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2141728001&code=920100, 검색일자: 2017.5.11.

03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OECD 평균 21.3%, 한국 7.6%

04 『조선일보』, 「文대통령 '1호' 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2017.5.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1/2017051100267.html, 검색일자: 2017.5.11.

악화된 청년 고용지표⁰⁵를 개선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계획함

- 이하에서는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고용 관련 서비스 현황과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서 기여해 온 부분을 살펴보고자 함

II. 고용정책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

1.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규모 추이

-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는 합리화 계획 대비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음⁰⁶

'17년도 전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의 경우, 19,800여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16년 계획 대비 약 1,300명, 합리화 계획 대비 약 1,800명을 초과하는 수준에 해당함

- 20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뽑는 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1,271명), 한국수력원자력(661명), 한전KPS(536명), 중소기업은행(457명), 한국농어촌공사(252명), 인천국제공항공사(228명), 한국철도공사(218명), 한국수자원공사(210명) 등이 있음⁰⁷

'13년부터 '16년까지의 채용규모는 평균 1.8만명 수준이며, '13년 7월에 수립한 '13~'17 공공기관 신규채용계획(합리화 계획) 대비 매년 500~1,900여명을 초과하는 규모임

05 2017년 4월 청년(15~29세)실업률은 11.2%로, 지난 해 4월 10.9%보다 높음(통계청, 「2017년 4월 고용동향」, 2017.05.11., p.2)

06 기획재정부, 「201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2016.11.28.,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02&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1.

07 「한국경제신문 JOB」, 「공무원, 공공기관 사상최대 규모 신규채용 '맑음'...대기업은 '최순실 게이트'로 먹구름」, 2017.1.2., <http://blog.naver.com/trues7/220900660693>, 검색일자: 2017.5.11.

〈표 1〉 연도별 신규채용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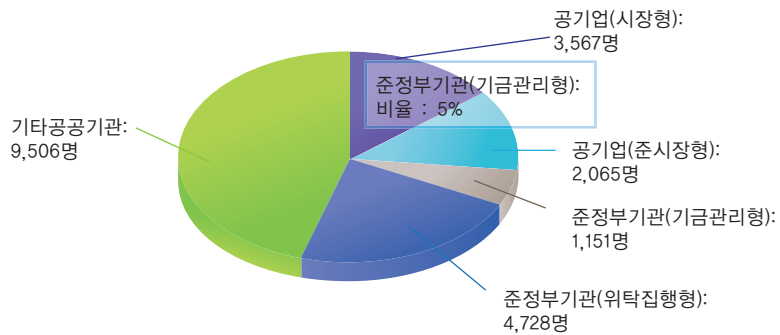
(단위: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신규채용 실적(B)	17,323	17,567	18,932	18,518 ¹⁾	19,862 ²⁾
합리화 계획(A)	16,300	17,000	17,000	18,000	18,000
차이(B-A)	1,023	567	1,932	518	1,862

주: 1) '15.11월 조사한' 16년 채용계획('16.3/4분기까지 실적은 14,790명)
 2) '16.11월 조사한' 17년 채용계획
 출처: 기획재정부, 「201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 '17년 5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016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규모는 21,016명⁰⁸으로 '16년 채용계획 규모(18,518)보다 13% 증가하였음⁰⁹
-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공공기관(9,506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728명), 시장형 공기업(3,567명), 준시장형 공기업(2,065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151명) 순으로 신규채용이 이루어짐

〈그림 1〉 공공기관 유형별 신규 채용 현황 (2016년 12월말 기준)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08 2016년 12월말 기준

09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http://www.alio.go.kr/statisticsStat3.do>, 검색일자: 2017.5.11.

■ OECD(2015) 자료¹⁰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전체 고용 비중의 7.6%, 전체 노동인구 비중의 7.4%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는 OECD 평균 21.3%¹¹와 19.3%¹²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¹³

이를 근거로 현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려 공공 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도모하려는 계획임

OECD(2009) 자료¹⁴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¹⁵ 부문의 고용자 수가 전체 고용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인 22.6%에 못 미치는 수준임¹⁶

- 사회서비스는 반숙련·저숙련¹⁷ 인력의 취업이 용이하고, 사회서비스 산업이 저발전한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할 관련 수요가 확대될 잠재력이 크다¹⁸는 점에서 고용유발효과가 큰 부문 중 하나임¹⁹
-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상황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복지분야에 대한 고용창출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¹⁰ OECD,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2015, p.2.

¹¹ 전체 고용 비중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중

¹² 전체 노동인구 비중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중

¹³ 행정자치부, 「한눈에 보는 정부: 한국과 OECD국가간 비교(요약)」, 2016.6.22., p.5.

¹⁴ OECD, 「OECD in Figures」, 2009.

¹⁵ 교육, 보건, 사회서비스

¹⁶ 최영출, 「주요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지원제도 개선방향」, 『한국비교정보학회보』, 2011.08., p.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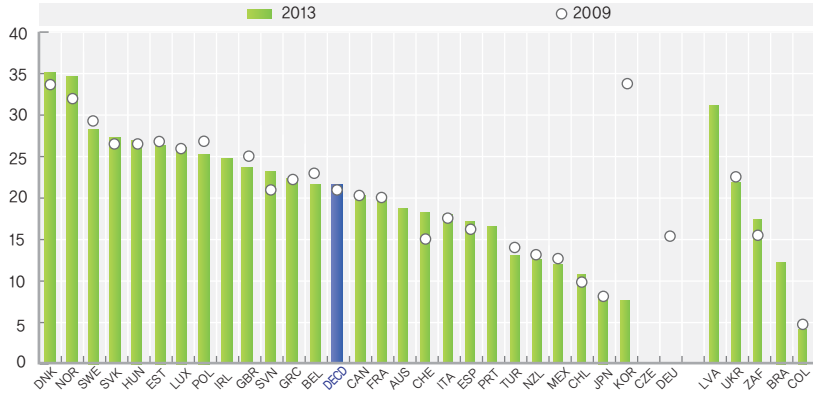
¹⁷ 저소득층 주부, 여성가장, 노인, 장애인 등

¹⁸ (사례)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수요를 볼 때 일본의 개호보험 수급자는 전체 노인의 16%인 반면, 한국은 4.6%('09년 23만명)로, 일본에 비해 낮은 고령화율을 고려했을 때 성장잠재력이 큼. 장애인재활 서비스의 경우, 재활전문인력의 고용이 매우 취약하나, 이에 대한 잠재 수요도 큼.(강해규, 2009, p.13.)

¹⁹ 강해규,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의 의미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09, p.13.

[그림 2]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2009년과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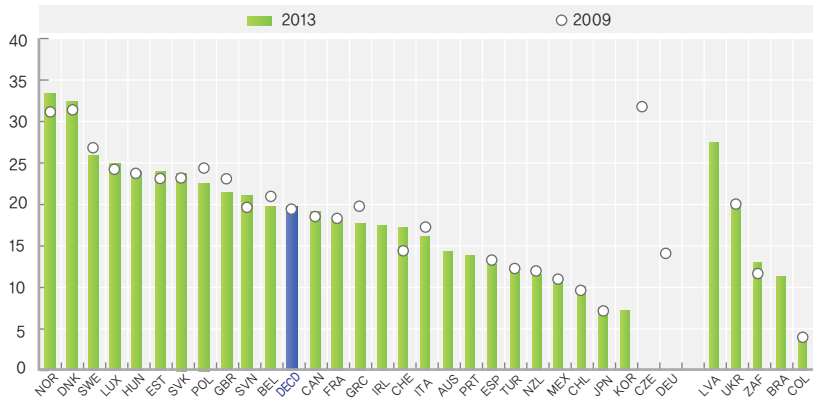
(단위: %)



출처: OECD(2015),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ILOSTAT(database)

[그림 3] 전체 노동인구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2009년과 2013년)

(단위: %)



출처: OECD(2015),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ILOSTAT(database)

〈표 2〉 OECD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고용자 수가 총 고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구분	교육, 보건, 사회서비스(2007)	교육, 보건, 사회서비스(1997)
Australia	23,9	22,7
Austria	21,0	19,3
Belgium	24,2	22,9
Canada	22,6	22,6
Czech Republic	14,7	13,4
Denmark	28,6	28,2
Finland	26,4	25,1
France	25,1	24,2
Germany	23,5	20,9
Greece	18,2	15,1
Hungary	19,5	19,3
Iceland	29,6	28,4
Ireland	22,6	20,8
Italy	22,9	22,0
Japan	19,4	15,2
Korea	19,0	12,4
Luxembourg	17,1	17,0
Mexico	16,0	..
Netherlands	26,7	24,7
New Zealand	24,9	23,8
Norway	30,7	28,7
Poland	15,9	16,8
Portugal	17,0	16,2
Slovak Republic	16,5	18,0
Spain	20,3	18,7
Sweden	32,8	31,4
Switzerland	23,5	21,7
Turkey
United Kingdom	26,1	23,1
United States	26,7	24,3
OECD Total	22,6	21,3

출처: OECD(2009), 최영출(2011), p.53.

〈표 3〉 현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 계획

공약명	비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81만개)	소방관·교사·경찰관·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개 보건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공공기관) 직접고용 전환 및 시간단축 30만개 '17년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명 추가 채용 등
청년·노인 일자리 정책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민간으로 확대 계획 할당제를 위반하는 기업은 고용분담금 부담 노인 일자리의 경우,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급식 도우미 등 분야에서 80만개 창출

출처: 한겨레, 기사내용을 저자가 재구성함

- 한편 OECD 통계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OECD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OECD의 공공부문 일자리의 '방법과 기준'에 따르면 해당 데이터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것으로, 각국에서 공공부문을 정의한 국민계정체계(SNA)에 기반해 모든 종류의 정부부처²⁰와 공권력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등이 포함됨²¹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자치부에 의해 자료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나, 한국은행 SNA를 토대로 OECD 기준을 따른 것²²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 집계한 행자부 자료에 중앙과 지방의 공기업, 비영리공공기관 등을 포함시켜 산출함²³
- 국가통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17년 6~7월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 중임²⁴

20 중앙, 주, 지방 등

21 『한국일보』, 「[팩트파인더]안철수 "OECD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엔 공공기관 등 빠졌다"?, 2017.4.27., <http://www.hankookilbo.com/v/f826c1b9a2e54125889b05e9f01abc25>, 검색일자: 2017.5.12.

22 국내에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를 보여주는 공식통계가 없는 상황임(『국민일보』, 「[단독]공공 일자리 비중 8.5~9.6%...OECD평균의 절반 안돼」, 2017.5.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43956&code=11151100&sid1=yeo>, 검색일자: 2017.5.12.

23 『한국일보』, 「[팩트파인더]안철수 "OECD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엔 공공기관 등 빠졌다"?, 2017.4.27., <http://www.hankookilbo.com/v/f826c1b9a2e54125889b05e9f01abc25>, 검색일자: 2017.5.12.

24 『국민일보』, 「[단독]공공 일자리 비중 8.5~9.6%...OECD평균의 절반 안돼」, 2017.5.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43956&code=11151100&sid1=yeo>, 검색일자: 2017.5.12.

통계청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성별, 연령별, 산업별, 종사자 임금별, 공공기관 기능별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개발하여 6월 발표하기로 하였음²⁵

2. 고용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제공 서비스

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

- 워크넷은 2011년 7월부터 다양한 기관의 일자리 정보를 연계해오고 있는 가운데 2016년에는 인사혁신처의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등 5개 기관을 추가하여 2016년 말 현재 총 31개 기관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²⁶

이처럼 워크넷은 다양한 취업정보²⁷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기업의 전·현직자들이 익명으로 기업에 대한 리뷰를 입력하는 커뮤니티 ‘잡플래닛’ 과도 협약을 맺어 채용공고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조직문화를 비롯하여 임금, 복지수준 등의 정보도 확인이 가능함

*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은 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협업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고용정보원은 구직자와 기업이 양질의 더 많은 일자리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²⁸

워크넷은 3년 연속 착한브랜드 대상과 같은 대외 수상을 통해 콘텐츠와 서비스의

25 『연합뉴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몇 개?...통계청 6월 발표」, 2017.1.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9/0200000000AKR20170109159400002.HTML>, 검색일자: 2017.5.12.

26 『한국일보』, 「[2017 대한민국 서비스만족대상] 한국고용정보원」, 2017.3.30., <http://www.hankookilbo.com/v/754314d5cfd4f63975c070d523994de>, 검색일자: 2017.5.11.

27 하루 평균 약 26만건의 채용정보가 제공됨

28 『동아일보』, 「[2016 착한브랜드 대상] 워크넷, 구직자들의 필수 아이템」, 2016.5.25., <http://news.donga.com/3/all/20160524/78282605/1>, 검색일자: 2017.5.11.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

-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뿐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RD-Net 등 국가 고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구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여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음²⁹

[그림 4] 워크넷 홈페이지



출처: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net.go.kr)

나. 공공기관 고용디딤돌: 청년구직자의 교육·훈련, 채용연계 지원

- '16년 정부와 공공기관은 청년고용 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1,399명의 청년구직자에게 교육 및 훈련, 채용연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였음³⁰

한국수력원자력(122명), 한전원자력연료(15명), JDC(100명), 마사회(32명) 등은 본사 주관 직무교육과 협력업체 인턴을 거쳐 협력업체 등에 채용을 알선함
한국전력(300명), 5개 발전 자회사(150명), 가스공사(50명), KOBACO(50명)는 본사

29 『내일신문』, 「고용정보원,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 2015.11.27.,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75130, 검색일자: 2017.5.11.

3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으로 1,400명에 지원」, 2015.12.18., http://www.most.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lId1=0LD_4096949&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5.

의 직무교육과 협력업체 인턴을 통해 협력업체 채용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함
 - 특히, 한전기술(200명)은 공공기관과 대학, 협력업체 간 공동으로 6개월 과정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청년 구직자가 현장 직무능력과 전
 문성을 함께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음

* 고용디딤들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협력업체 등과 함께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직업 훈련·인
 턴³¹ 등을 실시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업체 채용 알선과 채용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임

이러한 고용디딤들은 청년 구직자에게는 채용알선과 현장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고용기
 회를 넓히고, 공공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에는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³²

〈표 4〉 기관별 고용디딤들 추진 계획

(단위: 명)

분류	기관명	인원	비고
	합계	1,399	2개월 교육, 3개월 협력업체 인턴, 필요시 협력업체 채용 연계
에너지	한전	300	1개월 교육, 3개월 협력업체 인턴, 필요시 협력업체 채용 연계
	발전 5개사	150	6개월~1년 교육, 원전건설업체 등 채용 알선
	한수원	122	2주 교육, 2개월 협력업체 인턴, 필요시 협력업체 채용 연계
	가스공사	50	2개월 과정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난방	50	1개월 과정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석유공사	30	대학,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6개월 과정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전기술	200	3개월 현장교육 및 협력업체 인턴, 협력업체 채용 알선
	한전원자력연료	15	3개월 교육, 2주 현장실습, 협력업체 채용 알선
SOC	JDC	100	3개월 현장 교육 및 인턴, 유관업체 소개
	철도공사	200	2개월 교육, 3개월 인턴
	농어촌공사	100	4개월 교육, 6개월 협력업체 인턴, 필요시 협력업체 채용 연계
기타	방송광고공사	50	6~8개월 교육 후 말조련사, 승마지도사 등 자격증 취득, 조련센터 등 유관 업체 채용 알선
	마사회	32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용디딤들 프로그램으로 1,400명에 지원」

31 인턴 기간 중 월 130~150만원 지급

3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용디딤들 프로그램으로 1,400명에 지원」, 2015.12.18.,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etail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409694
 9&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5.

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 '05년 12월 구축 및 운영 중이었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Pubmis)을 확대·개편한 공공기관 알리오(ALIO) 시스템을 '06년 12월 29일 개통하였음³³

과거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Pubmis)은 314개('05년 12월 기준) 공공기관의 재무와 인사 등 20개 경영정보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통합 공시하여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국민의 직접 감시체제로 기능해 왔음

개편된 공공기관 알리오(ALIO)는 기존 공개대상에서 누락되었던 7개³⁴ 핵심 경영정보를 추가하여 정보 공개대상과 접근성을 확대하였음

- 또한 '11년 07월 28일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잡-알리오'³⁵를 공식 오픈하였음³⁶

이는 '10년 처음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의 많은 방문객 수³⁷와 박람회에 대한 높은 만족도³⁸를 토대로 공공기관 채용정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결과물임

잡-알리오는 개별 기관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입력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구직자들이 보기 쉽게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함

- 기관 일반현황과 보수수준, 채용실적 등 취업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기관을 복수로 선택한 후 상호 정보도 비교 가능함

3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알리오(ALIO)' 개통,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확대·개편」, 2006.12.29.,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28&searchNttId=OLD_221946&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1.

34 장·단기 차입금 현황, 투자 및 출자현황, 출연 및 증여, 직원의 연간 평균보수액,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경영부담요소 비용추계, 대규모 공공기관 집단별 경영정보

35 <http://job.alio.go.kr>

36 기획재정부, 「285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공공기관 채용저보 홈페이지 오픈」, 2011.7.28.,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28&searchNttId=OLD_4010114&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1.

37 최근 5년간 SETEC 행사 중 최대 방문객수로 1만 7천명의 방문객 수 기록함

38 참가자 만족도 조사에서 참가자의 80% 이상이 만족, 90% 이상이 재참가의사를 표명함

- 공식 오픈 이후 3개월간의 이용실적을 점검한 결과, 구직자의 홈페이지 방문건수는 총 13만건³⁹, 스마트폰용 모바일 홈페이지 방문건수는 총 1.2만건에 달함⁴⁰

 잡-알리오에서 제공하는 직군별(총 41.1만건), 근무지별(총 17.7만건), 우대조건(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별(총 2.2만건) 채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였음

 또한 공공기관 현황정보 중 신규채용현황(총 2.4만건), 신입사원 초임(총 2.2만건), 직원평균보수(총 1.8만건) 정보를 주로 검색하였음
- 이처럼 잡-알리오는 구직자에게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제공함에 따라 구직자의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임

* 알리오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통합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통합공시)에서 지정한 경영공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사이트를 의미함
 ** 잡-알리오는 공공기관의 일반현황 및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관심 있는 기관을 복수로 선택하여 상호 정보를 비교 가능하도록 구축된 공공기관 채용정보 관련 홈페이지를 의미함

[그림 5]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39 메인페이지 접속건수 기준, 일평균 1,459건

40 기획재정부, 「잡알리오 오픈(7.28)이후 이용실적 점검」, 2011.10.28.

http://www.mo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28&searchNttId1=OLD_4011054
 &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1.

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고용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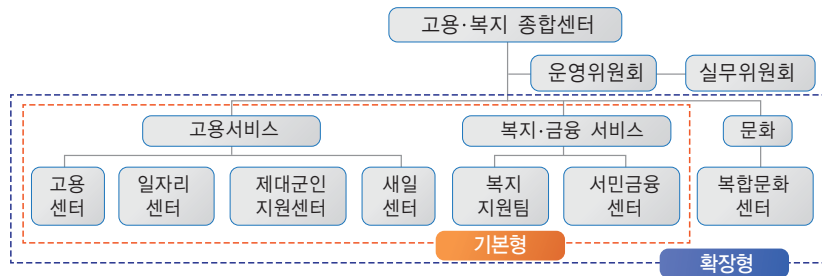
- 고용복지+센터는 고용센터(고용부)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자치단체)등 다양한 참여기관을 통합하여 운영됨에 따라 고용부터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One-stop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⁴¹

서비스 이용자⁴²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 경로가 설정되고, 해당 창구에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창구로 연계되어 서비스⁴³가 제공됨

고용센터가 기존에 있거나 고용센터를 신설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복지+센터가 운영되며, 고용과 복지가 결합된 기본형과 창조경제와 문화 등을 아우르는 확장형을 병행함

- 고용복지+센터는 '14년 10개소가 정착된 이후, '15년과 '16년도에는 전국 30곳을 새로이 설치하였으며 '17년까지 100곳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임

[그림 6]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 및 체계도



출처: 고용노동부(www.moel.go.kr)

41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molab_suda/220690283933, 검색일자: 2017.5.11.

42 서비스 이용자는 크게 구직희망자, 실업급여 수급자, 경력단절 여성, 제대군인, 저소득 취약계층, 구인기업으로 분류됨

43 고용센터(취업지원, 집단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등의 서비스 지원), 일자리센터(구인, 구직상담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여성새일센터(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대군인센터(구직 및 창업상담, 채용 정보제공, 창업워크숍,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복지지원팀(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신청,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 지원), 서민금융센터(서민층 저리자금, 신용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등의 서민금융 지원 서비스 지원)

* 고용복지'센터의 의미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 △고용·복지 등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고용·복지 서비스기관 외 타 기관 참여가 가능한 개방성(+), △국민 입장에서는 '1+' 효과,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 '정부 3.0' 정신

3. 공공기관의 고용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반영한 경영평가 지표

- 정부는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음⁴⁴
 -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비계량지표 중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5점)' 과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4점)', '보수 및 복리후생(6점⁴⁵)' 이, 계량지표 중에는 '정부권장정책(6점)' 이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었음⁴⁶
-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반영한 경영평가 지표의 관련 세부 평가내용은 <표 5>의 내용과 같음

44 기획재정부, 「2016.3.25.(금) 머니투데이 「청년실업 난리인데 공공기관은 빈자리...」제하 기사 관련」, 2016.3.25., http://www.most.go.kr/nw/nes/detailNesDtl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9&searchNttId1=MOSF_00000000002972&menuNo=4010200, 검색일자: 2017.5.11.

45 6점 중 3점은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가중치

46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2016.12., pp.16-23.

〈표 5〉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반영한 일부 관련 평가지표

평가지표	가중치	세부 평가내용
비 계 량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5점 ② 민간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인식·관행·제도 등의 불공정한 사항들을 개선하며, 사회공헌 활동,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4점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사회형평성 인력활용 확대, 시간 선택제 일자리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장시간근로 해소, 일과 가정양립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보수 및 복리후생	6점 ③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연령구조, 임금체계, 직무특성 등을 고려한 임금피크제 유형, 적용 대상, 임금조정기간, 임금지급률, 직무개발 등 제도설계의 적절성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목표 달성 여부, 임금피크 대상자의 활용도 등 운영 효과 - 임금피크제 관련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의 적절성
계 량	정부권장정책	6점 ①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대상은 다음과 같음 -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장애인 의무 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등

출처: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pp.16-23.

-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결과⁴⁷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지급되며,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받는 구조⁴⁸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용 정책을 이행하도록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재원을 통한 신규채용

- 2015년 4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을 논의한 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하고 12월 3일 전체 313개(15년 기준) 공공기관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였음⁴⁹

47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의 종합평가결과와 범주별 평가결과를 산출함(『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p.51.)

48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2016.12., p.52.

49 기획재정부, 『313개 전(全)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완료』, 2015.12.6.

http://www.most.go.kr/nw/nes/detailNesDetail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4096818&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1.

임금피크제⁵⁰ 도입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신규채용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16년에 4,400여명을 추가 신규채용하여 전체 채용규모를 1.8만명으로 전망하였음⁵¹

- 주요기관의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는 한국철도공사 567명, 국민건강보험공단 382명, 한국수력원자력 261명, 한국전력공사 248명, 한국농어촌공사 228명 순이었음
-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16년 전체 채용인원 1,070명 중 절반 이상인 567명이 임피제 도입으로 인해 늘어난 신규채용 규모임
-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채용이 전체 신규채용의 86%⁵², 65%⁵³를 각각 차지함으로써 임금피크제가 채용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 적용대상 공공기관 409개 중 이를 이행한 기관은 327개(80%)로, 전년⁵⁴ 대비 청년고용의무 준수 비율이 9.9%p, 기관 수는 41개 증가하였음⁵⁵

이처럼 의무이행 준수율이 높아진 데 대하여 고용부는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 정원 활용 등 영향으로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채용 여력이 생겼다고 분석하였음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신규고용해야 함

- 이처럼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이 실제 신규채용으로 연계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기관별 채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관의 업무와 조직 특성에 따라 임금

50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 또는 보장하면서 일정 연령 이후의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5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신규채용 착수」, 2016.2.24., http://www.most.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2511&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1.

52 임금피크제 신규채용 140명/ 전체채용 168명=83%

53 임금피크제 신규채용 228명/ 전체채용 353명=65%

54 286개(70.1%)

55 「아시아투데이」, 「작년 청년의무고용제 적용 공공기관 이행률 80%...9.9%p 증가」, 2017.3.30.,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330010020030>, 검색일자: 2017.5.11.

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적합직무 개발과 동기부여 방안 마련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임⁵⁶

〈표 6〉 '16년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계획

(단위: 명)

기관명	'16년 전체채용	'16년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계획				
		계	1/4분기	2/4	3/4	4/4
전체 공공기관	18,518	4,403	322	1,499	618	1,964
한국철도공사	1,070	567	-	295	-	272
국민건강보험공단	803	382	-	-	179	203
한국수력원자력(주)	809	261	-	141	-	120
한국전력공사	1,255	248	124	124	-	-
한국농어촌공사	353	228	-	-	-	228
한국국토정보공사	168	140	-	84	-	56
한전KPS(주)	300	131	-	65	-	66
한국토지주택공사	115	109	-	-	109	-
한국도로공사	206	87	-	-	-	87
국민연금공단	230	69	-	29	-	40
한국중부발전(주)	130	68	38	-	30	-
한국수자원공사	291	62	-	61	-	1
한국가스공사	248	61	-	30	-	31
한국전기안전공사	233	60	-	27	-	33
한국조폐공사	65	60	-	28	-	32
한국전력기술(주)	70	59	-	59	-	-
한국동서발전(주)	87	56	47	-	9	-
한국남동발전(주)	100	53	-	31	-	22
한국남부발전(주)	80	52	-	48	-	4
대한적십자사	228	51	-	20	-	31
기타	11,677	1,599	113	457	291	738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신규채용 착수」, 2016.2.24

56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신규채용 착수」, 2016.2.24.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etail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2511&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1.

다. 직무능력중심 채용문화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 '15년 3월, 정부는 청년들의 스펙쌓기 부담을 완화하고, 직무능력에 기반을 둔 채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을 추진하였음⁵⁷

'16년에는 100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능력중심 채용을 도입하여 총 230개 공공기관이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을 도입하였음⁵⁸

-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1개(부산항만공사), 준정부기관 20개(보훈복지의료공단, 언론진흥재단 등), 기타공공기관 79개(한국투자공사, 폴리텍, 노사발전재단 등)임
- 결과적으로 2016년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500인 이상의 기타공공기관(병원, 출연연 제외)은 3개 기관⁵⁹을 제외하고 모두 NCS 기반 능력 중심채용을 도입하였음

* NCS기반 능력중심채용이란 채용대상 직무를 NCS**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직무의 상세내용 및 직무능력*** 평가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공지하며, 해당 평가기준을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방식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임

*** 직무능력은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인 '직업기초능력',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인 '직무수행능력' 등으로 구성됨

■ 이러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NCS 도입에 맞추어 정부는 공공기관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였음⁶⁰

(공공기관) 채용계획 유무와 채용 규모, 모집분야의 수 등 각 기관의 상황에 맞는 컨

5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 2015.3.24.

http://www.most.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4093950&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1.

58 기획재정부, 「NCS기반 채용 100개 공공기관 신규 도입」, 2016.3.31.

http://www.most.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3072&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1.

59 축산물인증원(통합예정), 국방과학연구소(직무 재설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지방이관예정)

60 기획재정부, 「NCS기반 채용 100개 공공기관 신규 도입」, 2016.3.31.

http://www.most.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3072&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1.

설립 지원을 제공하고,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한 상설 교육과정 운영을 계획하였음
 (취업준비생) NCS 기반의 능력중심 채용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용노동청⁶¹에
 서 실시하는 상설 설명회와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16년 하반기에는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을 도입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진대회
 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시키기로 하였음

■ 이러한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은 취업자의 스펙 부담 감소와 공공기관의 채용비용 감
 소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음⁶²

(지질자원연구원) 기존에 영어점수(토익 900점 이상) 기준을 폐지한 후, 영어성적 미
 보유자도 합격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음

(국립공원관리공단)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도입 후 중도퇴사율⁶³과 허수지원자⁶⁴
 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남

〈표 7〉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도입 전후 전형별 주요 변화

구분	기존채용	능력중심 채용
채용공고	행정직 00명, 기술직 00명 등 단순기초정보 제공	- 채용 분야별 필요한 직무명세(NCS기반), 채용전형 등 사전 공개 (모집 직무별 '직무 설명자료' 첨부)
서류전형	-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 (가족사항, 학력, 본적, 취미·특기 등) - 직무와 무관한 스펙 (해외봉사, 토익 등) - 자전적 자기소개서	-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은 최소화 - 직무관련 스펙 (직무관련 교육·자격·경험및경력 등) - 직무관련·경험 중심 자기소개서
필기전형	- 인성·적성 평가, 단순지식 측정 필기시험 등	- 직무능력 측정 중심의 필기평가 (직무관련 상황 및 문항 설정)
면접전형	- 비구조화 면접 (취미, 성장배경 등 직무무관한 일상적 질문)	- 직무능력 평가 중심의 구조화된 면접 (직무관련 질문 및 유형으로 구성)

출처: 기획재정부, 「NCS기반 채용 100개 공공기관 신규 도입」, 2016.3.31

61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62 기획재정부, 「NCS기반 채용 100개 공공기관 신규 도입」, 2016.3.31.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ial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3072&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1.

63 '14년 8.9% → '15년 0%

64 '14년 4,833명 → '15년 2,263명

- 따라서 이러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경우 불필요한 스펙경쟁을 줄이고, 기관 및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 구직자로 하여금 채용비용과 조기이직률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⁶⁵

III. 결론

-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다양한 고용정책⁶⁶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는 매년 합리화 계획 대비 초과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을 고려했을 때 정부는 사회서비스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해당 분야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창출계획⁶⁷
- 또한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취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민간 기업을 포함하여 취업뿐 아니라 조직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넷과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알리오시스템, 일자리와 복지, 서민금융을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음

65 기획재정부, 「NCS기반 채용 100개 공공기관 신규 도입」, 2016.3.31.

http://www.most.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3072&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1.

66 청년의무고용제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직원 채용 등

67 『세계일보』, 「막 오른 문재인정부」 일자리 늘려 내수 활성화...경제정책 패러다임 바뀐다」, 2017.5.14.,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5/14/20170514001657.html?OutUrl=naver>, 검색일자: 2017.5.15.

또한 공공기관은 능력중심 채용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 서 민간부문에든 기존의 채용문화를 변화시키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이는 구직자로 하여금 과도한 스펙쌓기 경쟁을 완화시킴으로써 채용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은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고용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음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경영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기관의 정책 이행을 도모하고 있음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신규채용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적합직무를 개발함으로써 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이행을 위해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공공기관의 용역 파견직을 정규직화하는 한편 생명·위험·안전 관련 업무 등은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이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⁶⁸

'16년 정부는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선도를 위해 상시·지속적이면서 고용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2,732명의 고용개선을 추진하였음⁶⁹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114개 기관 1,881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

- 서울대학교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52개 기관 851명의 정규직(무기계약직)을 기존의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 직급체계를 부여하는 등 처우개선이 이루어짐

- 이처럼 현 정권의 일자리 정책 방향성을 고려할 때 고용부문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은

68 『국민일보』, 「[이슈분석] '공공 비정규직 제로' 실현할 해법은... '자회사」, 2017.5.1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47373&code=11151100&cp=nv>, 검색일자: 2017.5.15.

6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의 고용개선 추진」, 2016.2.17.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2422&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5.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현 정부가 공공 비정규직 제로를 위한 방안을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 수준으로 이루고자 할 때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도 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일률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⁷⁰

- 직접고용 인력의 총인건비 증가율이 고정되어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영평가 기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함
- 업무 특성상⁷¹ 비정규직 형태가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전체를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참고문헌

- 강혜규,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의 의미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2016.
- 최영출, 「주요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지원제도 개선방향」, 『한국비교정보학회보』, 제15권, 제2호, 2011.
- OECD, 「OECD in Figures」, 2009.
- OECD,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2015, p.2.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알리오(ALIO)’ 개통,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확대·개편」,

70 『한국일보』,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증가 '꼼수'에 제동」, 2017.05.12.
<http://www.hankookilbo.com/v/2c10e30281274d98b5a0fb0c0541e35f>, 검색일자: 2017.05.15.

71 단시간 근무자 등

- 2006.12.29.,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221946&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1.
- 기획재정부, 「잡알리오 오픈(7.28)이후 이용실적 점검」, 2011.10.28.,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4011054&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1.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 2015.3.24.,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4093950&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1.
 - 기획재정부, 「313개 전(全)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완료」, 2015.12.6.,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4096818&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1.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으로 1,400명에 지원」, 2015.12.18.,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4096949&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05.15.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의 고용개선 추진」, 2016.2.17.,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02422&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5.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신규채용 착수」, 2016.2.24.,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02511&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1.

- 기획재정부, 「2016.3.25.(금) 머니투데이 「청년실업 난리인데 공공기관은 빈자리...」제하 기사 관련」, 2016.3.25.,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9&searchNttId1=MOSF_00000000002972&menuNo=4010200, 검색일자: 2017.5.11.
- 기획재정부, 「NCS기반 채용 100개 공공기관 신규 도입」, 2016.3.31.,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3072&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1.
- 기획재정부, 「201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2016.11.28.,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06602&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5.11.
- 통계청, 「2017년 4월 고용동향」, 2017.5.11., 검색일자: 2017.5.11.
- 행정자치부, 「한눈에 보는 정부: 한국과 OECD국가간 비교(요약)」, 2016.6.22., p.5.
- 『국민일보』, 「[단독]공공 일자리 비중 8.5~9.6%...OECD평균의 절반 안돼」, 2017.5.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43956&code=11151100&sid1=yeo>, 검색일자: 2017.5.12.
- 『내일신문』, 「고용정보원,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 2015.11.27.,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75130, 검색일자: 2017.5.11.
- 『동아일보』, 「[2016 착한브랜드 대상] 워크넷, 구직자들의 필수 아이템」, 2016.5.25., <http://news.donga.com/3/all/20160524/78282605/1>, 검색일자: 2017.5.11.
- 『세계일보』, 「[막 오른 문재인정부] 일자리 늘려 내수 활성화...경제정책 패러다임 바뀐다」, 2017.5.14.,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5/14/20170514001657.html?OutUrl=naver>, 검색일자: 2017.5.15.
- 『아시아투데이』, 「작년 청년의무고용제 적용 공공기관 이행률 80%...9.9%p

- 증가», 2017.3.30.,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330010020030>, 검색일자: 2017.5.11.
- 『연합뉴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몇 개?...통계청 6월 발표」, 2017.1.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9/0200000000A KR20170109159400002.HTML>, 검색일자: 2017.5.12.
 - 『조선일보』, 「文대통령 ‘1호’ 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2017.05.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1/2017051100267.html, 검색일자: 2017.5.11.
 - 『한국경제신문 JOB』, 「공무원, 공공기관 사상최대 규모 신규채용 ‘맑음’...대기업은 ‘최순실 게이트’로 먹구름」, 2017.01.2., <http://blog.naver.com/trues7/220900660693>, 검색일자: 2017.5.11.
 - 『한국일보』, 「[2017 대한민국 서비스만족대상] 한국고용정보원」, 2017.3.30., <http://www.hankookilbo.com/v/754314d5cfd4f63975c070d523994de>, 검색일자: 2017.5.11.
 - 『한국일보』, 「[팩트파인더]안철수 “OECD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엔 공공기관 등 빠졌다”?」, 2017.4.27., <http://www.hankookilbo.com/v/f826c1b9a2e54125889b05e9f01abc25>, 검색일자: 2017.5.12.
 - 『한겨레』, 「공공일자리 81만개... 경제 패러다임 바꿀 실험」, 2017.5.1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94087.html, 검색일자: 2017.05.12.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molab_suda/220690283933, 검색일자: 2017.5.11.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홈페이지, <http://www.alio.go.kr/statisticsStat3.do>, 검색일자: 2017.5.11.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현황 및 쟁점

송 신 형⁰¹

I. 서론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은 2010년을 전후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여 현재까지 해외에 상당수의 자원개발 관련 자회사들을 소유하고 있음

대다수 에너지 공기업들이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자본이 잠식되는 상황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화되고 있음

자원 판매가 주 수입원인 해외자원개발 자회사들은 자원가격에 크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제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보는 것이 유의미함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자회사들의 최근 5개년 간의 재무구조를 살펴보고 그 성과 및 경영여건을 분석하고자 함

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arctic@kipf.re.kr)

- 지분법 평가로 인해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자회사의 경영실적이 보유지분만큼 모회사에 적용되므로 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은 모회사의 경영성과 측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있는 회사의 경우 지배회사로 하여금 별도재무제표와 함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자회사의 영업실적은 모회사의 지분만큼 모회사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는 구조임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주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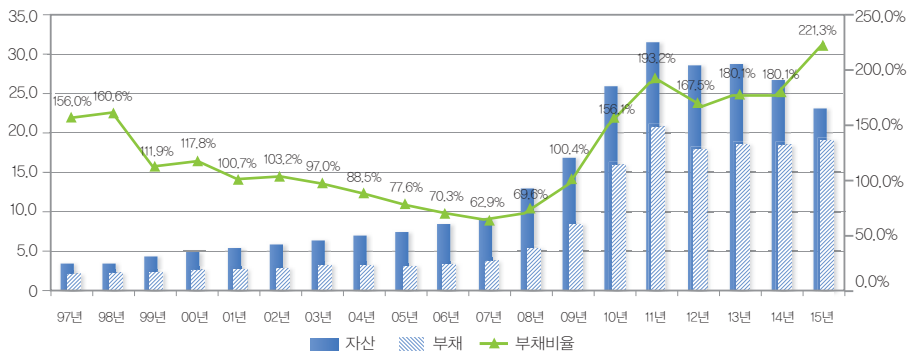
II.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주요재무지표 추이⁰²

1. 한국석유공사

- 한국석유공사의 부채규모는 설립년도인 1997년 2.1조원에서 2015년 19.0조원으로 812.5%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부채비율은 156.0%에서 221.3%로 증가함

[그림 1]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자산,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97~'15)

(단위: 조원, %)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재무구조 추이 및 부채현황 분석』

0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재무구조 추이 및 부채현황 분석('97~'15)』, 2016. 12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4년까지 영업이익은 이자비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5년 들어 급격한 수익성 악화로 영업적자 규모와 이자비용이 비슷한 규모로 나타남

2008년 한국석유공사의 이자보상배율은 18.5배 규모였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14년 1.1배에 이른 뒤 2015년 들어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1.0배의 이자보상비율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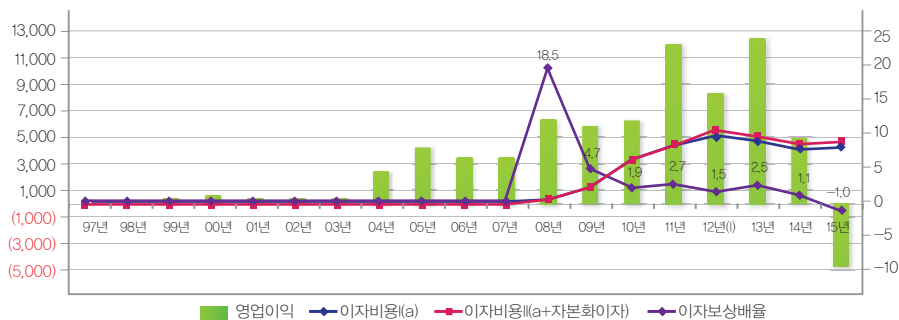
- 유가 하락에 따른 매출액 감소, 사업종료에 따른 자산손상, 환율하락에 따른 차입금환산손실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영업수지가 악화되었음

해외 대형화 사업 추진에 따른 금융부채의 증가로 이자비용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146억원이었던 이자비용은 2015년 현재 4,151억원(자본화이자비용 포함 시 4,481억원)까지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2015년 들어 급격히 줄어들어 전년도 1.1배이었던 이자보상배율⁰³은 -1.0배 수준까지 하락함

2015년 들어 E&P⁰⁴부문에서 약 7.2%의 판매량 증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시황에 따른 평균판매유가의 하락(약 43%)으로 인해 전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9,249억원(21.2%) 감소한 3.4조원을 기록하며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영업적자를 기록함

[그림 2] 한국석유공사의 연도별 영업이익과 이자비용('97~'15)

(단위: 억원, 배)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재무구조 추이 및 부채현황 분석』

03 자본화 이자비용 포함

04 Exploration & Production, 해외석유개발자산

- 한국석유공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들어 총자본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5년의 결손금의 크기가 6.5조원에서 2016년 7.6조원으로 증가하여 결국 1.1조원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짐

또한 매출액의 규모가 전년 3.4조원에서 올해 2.4조원으로 급감하여 결손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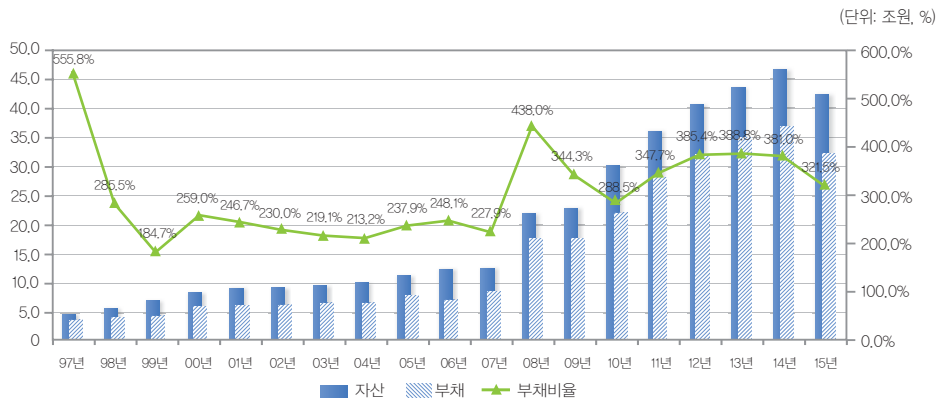
2.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1997년 3.8조원에서 2015년 32.3조원으로 750.7% 증가하였으며, 1998년~2015년 기간 동안 부채비율은 285.5%에서 321.5%로 증가함

2010년 해외자원개발⁰⁵ 투자 급증 및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른 천연가스 저장설비 확충⁰⁶을 위한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차입금 증가

2015년의 경우, 천연가스 판매량 급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매입물량이 약 140만여 톤 감소하였으며, 유가하락에 따른 매입단가 하락으로 전년대비 매입채무는 1.8조원 감소하는 등으로 인해 부채 증가율은 전년대비 12.7% 감소함

[그림 3]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자산,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97~'15)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재무구조 추이 및 부채현황 분석』, 2016.12

05 아카스(akkas: 매장량 5.9억배럴), 만수리아(mansuriyah: 매장량 4.9억배럴)

06 국내(삼척기지 준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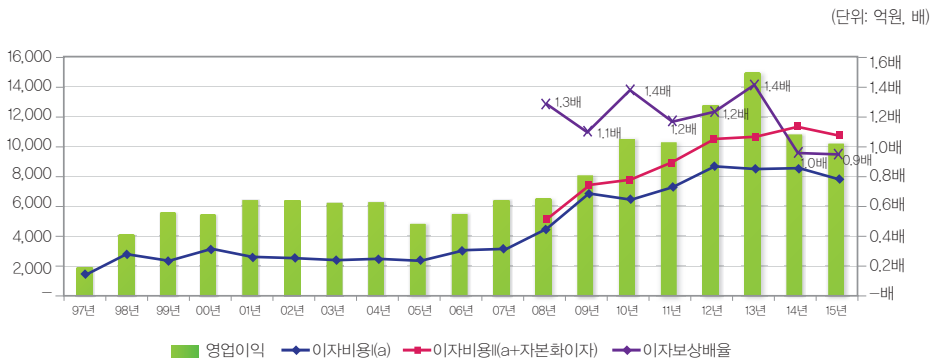
■ (이자보상배율) 한국가스공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08년~2015년도 사이 평균 1.2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2015년의 경우 영업이익은 이자비용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2015년도 이자보상배율은 전년대비 0.1배 감소한 0.9배를 나타냄

2014년의 경우 호주 등 액화사업, 이라크 등 해외자원개발 및 생산사업 등 국내의 투자비 차입에 따른 이자부담금융부채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이자비용이 6.4% 상승하며 전년대비 이자보상배율 0.4배 감소

2015년의 경우 금융리스부채 상환 및 유동성 사채 및 차입금 상환 등으로 전년대비 5.3% 감소하였으나, 유가하락 등에 의한 판매단가 하락 및 판매물량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이 하락하여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하회함

영업이익은 2013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 판매물량 350만톤 감소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8% 감소하였으며, 2015년도의 경우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중속기업 등 해외사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6%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이자보상배율이 감소함

[그림 4] 한국가스공사의 연도별 영업이익과 이자비용('97~'15)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재무구조 추이 및 부채현황 분석』, 2016.12

3.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1997년 약 0.3조원에서 2015년 4.6조원으로 4.3조원 (1,341%)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1997년 226%에서 2014년 219%로 소폭 감소하였

다가 2015년에 6,905%로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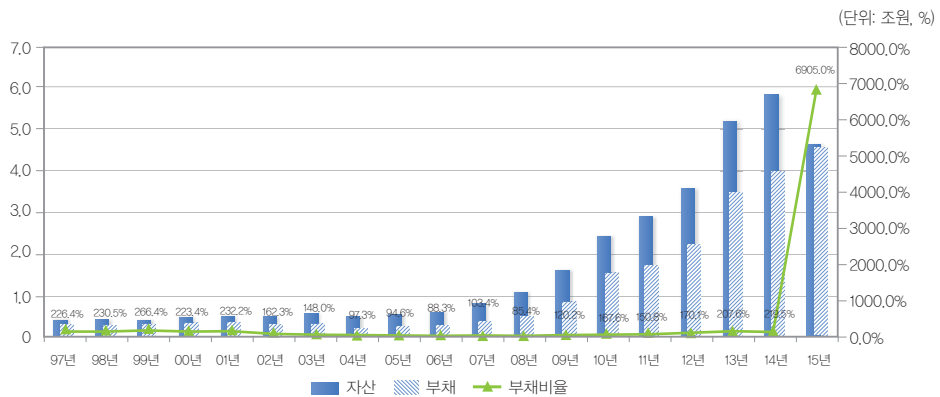
(부채규모) 부채규모는 과거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공사법 개정에 따른 법정자본금 증액 및 사명 변경으로 기존 기술지원 및 자금 용자 등 진흥업무에서 자원개발 직접 투자로 기능이 개편
- 2008년부터 중대형 프로젝트 참여, 생산광구 운영권 확보 등 해외광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정부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외부차입에 의존하여 투자함으로써 부채 증가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1997년 22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85%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부채 증가로 인하여 2015년 6,905%까지 증가함

- 2008년 이후 암바토비, 볼레오 등 해외투자를 위한 사채 발행 및 차입금의 차입으로 인하여 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급속도로 증가
- 2015년에는 약 2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이 크게 감소하였고, 그 결과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함

[그림 5]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자산,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9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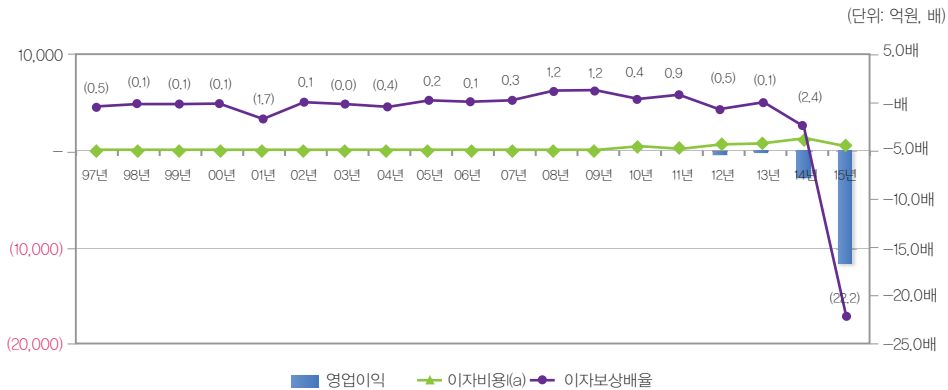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재무구조 추이 및 부채현황 분석』, 2016.12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영업이익은 2011년까지 일정액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2012년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이 음수로 계산되는 결과

가 나타남

공사는 투자관련 이자비용을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외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10년 이후 이자비용(매출원가 인식분 포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2010년부터 금융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이자비용이 증가하여 영업손실 또한 증가하게 되었고 이자보상배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2014년 영업손실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해외 광물개발 자회사인 암바토비의 상업생산에 따른 감가상각비 인식에 따른 매출원가의 증가와 암바토비 자금 조성과 관련된 소송충당부채의 이자비용, 테기다 영업권 손상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함
 2015년에는 암바토비 등에 대한 지분법손실을 대규모로 인식하여, 약 1.1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이자보상배율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함

[그림 6]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영업이익과 이자비용('9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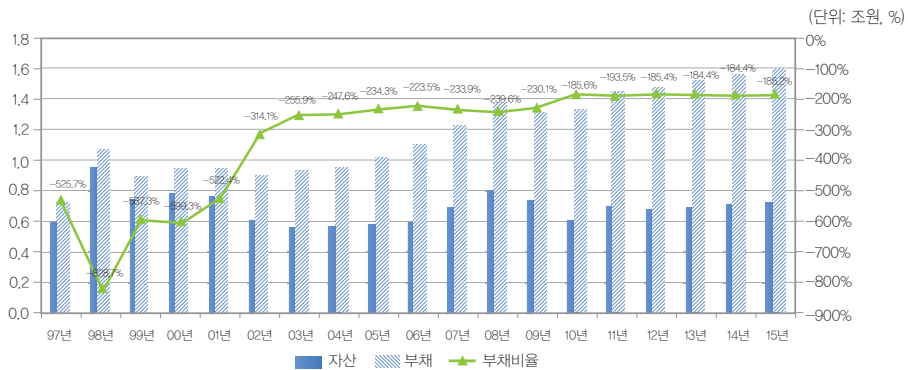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재무구조 추이 및 부채현황 분석』, 2016.12

4. 대한석탄공사

- 대한석탄공사의 부채는 1997년 0.73조원에서 2015년 1.6조원으로 119.7%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부채비율은 (-)526%에서 (-)185%로 변동함
 (부채규모) 부채규모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 201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1.3조원을 기록한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영업 손실로 인해 부채규모가 매년 증가하였으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리상승, 유동자금 확보를 위한 외부차입이 부채규모 증가의 주요 원인임
- 2011년 폐광대책비 선지급으로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영업손실 누적으로 운영자금 차입이 계속되어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부채비율) 자본잠식으로 인해 부채비율⁰⁷은 1997년 (-)526%에서 2015년 (-)185%까지 음(-)의 값을 유지한 채 변동되고 있음
- 1998년 시설 투자 및 개발을 위한 사채 및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829%까지 하락하였음

[그림 7]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자산,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97~'15)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재무구조 추이 및 부채현황 분석』, 2016.12

- 대한석탄공사는 1997년 이후, 2000년을 제외하고 모두 영업손실이 발생함. 영업손실 폭은 2006년에 620억원으로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그 이후 125억원(2009년)~600억원(2010년) 사이를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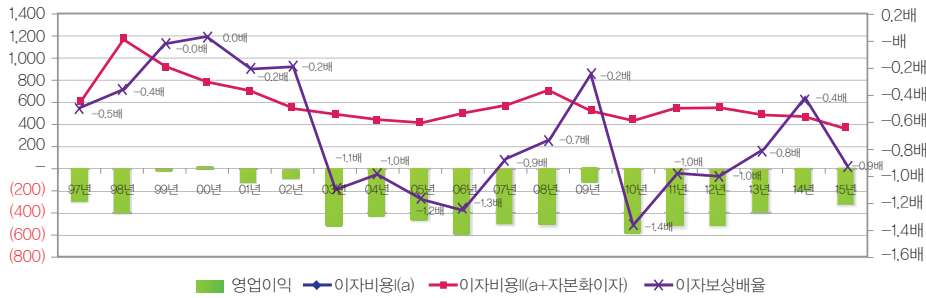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지급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이자보상배율은 영업 손실로 인해 매년 음수를 기록함

⁰⁷ 자본잠식으로 자본이 음(-)인 경우 부채비율(=부채/자본)은 음(-)의 값을 가지게 됨. 부채가 증가할 경우에 분자가 커져서 음의 부채비율은 낮아지며, 경영실적이 개선되어 자본이 증가하더라도 분모가 작아져서 부채비율인 음의 값은 낮아지므로,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부채비율의 분석은 유의하지 않음

적자 누적 및 시설 투자 확대에 따른 금융부채 증가로 금융부채의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금리 인하로 이자비용은 2008년 707억원에서 2014년 464억원으로 감소함
2015년에는 영업손실이 330억원으로 전기에 비해 120억원 더 증가하였으나, 이자비용은 355억원으로 전기에 비해 110억원 감소하여 이자보상배율은 악화됨

[그림 8] 대한석탄공사의 연도별 영업이익과 이자비용('97~'15)

(단위: 억원, 배)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재무구조 추이 및 부채현황 분석』, 2016.12

5. 요약

■ 이상의 해외 자원개발 4개 공기업의 재무정보를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기관별 주요 재무지표 요약

(단위: %, 배)

기관명	재무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한국석유공사	부채비율	193.2	167.5	180.1	180.1	221.3
	이자보상배율	2.7	1.5	2.5	1.1	-1.0
한국가스공사	부채비율	347.7	385.4	388.8	381.0	321.5
	이자보상배율	1.2	1.2	1.4	1.0	0.9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채비율	150.8	170.1	207.6	219.5	6905.0
	이자보상배율	0.9	-0.5	-0.1	-2.4	-22.2
대한석탄공사	부채비율	-193.5	-185.4	-184.4	-184.4	-185.2
	이자보상배율	-1.0	-1.0	-0.8	-0.4	-0.9

Ⅲ. 자원개발 현황과 성과

1. 한국석유공사

-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자회사는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등 총 8개국에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석유가스전의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임
한국석유공사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종속회사 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표 2〉 한국석유공사의 종속회사 현황

종속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법인설립 및 영업소재지	지분율 및 의결권 비율(%)	
			제36(당) 기말	제35(전) 기말
ANKOR E&P Holdings Corp.	자원개발(석유가스)	미국	100.00	100.00
Dara Petroleum Limited	자원개발(석유가스)	영국	100.00	100.00
KNOC Eade Ford Corporation	자원개발(석유가스)	미국	100.00	100.00
Harvest Operations Corp.	자원개발(석유가스)	캐나다	100.00	100.00
KNOC Kaz B.V	지주회사	네덜란드	100.00	100.00
KNOC Exploracao e Producao de Petro do Brasil Ltda	자원개발(석유가스)	브라질	100.00	100.00
KNOC NEMONE	자원개발(석유가스)	인도네시아	100.00	100.00
KNOC NEMTWO	자원개발(석유가스)	인도네시아	100.00	100.00
KNOC Sumatra Ltd.	자원개발(석유가스)	인도네시아	100.00	100.00
KNOC Yemen Ltd.	자원개발(석유가스)	예멘	60.00	60.00
KNOC Trading Singapore Pte. Ltd.	트레이딩 및 마케팅지원	싱가포르	100.00	100.00
KNOC Trading Corporation ¹⁾	트레이딩 및 마케팅지원	미국	100.00	-

주: 1) 지배기업은 2014년 2월에 Harvest Operations Corp.의 종속기업인 North Atlantic Refining Limited로부터 KNOC Trading Corporation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음. 한편, Harvest Operations Corp.의 주요 종속기업인 North Atlantic Refining Limited는 당기 중 매각되어 종속기업에서 제거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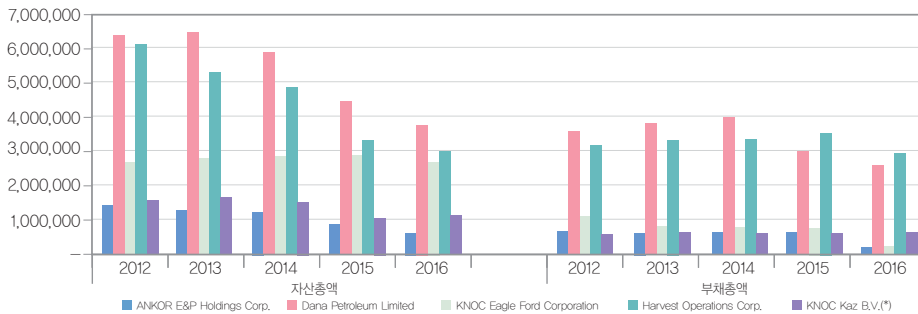
출처: 2016년 한국석유공사 감사보고서

-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자회사는 ANKOR E&P Holdings Corp(미국), Dana Petroleum Limited(영국), KNOC Eagle Ford Corporation(미국), Harvest Operations Corp.(캐나다), KNOC Kaz B.V.(네덜란드) 등 총 5개 기관임

해당 5개 종속회사의 자산 및 부채총액의 최근 5개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자본잠식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부채규모가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자산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특히 Harvest사의 경우 2015년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한 바 있으며 Dana Petroleum의 총자본은 2.8조원에서 2016년 1.2조원까지 감소하였음

[그림 9] 한국석유공사 주요 해외자회사의 최근 5개년간 자산 및 부채 총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출처: 한국석유공사 감사보고서(2012년~2016년)

■ 또한 공동투자기업인 미국의 Offshore International Group의 경우 한국석유공사에서 50%의 지분을 갖고 있음

취득원가는 7,675억원인 데 반해 장부금액은 2,477억원으로 상당한 자산가치손상(손상차손)을 경험하고 있음

- 손상 사유는 추정유가의 하락 및 매장량 변동 등임

■ 한편 한국석유공사 자회사들의 매출액이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추세에 있으며 대다수의 해외자회사들이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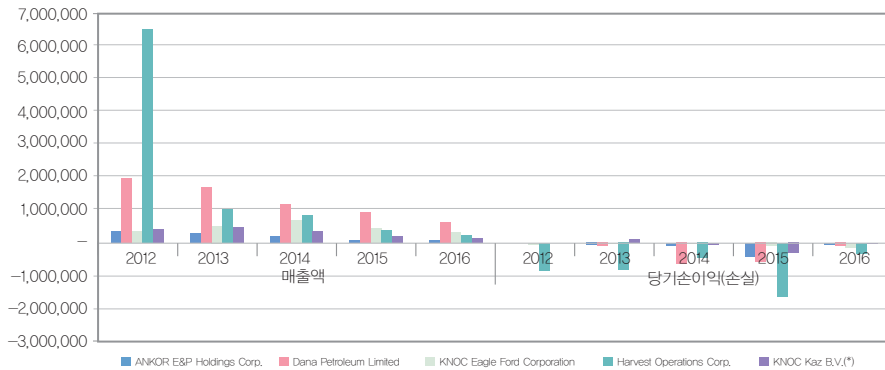
Harvest사의 매출액은 2012년 6.5조원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 2,519억원에 불과함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은 2015년 1.6조원, 2016년 3,063억원을 발생시킴

Dana사의 경우 2012년 2조원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나 2016년 6,840억원에 그침

당기순이익 역시 2012년 120억원 흑자에서 2016년 1,043억원 적자로 돌아섬
이 밖의 주요 자회사들 역시 매출의 감소가 확인하며 적자 전환된 상태임

[그림 10] 한국석유공사 주요 해외자회사의 최근 5개년 간 매출 및 손익 추이

(단위 : 백만원)



출처: 한국석유공사 감사보고서(2012년~2016년)

2.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는 총 21개로서 네덜란드,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등 총 9개국에 분포해 있음

한국가스공사 종속회사들의 주요영업활동, 영업소재지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음

<표 3> 한국가스공사의 종속회사 현황

종속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법인설립 및 영업소재지	소유지분율 및 의결권 비율(%)	
			제34(당) 기	제33(전) 기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건설, 서비스	대한민국	100.00	100.00
KOGAMEX Investment Manzanillo B.V.	서비스	네덜란드	100.00	100.00
KOMEX-GAS, S. de RL, de C.V.	LNG 터미널건설	멕시코	99.97	99.97
KOGAS Iraq B.V.	자원개발	네덜란드	100.00	100.00
KOGAS Badra B.V.	자원개발	네덜란드	100.00	100.00

종속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법인설립 및 영업소재지	소유지분율 및 의결권 비율(%)	
			제34(당) 기	제33(전) 기
KOGAS Akkas B.V.	자원개발	네덜란드	100.00	100.00
KOGAS Mansuriyah B.V.	자원개발	네덜란드	100.00	100.00
KOGAS Canada Ltd.	자원개발	캐나다	100.00	100.00
KOGAS Canada LNG Ltd.	LNG 플랜트사업	캐나다	100.00	100.00
KOGAS Australia Pty.Ltd.	자원개발	오스트레일리아	100.00	100.00
KOGAS Prelude Pty. Ltd.	자원개발	오스트레일리아	100.00	100.00
KG Timor Leste Ltd.	자원개발	마살군도	100.00	100.00
KG Krueng Mane Ltd.	자원개발	마살군도	100.00	100.00
KG Mozambique Ltd.	자원개발	마살군도	100.00	100.00
KOGAS Mozambique Lda.	건설, 서비스	모잠비크	99.99	99.99
KGLNG E&P Pty Ltd.	자원개발	오스트레일리아	100.00	100.00
KGLNG E&P II Pty Ltd.	자원개발	오스트레일리아	100.00	100.00
KGLNG Liquefaction Pty Ltd.	LNG 플랜트사업	오스트레일리아	100.00	100.00
KOGAS Cyprus Ltd.	자원개발	사이프러스	100.00	100.00
케이씨엘엔지테크(주)	엔지니어링사업	대한민국	50.20	-
KG-SEAGP Company Limited	자원개발	홍콩	55.73	-

출처: 2016년 한국가스공사 감사보고서

- 한국가스공사의 주요 자회사에 대한 자산 및 부채총액을 살펴보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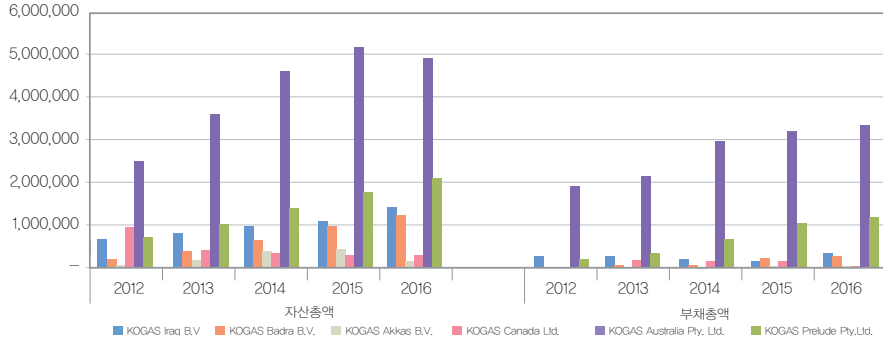
KOGAS Iraq의 경우 2012년 6,644억원의 자산규모에서 2016년 1.4조원 규모로 급증하였음

이밖에도 KOGAS Badra, KOGAS Australia, KOGAS Prelude 등의 자회사의 자본규모는 1조원가량에 이르는 거대사업 형태를 띠는 추세임

한국가스공사의 자산규모 상위 6개 자회사의 자산 및 부채 규모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그림 11] 한국가스공사 주요 자회사의 자산 및 부채 총액 추이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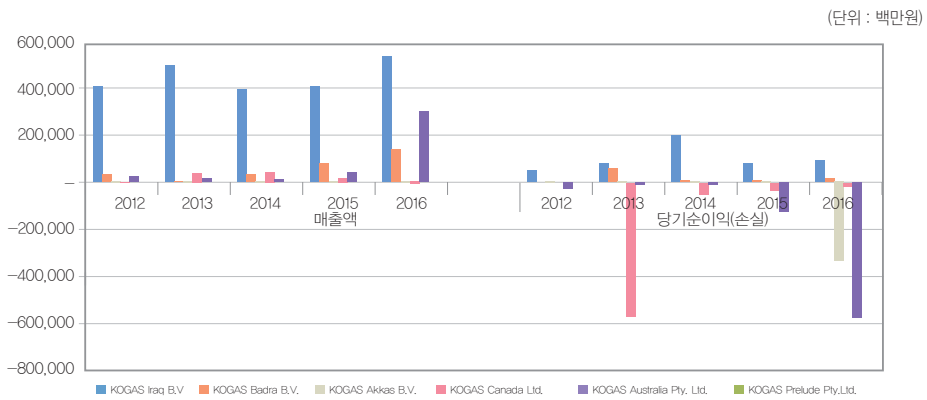


출처: 한국가스공사 감사보고서(2012년~2016년)

- 한국가스공사의 가장 큰 자회사인 KOGAS Australia Pty의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16년 들어 감소하였으나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한편, 자회사들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손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2013년과 2016년에 대규모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음
 - 2013년 KOGAS Canada에서 5,742억원 규모의 순손실이 발생하였는데 당해 연도 매출액이 452억원임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큰 손실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2012년 총자산규모가 9,195억원에서 2013년 3,947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자본은 8,815억원에서 2,573억원으로 급감하였는데 순손실의 규모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2016년에는 KOGAS Akkas와 KOGAS Australia가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켰는데 그 규모가 각각 3,334억원, 5,755억원으로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확인됨
 - 1 KOGAS Akkas의 경우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6년 들어 손실을 인식하였음
 - 한국가스공사는 2011년 이라크 Akkas 가스전 개발 사업을 위해 프로젝트 법인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였으나 이슬람 무장 세력인 IS가 바그다드 북서부 지역을 장악함에 따라 프로젝트가 사실상 좌초되었음

KOGAS Australia의 경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손실을 발생시켜왔으며 2016년 매출액이 3,058억원에 그친 반면 당기순손실은 5,753억원이 발생함
 - 부채규모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이러한 대규모 당기순손실은 2015년 기준 자산규모 5.2조원에서 2016년 4.9조원으로 하락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그림 12] 한국가스공사 주요 해외자회사의 최근 5개년간 매출 및 손익 추이



출처: 한국가스공사 감사보고서(2012년~2016년)

3.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투자 자회사는 총 8개로서 호주, 캐나다, 볼리비아 등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다음 <표 4>와 같음

<표 4>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투자 자회사 현황

회사명	지분율(%)	업종	소재지
Kores Australia Pty Ltd.	100.00	광업	호주
KORES CANADA Corp.	100.00	광업	캐나다
Minera Corocobre S.A	52.64	광업	볼리비아
SARSIBURY LIMITED	80.00	광업	니제르
Stonebridge Trading 36	100.00	광업	남아프리카공화국
Prime Asia Resources	100.00	광업	싱가포르
Ermani Ltd.	100.00	광업	탄자니아
KORES Lux S.a.r.l 외 그 종속기업	100.00	광업	룩셈부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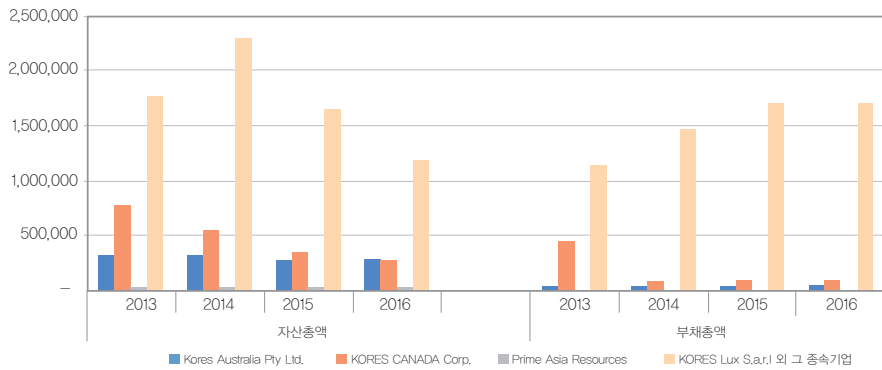
출처: 2016년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보고서

- 자산규모가 큰 4개 자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살펴보면 KORES LUX S.a.r.l외 그 종속 기업으로 분류된 업체의 자산규모가 가장 큼

KORES LUX S.a.r.l 외 그 종속기업의 자산규모는 2014년 2,3조원에서 1,2조원으로 절반가량으로 준 반면 부채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있음

[그림 13] 한국광물자원공사 주요 자회사의 자산 및 부채총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출처: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보고서(2012년~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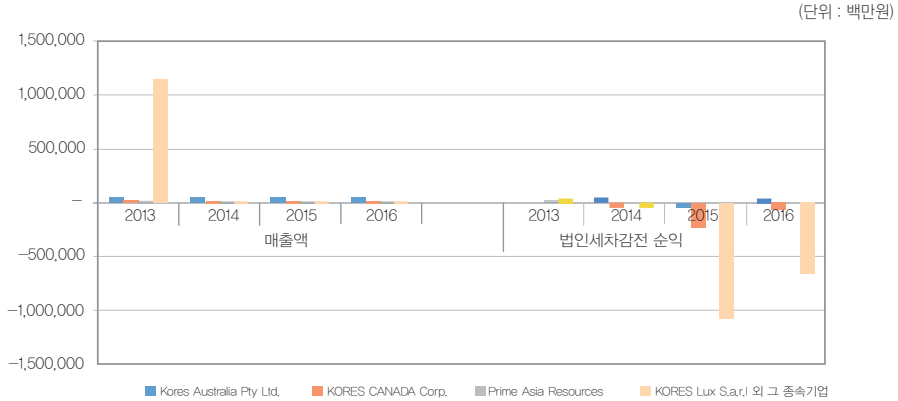
- 주요 자회사들의 매출 및 법인세차감전 순익을 살펴보면 2016년 현재 전 사업장에서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KORES LUX S.a.r.l 외 그 종속기업에서는 2013년 1,1조원가량의 매출을 발생시켰으나 이듬해 73억원 규모로 급감한 이후 해당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1조원, 6,595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여 완전 자본잠식 이후에도 자산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KORES Canada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2,293억원, 79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 매출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

[그림 14] 한국광물자원공사 주요 자회사의 매출 및 손익 추이



출처: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보고서(2012년~2016년)

- 한편,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22.5%의 지분을 가진 출자회사 중 AMSA/DMSA(암바토비)사의 경우 취득원가는 1조 3,446억원인 데 반해 장부가액은 3,887억원에 그쳐 1조원 가량의 심각한 가치하락을 인식한 바 있음

암바토비는 마다가스카르에 위치한 세계 3대 광산 중 하나인 니켈광산 개발 사업 프로젝트임

하지만 국제 니켈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며 생산비가 판매가보다 높아지는 등의 악재로 인해 니켈광산 개발 사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

따라서 한국광물공사는 지분법 평가원칙에 따라 출자회사에서 발생한 1조원의 자산 손상에 대해 보유지분인 22.5%만큼의 손실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함

4. 대한석탄공사

- 대한석탄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종속기업은 총 2개로서 국내에서 해외에너지를 개발을 담당하는 한몽에너지개발과 몽골에서 석탄채광업을 위해 설립한 핫고르 사나가 등 총 2개 기업임

한몽에너지개발은 대한석탄공사의 자회사로서 핫고르 사나가의 지분 인수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임

〈표 5〉 대한석탄공사의 자회사 현황

종속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법인설립 및 영업소재지	소유지분율 및 의결권 비율(%)	
			당기말	전기말
한몽에너지개발(주)	광산투자 등	대한민국	63	63
(유)훗고르 샤나가	석탄 채광업	몽골	51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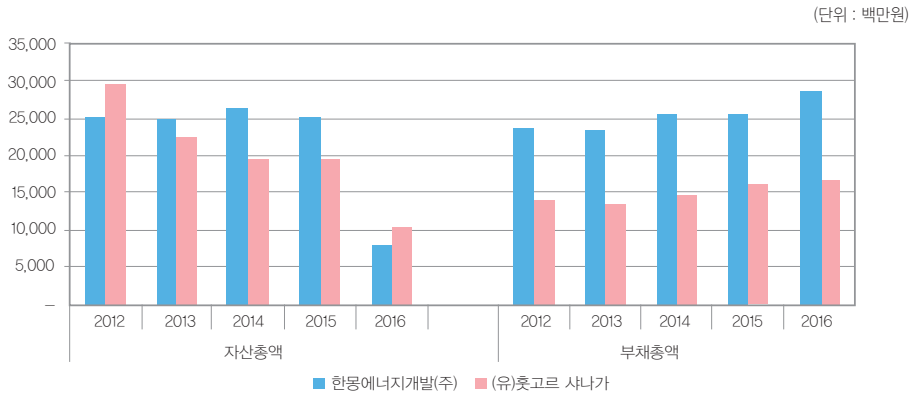
출처: 2016년 대한석탄공사 감사보고서

- 대한석탄공사 두 자회사의 자산 및 부채총액을 살펴보면 이 두 회사의 자본잠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2016년 기준 두 자회사 모두 부채의 규모가 자산보다 큰 완전자본잠식상태이며 재무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

한몽에너지개발의 경우 2012년 자산규모가 252억원에서 2016년 78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훗고르 샤나가 역시 2012년 295억원에서 2016년 131억원으로 급감하였음 반면 부채규모는 한몽에너지 개발의 경우 2012년 236억원에서 2016년 28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훗고르 샤나가는 139억원에서 159억원으로 증가하였음

〔그림 15〕 대한석탄공사 자회사의 자산 및 부채총액 추이



출처: 대한석탄공사 감사보고서(2012년~2016년)

- 이 두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당기순손실의 규모가 막대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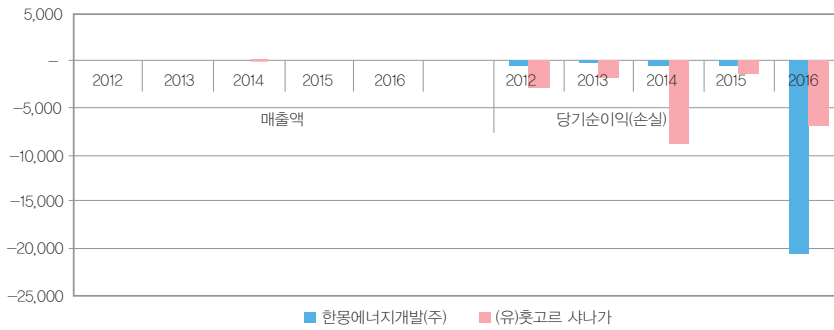
특히 한몽에너지개발이 2016년 인식한 205억원의 손실은 자산가치 손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훗고르 사나가 역시 2014년에 88억원, 2016년에 69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매해 순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그림 16] 대한석탄공사 자회사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손실) 추이

(단위 : 백만원)



출처: 대한석탄공사 감사보고서(2012년~2016년)

5. 요약

■ 이상의 4개 기관에서 분석대상이 된 주요 자회사들의 재무정보(지표별 소계)를 요약하면 다음 <표 6>과 같음

<표 6> 4개 기관 자회사 주요 재무정보 요약

(단위: 백만원)

기관명	재무지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국석유공사	자본총계	9,030,082	8,207,051	6,853,283	3,964,025	4,634,243
	매출액	9,596,093	4,133,700	3,317,127	2,164,608	1,519,981
	당기순이익	-798,455	-709,273	-1,160,930	-2,931,519	-563,577
한국가스공사	자본총계	2,625,947	3,480,600	4,326,773	4,964,621	4,912,228
	매출액	441,875	564,008	498,850	556,169	1,003,498
	당기순이익	18,091	-500,196	149,649	-67,152	-806,313

기관명	재무지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국광물 자원공사	자본총계	N/A	1,274,400	1,602,051	465,634	-79,968
	매출액	N/A	1,215,015	53,449	54,167	48,305
	법인세차감전순이익	N/A	24,822	-29,519	-1,367,029	-732,965
대한석탄공사	자본총계	17,224	10,368	5,750	3,499	-27,299
	매출액	53	27	189	77	40
	당기순이익	-3,489	-1,987	-9,289	-1,948	-27,445

출처 : 저자 작성

IV. 국제 에너지 및 광물 시장 시황

1. 국제 유가, 가스 및 광물 가격 추이

- 자원의 개발 및 판매를 주 활동으로 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필연적으로 국제 유가, 가스 및 광물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자회사 설립 당시 에너지 및 광물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세계 시장에서 설립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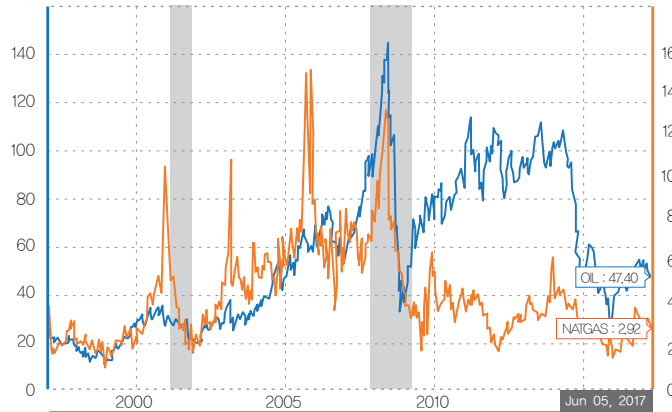
하지만 당시와 현재까지의 에너지 및 광물 가격은 현저한 변화를 거쳐 왔으며 이러한 비교를 통해 자회사의 계속영업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볼 수 있음
-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여건은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저가시장 형성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왔음

석유가격(텍사스 중질유 기준)은 2000년대 말 145달러선까지 치솟으며 자원안보 차원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며 33달러선까지 하락하였음. 2010년대 초반 100달러선을 회복하였으나 이란 제재조치 해제, OPEC 감산조치 합의 실패, 셰일가스 개발비용의 감소 등으로 인해 2014년 이후 급락하여 현재 40달러선까지 떨어짐

천연가스의 경우에도 석유가격과 비슷하게 현저한 가격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 17] 2000년대 이후 유가(WTI) 및 천연가스(Henry Hub) 가격 추이

(단위: 달러)



출처: Macrotrends, Crude Oil vs Natural Gas - 10 Year Daily Chart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영여건은 광물 원자재 가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최근 수개 년간 주요 광물의 가격은 하락세에 있음

국제선물시장에서 구리의 가격은 표준거래단위인 파운드당 2011년 4.5달러에서 현재 2.5달러가량으로 하락하였으며 니켈은 2007년에 표준거래단위인 6톤당 5만달러였으나 현재 1만달러 이하로 하락하였음

[그림 18] 최근 10년간 구리 선물시장가 추이

(단위: 파운드당 달러)



출처: TradingEconomics.com

[그림 19] 최근 10년간 니켈 선물시장이 추이



출처: TradingEconomics.com

- 대한석탄공사 해외자원개발은 국제 석탄가격과 연동해서 살펴보아야 하며 국제석탄시장 기준가격 중 하나인 호주남방용석탄가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것을 알 수 있음

2010년 1메트릭 톤당 140달러 이상이었던 국제석탄가격은 2016년 53달러까지 하락하였으며 현재는 2017년 들어 가격이 다시 회복하여 90달러 수준에 있음

[그림 20] 최근 10년간 석탄 선물시장이 추이



출처: indexmundi, Coal, Australian thermal coal Monthly Price – US Dollars per Metric Ton

V. 주요쟁점 및 결론

- 해외에너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들의 영업활동을 재무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업체들의 자산가치 하락 및 막대한 금액의 당기순손실 발생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더해 국제시장에서 에너지가격 및 광물가격이 하락세에 있어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던 2010년 전후의 에너지 및 광물의 국제시장 거래가격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자원안보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하였으나 현재는 경영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음

- 위에서 살펴본 자원개발 관련 자회사를 거느린 공기업들에서 재무적 성과 악화가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음

대한석탄공사의 내수영업활동만으로도 자산보다 부채규모가 더 큰 완전자본잠식이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자회사에서마저 발생하는 순손실로 인해 자본잠식이 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임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관련 손실이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5,011억원, 2,398억원이 발생하여 기관의 총자산가치 하락에 영향을 줌

한국가스공사 역시 2013년 43.7조원 규모의 자산이 2016년 39.9조원까지 하락하였으며 매출액 규모는 38.1조원에서 21.1조원까지 급락하였음. 다만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 평가이익이 1,000억원 이상 발생하여 심각한 자산손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음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6년 들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돌입하였으며 2014년부터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특히 2015년에는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을 인식하였으며 자산 가치 역시 1.2조원가량 하락하였음

- 결론적으로 해외 자회사들의 영업실적 악화가 곧 모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재무구조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 시장성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며, 대내외 시장 여건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 계속 영업을 이어갈 기업을 선별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함

손실이 발생할 것이 명백한 사업들에 대한 수익성 재검토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적 사업 철수방안 등의 출구전략이 시급함

참고문헌

- 대한석탄공사, 「2013년도 감사보고서」, 2014.
- 대한석탄공사, 「2014년도 감사보고서」, 2015.
- 대한석탄공사, 「2015년도 감사보고서」, 2016.
- 대한석탄공사, 「2016년도 감사보고서」, 2017.
- 한국가스공사, 「2013년도 감사보고서」, 2014.
- 한국가스공사, 「2014년도 감사보고서」, 2015.
- 한국가스공사, 「2015년도 감사보고서」, 2016.
- 한국가스공사, 「2016년도 감사보고서」, 2017.
- 한국광물자원공사, 「2013년도 감사보고서」, 2014.
- 한국광물자원공사, 「2014년도 감사보고서」, 2015.
- 한국광물자원공사, 「2015년도 감사보고서」, 2016.
- 한국광물자원공사, 「2016년도 감사보고서」, 2017.
- 한국석유공사, 「2013년도 감사보고서」, 2014.
- 한국석유공사, 「2014년도 감사보고서」, 2015.
- 한국석유공사, 「2015년도 감사보고서」, 2016.
- 한국석유공사, 「2016년도 감사보고서」, 2017.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재무구조 추이 및 부채현황 분석(’97~’15)』, 2016. 12.

- IndexMundi, “Coal, Australian thermal coal Monthly Price – US Dollars per Metric Ton,” <http://www.indexmundi.com/Commodities/?commodity=coal-australian&months=120>, 검색일자: 2017. 6. 8.
- Macrotrends, “Crude Oil vs Natural Gas – 10 Year Daily Chart,” <http://www.macrotrends.net/2500/crude-oil-vs-natural-gas-chart>, 검색일자: 2017. 6. 5.
- TradingEconomics.com, “Commodities Copper,” <http://tradingeconomics.com/commodity/copper>, 검색일자: 2017. 6. 7.
- TradingEconomics.com, “Commodities Nickel,” <http://tradingeconomics.com/commodity/nickel>, 검색일자: 2017. 6. 8.



해외동향

중국 _ 가
OECD _
베트남 _
중남미 _ (1)

03

중앙국유기업 책임자 경영실적평가방법 개정⁰¹

- 2016년 12월 12일,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는 「중앙국유기업 책임자⁰² 보수제도 개혁 주관위원회」(이하 ‘위원회’) 동의를 거쳐 《중앙국유기업 책임자 경영실적평가방법》(이하 ‘평가방법’)을 공포하였음

01 본 해외동향은 2016년 12월 15일에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고시한 「《中央企业负责人经营业绩考核办法》(중앙국유기업 책임자 경영실적평가방법)」과 2016년 12월 23일에 고시한 「国资委印发 《中央企业负责人经营业绩考核办法》(국자위가 《중앙국유기업 책임자 경영실적평가방법》을 공포함)」를 요약 정리한 내용임

02 기관장 등 최고위 경영진. 《중앙국유기업 책임자 경영실적평가방법》 제2조는 ‘책임자(負責人)’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본 《평가방법》에서 심사하는 책임자란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출자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국가출자기업 중 중앙정부나 국자위가 관리하는 사람임.” 개정 직전의 《중앙국유기업 책임자 경영실적평가법시행방법》(2012년12월 26일 개정, 2012년 12월 29일 공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2조는 ‘책임자(負責人)’를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본 《평가법시행방》에서 중앙국유기업 책임자란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출자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국가출자기업의 다음과 같은 사람들임. 1)국유독자기업(國有獨資企業: 정부가 전액 출자한 기업으로서 전민소유제기업법에 의해 설립됨)의 최고 책임자(총재, 원장, 국장, 주임), 부(副)책임자(부총재, 부원장, 부국장, 부주임), 회계 총책임자, 2)국유독자회사(國有獨資公司: 정부가 전액 출자한 기업으로서 회사법에 의해 설립됨)의 대표이사, 부(副)대표이사, 이사(외부이사와 노동자대표이사는 포함시키지 않음), 국자위 당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총재, 원장, 국장, 주임), 부(副)책임자(부총재, 부원장, 부국장, 부주임), 회계 총책임자, 3)국유지분우위기업(國有資本控股公司: 정부지분의 비중이 높아 정부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국유 지분 주주권 대표 임무를 맡은 대표이사, 부대표이사, 이사, 국자위 당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총재, 원장, 국장, 주임), 부(副)책임자(부총재, 부원장, 부국장, 부주임), 회계 총책임자

1. 《평가방법》의 개정 배경

- ‘국자위’ 설립 이래, 업무실적평가를 국유자산 감독 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왔음
업무실적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유자본의 보호 및 증식 의무를 실현하고 중앙
국유기업의 리더십을 증진시키며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여 중앙국유기업에 대한 규
제를 강화하였음
- 더불어 중앙국유기업의 개혁발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중앙국유기업 책임자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음
- 본 《평가방법》은 2012년 12월 29일에 공포한 《중앙국유기업 책임자 경영실적평가
임시시행방법》을 개정한 것으로서 주요한 개정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이 추진하는 국유기업 개혁 및 중앙정부
관리기업 책임자 보수제도 개혁 심화
 - 둘째, 자본 관리를 중심으로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 셋째, 중앙국유기업에 대한 유형별 관리 및 평가 강화
- 《평가방법》 개정은 2015년부터 심층적인 연구와 다양한 방면의 의견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짐
 - 첫째, 새로운 체계의 설계와 핵심적인 내용 부각의 적절한 결합
 - 둘째, 자율적인 기업 경영과 중앙정부의 국유기업 관리 정책의 적절한 결합
 - 셋째, 목표 지향적인 방식과 문제해결 지향적인 방식의 적절한 결합

2. 《평가방법》의 구성

- 《평가방법》은 총 7장 52조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은 평가 근거, 평가 대상, 평가 원칙 및 평가 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2장 평가 방향은 평가의 초점이 ① 국유기업의 질적인 발전 ② 자본운용효율 ③기능 발휘 ④ 창의적인 발전 ⑤ 경영의 국제화 ⑥ 완벽한 책임경영체제 등 6가지 사항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제3장 유형별 평가는 2015년에 공포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과 중앙정부 관리기업의 책임자 보수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에 따라 국유기업들을 서로 다른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평가하고자 함

제4장 목표관리는 새로운 경제발전 상황의 요구에 맞추어 평가 목표의 체계성, 발전성, 내생적인 원동력 메커니즘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놓음

제5장 평가실시는 평가 절차, 평가 내용, 평가 업무 체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제6장 상벌은 국유기업 책임자 보수체계 구성을 이전보다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성과연봉을 매달 미리 선지급한다는 내용과 임기별 인센티브 수입 등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있음

3. 주요 개정 내용

- 첫째, 경제적 수익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할 때, 세 등급으로 등급을 나누어 평가목표치를 세움으로써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기업이 한 단계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도록 독려함

새로운 경제발전 상황하에서는 질적 향상과 효율성 증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목표관리가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내생적인 동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하므로 이에 이전 연도 실적을 토대로 이윤 총액, 경제적 부가 가치와 같은 연도별 경제적 수익 지표 목표치를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도록 함
동시에 기업의 평가 목표치 상위 수준을 평가 점수, 성과 등급 및 임금총액예산과 밀접하게 맞물리도록 하여 실적평가목표를 자원 배분 및 노동자 급여와 긴밀하게 연결 시키도록 함

- 둘째, 국유기업별 기능을 토대로 유형별 분류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실적 평가의 목적과

효과를 증진시킴

《평가방법》은 《중앙국유기업의 기능분류평가에 관한 실시방안》(2016년 8월 24일 국자위와 재정부가 연합으로 공포함)에 의거하여 기능이 다른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함

기업의 주요사업이 경쟁업계에 속해 있는 상업형 국유기업의 경우,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자본회전율, 시장경쟁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독려함

기업의 주요사업이 국가 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국민경제의 명맥을 잇는 중요한 분야에 속해 있거나 또는 국가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상업형 국유기업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경제적 이익과 국유자본 가치 보호 및 증진의 기초 위에 ① 국가 정책에 대한 봉사 ②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 운행 보장 ③ 전향적 전략 산업 발전 ④ 국가의 중대한 임무 완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공익형 국유기업의 경우, 경제적인 이익과 사회적인 이익을 결합시키되 사회적인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원가관리, 운영 효율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함

이 외에도 유형별 분류평가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기 위해 「특수사항목록 관리제도」를 만들어 서로 다른 기능을 지닌 국유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특수한 사항들을 관리항목에 넣어 당기 경영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항은 평가 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였음

- 셋째, 자본 관리를 중심으로 국유자산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경제적 부가가치 평가를 더욱 부각시켰음

경제적 부가가치는 기업의 세후영업이익에서 부채와 주주자본금을 삭감하고 남은 이익임

《평가방법》은 경제적 부가가치 평가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경제적 부가가치 평가의 핵심은 분류와 차별화로서 국유기업들의 서로 다른 기능과 자본 구조, 리스크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자본 회수율을 요구하고 있음

경제적 부가가치평가를 통해 국유기업의 합리적인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자본 구조를 더욱 최적화시키며 자본운영 기강을 더욱 엄격하게 확립하고 자본운영 효율을 한 단계 더 높여 끌어올리고자 함

■ 넷째, 평가 결과 활용을 강화시켜 인센티브 및 규제 메커니즘을 완전히 갖추었음

《평가방법》은 “성과가 올라가면 보수도 오르고 성과가 내려가면 보수도 내려간다”는 원칙하에 실적 평가와 인센티브 및 규제 메커니즘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킴
중앙정부 관리기업 책임자 보수제도 개혁 규정에 따라, 국유기업 책임자의 보수 구성을 ① 기본연봉 ② 성과연봉 및 ③ 임기별 인센티브 수입의 세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함

성과연봉은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연도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성과연봉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확정하며 연도별 종합심사평가를 받지 않고 성과연봉을 수령할 수 없음

임기별 인센티브 수입은 임기별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연계되어 있으며 국유기업 책임자의 임기 내 총연봉수준의 30% 내에서 결정하는데 마찬가지로 임기별 종합심사평가를 받지 않고 임기별 인센티브 수입을 수령할 수 없음

2년 연속 연도별 경영실적평가에서 D등급을 받거나 임기별 경영실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국유기업의 경우, D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하고 객관적인 원인이 없다면 기업책임자에게 인사조치가 내려짐

성과연봉은 일정 비율에 따라 매달 선지급되며 국자위는 연도별 경영실적에 대한 반기별 사전(事前)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 책임자에게 매달 선지급하는 성과연봉 금액을 조정함

■ 다섯째, 모범적인 법인지배구조에 걸맞게 이사회에 기업 심사제도를 완전히 정비하였음

《평가방법》은 이사회에 경영관리층에 대한 평가권을 구체화시키고 평가 업무의 주체와 방법 등에 대해 규정지음

국유기업의 지배구조가 그간 꾸준히 개선되었기에 이사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이사회가 기업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국자위에서 확정된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최고 경영진의 성과연봉 배급 방안을 결정하도록 함
 이사회에 적극성을 고취시켜 이사회가 기업의 출자자인 국자위의 정책 의지와 국유자본
 보호 및 증식 의무를 실현하도록 하고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를 더욱 탄탄히 다짐

- 국자위는 《평가방법》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해 《평가방법》의 주요한 틀 아래, 평가
 기간 내 업무상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접목시켜 적시에 연도별 평가와 임기별
 평가, 경제적 부가가치 평가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제정하고 신속하게 공포함

참고

2013년 말 중앙국유기업 책임자 경영실적평가 임시시행방법 개정 내용⁰³

- 첫째, 평가지표를 소수 정예화시킨다는 기본 방침은 유지하되 규모 축소, 질적인 성장
 강조, 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둠
 연도별 기본 지표는 그대로 두되 임기별 기본 지표의 주요 사업 수입 성장률을
 총자산회전율로 바꿈
- 둘째, 경제적 부가가치 평가(EVA)를 심화시킴
 절대 다수의 중앙 국유기업들이 경제적 부가가치 평가지표 가중치를 50%까지 높이고
 이윤 총액 지표 가중치를 20% 낮춤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A등급을 획득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삼아 “이윤 총액이나
 경제적 부가가치가 마이너스이고 전년 대비 상승하지 않은 경우 A등급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
- 셋째,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함

⁰³ 출처: 2013 중국국유자산감독관리년감 제2편 국유자산 감독관리 개황

국유기업의 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유자산으로 획득한 임시 수익 (비경상적 수익)은 EVA 산출 시 포함시키지 않음

국가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에너지자원 기업과 수출지향형 기업은 국제화 경영지표를 분류지표에 넣고 연 단위 또는 임기 단위 평가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국제화 경영 실적이 뛰어난 기업에는 임기 단위 평가 시 특별상을 수여함

■ 넷째, 과학기술투자 및 과학기술성과 평가를 강화함

EVA 산출 시, 기업관리비용 항목 아래에 있는 “연구 및 개발 비용”과 (당기 무형자산으로 확정된) 연구개발지출 항목을 추가함⁰⁴

중대한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획득하였거나 국제표준제정에 있어 큰 성과를 획득한 기업에는 연 단위 평가에서 가점을 주고 임기 단위 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여함

■ 다섯째, 벤치마킹실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함

기업이 속한 업종의 특징을 반영하면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국내외 선진 기업을 벤치마킹하고 그 과정이 평가에 포함되도록 하였음

■ 여섯째, 서로 다른 국유기업 간 평가를 차별화시킴으로써 평가의 합리성을 개선함

업종이 다른 기업은 평가지표별 비중을 다르게 하였고, 역사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나 국가의 중대한 전략 사업을 책임지고 있고 당기 경영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위의 기준을 얻어 이윤 목표치 심사 및 확정 시 참고하도록 함

04 현재 회계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비가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음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중 54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57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3)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일곱째, 평가와 상벌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시킴
 - 평가결과가 기업 책임자 임면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하였고 실적이 우수하고 경영 관리가 개선되었으며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낸 경우 임기별 평가 시 특별상을 수여함

- 여덟째, 이사회 임무를 실천하고 국자위와 이사회 기능을 모두 적극적으로 발휘함
 - 이사회가 실적평가권한을 부여받아 국유기업과 국자위 간 실적평가 작업의 다리 역할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국자위의 평가 정책을 이행할 책임을 짐
 - 국자위는 이사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해 시험 평가를 실시함

해외 주요국의 공기업 소유권 모델 및 공시 체계⁰¹

1. 개요

- OECD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공기업 소유권 주체가 행사하는 소유권 기능의 기본사례를 설명하며, 특히 경쟁이 발생하는 시장에서 경제적 활동에 종사하는 “상업적”으로 간주되는 공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각국의 소유권 기능을 비교하고 있음

상업적 공기업과 비상업적 공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수의 국가들이 두 유형의 기업에 대해 서로 다른 소유권 관행을 적용하기 때문에 중요함

공공정책 목적을 수행하는 비상업적 공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주무부처 또는 기타 전문기관에 의해 관리 감독됨
-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유권 행사는 국가 행정부 내에서 명확하게 확립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⁰¹ 동 해외동향은 OECD의 OECD, *Compendium on SOE Governance and Ownership Practices, Corporate Governance*, OECD, 2017, pre-publication version 의 ‘Chapter 1. The State Enterprise Ownership Function’ ‘1-2. SOE Ownership Models’ 와 ‘1-3 Models for Annual Aggregate SOE Reporting’ 부분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것임.

또한, “소유권 행사는 단일 소유권 주체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조정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소유권 주체는 효과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권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권고는 특히 “상업적” 기업 유형에 적용할 것을 강조

- 공기업의 “소유권 기능”은 1) 이사의 선임 2) 목표의 설정 및 모니터링 3) 정부를 대표하여 기업 의결권 행사를 위해 권한, 책임 및 관리운영 능력을 의미
이와 같은 “소유권 기능”의 행사는 보통 <표 1>에서 설명하는 5가지의 “소유권 모델” 중 하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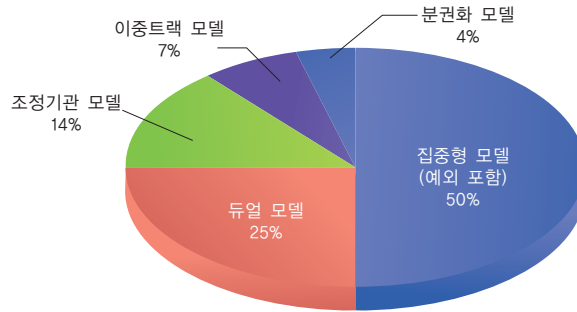
2. 해외 주요국의 공기업 소유권 모델

1) OECD의 5가지 공기업 소유권 모델

- 31개의 OECD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의 공기업관리체계를 중앙집중형 모델(Centralized model), 듀얼 모델(Dual model), 이중 트랙 모델(Twin track model), 조정기관 모델(Coordinating agency model), 분권화 모델(Decentralized model) 등 5가지의 소유권 모델로 구분함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오직 하나의 소유권 모델만을 예외 없이 사용하는 것은 아님
- 예컨대, 공기업 관리체계를 최대한 중앙으로 집중시킨 국가에서조차 역사적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중앙기관 이외의 기관이 관리하는 공기업들이 존재

[그림 1] 31개국의 공기업 소유권 모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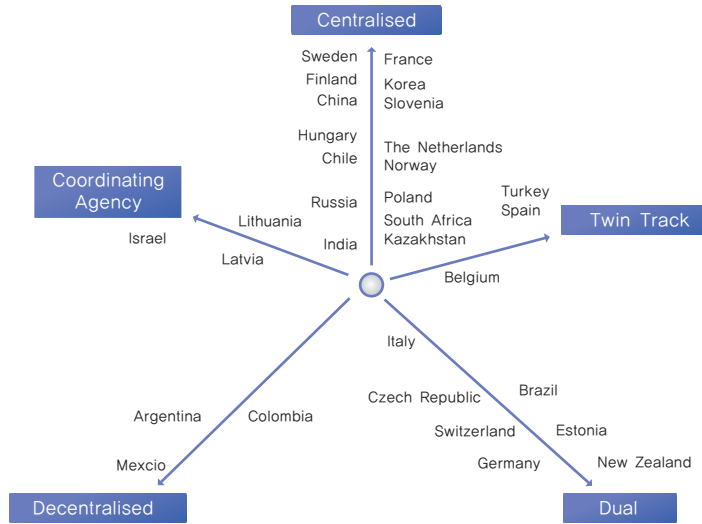
자료: OECD, *Compendium on SOE Governance and Ownership Practices, Corporate Governance, 2017.*

<표 1> 공기업 소유권 모델 유형

	소유권 모델	비고
↑ 집중	집중형 모델 (Centralised mod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의 정부기관이 국가가 통제하는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소유 주체로서 관리·감독함 • 이러한 기관은 소유권 전문기관 또는 별도로 지정된 정부부처일 수 있음 • 통제기관이 재정 목표 설정, 운영 사안과 공기업 성과 모니터링 절차를 모두 수행함 • 공기업 이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선임되지만, 중요한 선임기준은 통제기관이 제시함
	듀얼 모델 (Dual mod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개의 정부기관(보통 공기업의 주무부처와 재정부)이 개별 공기업의 소유권을 공유함 • 통상적으로 단일 부처가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다른 부처는 경영전략을 수립함
	이중트랙 모델 (Twin track mod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적으로 집중형 모델과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공기업 유형을 두 정부기관이 각각 관리·감독하는 형태 • 이중트랙 모델은 종종 "듀얼" 모델로 지칭되었으나, 실제로 한 정부기관이 개별 공기업 유형의 소유권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듀얼 모델과는 다름
분권	조정기관 모델 (Coordinating agency mod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화된 정부기관이 전반적인 운영 사안에 대해 기타 소유권관련 부처의 자문기관 역할을 함 • 조정기관의 핵심 업무는 공기업 성과 모니터링인 경우가 많음 • 조정기관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주무부처의 자율성이 클수록 조정기관 모델은 분권화된 모델과 상당부분 겹칠 수 있음
	분권형 모델 (Decentralised mod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단일 기관이나 정부행위자가 공기업의 소유권 행사를 전담하지 않음 • 사실상 주무부처가 장관 권한의 연장선으로 공업을 관리·운영함 • 소유권 행사에 대해 단일의 국가단위 또는 여러 국가단위들이 책임지는 구조

자료: OECD, *Compendium on SOE Governance and Ownership Practices, Corporate Governance, 2017.*

[그림 2] 31개국의 공기업 소유권 모델 분포도



자료: OECD, Compendium on SOE Governance and Ownership Practices, Corporate Governance, 2017.

<표 2> 주요국의 공기업 소유권 관리체계

국가	소유권 모델		소유권 담당 기관	공기업 목표 설정 기관
	전반적	비고		
중국	집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수준의 정부에서 상이한 국가운영당국이 존재 금융기관은 재무부가 관리감독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원이 목표설정, SASAC이 개별공기업에 목표 하달 SASAC이 공기업의 연간 투자 계획을 마련
핀란드	집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부, 고용경제부, 교통통신부 등 8개 정부부처 산하로 공기업을 관리 	총리실 산하 공기업관리부 (Ownership Steering Depar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관리부 또는 주무부처가 목표설정
프랑스	집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무부처 산하의 일부 비상업적 공공기관이 존재 	공기업관리청(A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관리청(APE) 및 재정경제부가 설정한 목표를 정부가 선임한 책임자가 하달
한국	집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모든 중앙 공기업의 소유권을 기획재정부가 행사 개별 재무부처가 부처 산하의 공기업 운영 예산을 통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획재정부장관이 공운위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 성과목표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설정 개별 공기업은 법에 따라 중장기 운영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에 통보해야 함

국가	소유권 모델		소유권 담당 기관	공기업 목표 설정 기관
	전반적	비고		
스페인	집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정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무부처 산하의 일부 비상업적 공공기관이 존재 	재정행정부 (Ministry of Finance & Public Administration) 및 주무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적 및 중간 목표는 개별 공기업 및 재정행정부와의 협의 후 주무부처에서 설정
스웨덴	집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무부처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공공정책을 주로 수행하는 7개의 공기업을 관리 	기업혁신부 산하의 공기업실 (Division of SOEs)과 기업지배구조 및 분석실(Division for Corporate Governance &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공기업과 협의 후 공기업실과 기업지배구조 및 분석실에서 설정
노르웨이	집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외)국방부, 지방정부 및 현대화부, 석유 및 에너지부, 교통통신부에서 상업적 공기업 관리 	통상산업어업부 산하의 공기업소유권실이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공기업의 목표는 소유권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설정 목표는 정부의 소유권정책을 제시하는 백서에서 공개
네덜란드	집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외)재무부에서 관리하지 않는 공기업은 별도의 "정책참여" 기관으로 지정 개별 기관을 주무부처가 관리 	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공기업에 적용되는 일반 정책목표는 법률에 명시 운영상의 개별 목표는 법률, 조약 및 계약서에 명시
인도	조정기관형		공기업부(D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인 정부정책의 관점에서 공기업의 비전, 임무 및 중장기계획을 개별 공기업과 협의 후 주무부처가 설정
이스라엘	조정기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50개의 법령 기업은 공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음 	재정부 산하의 정부기업당국(G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기업당국이 목표 설정 후 공시 재정부와 주무부처는 동일한 권한을 갖고 협의 후 의사결정(GCA의 전문적 견해 수렴)
벨기에	이중트랙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적 공기업 유형과 자율적 공기업 유형이 구분됨 	연방지주회사(상업적 공기업 유형)와 정부(자율적 공기업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목표가 설정되거나 개별부처가 설정
터키	이중트랙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부 산하 공기업총국 (Directorate General of SOEs) 민영화부(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의 투자 및 재무 목표는 재무부와 개발부(Ministry of Development)에서 설정 후 의회에서 승인, 공시
브라질	듀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예산관리부 산하의 조정실(Department of Coordination), 공기업지배구조실(DEST), 재정부, 주무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에 대한 모든 목표는 주무부처에서 설정 DEST는 지배구조 지침, 보수체계, 부직 및 자본유입 수립 재정부는 소유주체 역할을 하며 채권발행과 부채관리 주무부처는 공기업정책 설정

국가	소유권 모델		소유권 담당 기관	공기업 목표 설정 기관
	전반적	비교		
독 일	듀얼형		재정부, 개별 정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부가 민영화 정책 수립 • 개별 공기업의 목표는 기업 정관에 명시 • 경제적 목표는 이사회에서 수립 • 연방정부의 모든 참여자는 연차 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해야 함
이탈리아	듀얼형		재정경제부, 주무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부처가 공기업 목표 설정 및 공시
뉴질랜드	듀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부와 주무부처(50:50) • 재정부 산하의 상업적운영부서(Commercial Operation group)에서 기업 모니터링 및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부에서 공기업 목표 설정, 상업적운영부서에서 모니터링
콜롬비아	분권형		재정신용부(MH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은 법, 규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시사항을 하달받음 • 재정신용부가 공기업 목표 설정, 주무부처가 이사 임명권
멕시코	분권형		재정부, 공공기능부(Ministry of Public Fun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개발계획”에 명시된 정부 목표의 일환으로 주무부처가 공기업 목표, 우선사항, 개발정책, 협의사항, 예산, 자금 조달계획 설정 및 결과 평가

자료: OECD, *Compendium on SOE Governance and Ownership Practices, Corporate Governance*, 2017.

2) 집중형 모델(Centralised model)

- 집중형 공기업 소유권 모델은 국가 통제하에 있는 모든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단일의 중앙 의사결정기관이 소유권부처로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임

중국, 핀란드, 프랑스, 한국, 스웨덴 등에서 사용

단일의 중앙기관이 재정목표, 운영사항 및 공기업성과 모니터링을 모두 수행

이사 선임 방식은 국가별, 기업별로 다양하지만, 선임기준은 중앙기관이 제시

집중형 모델 사용 국가에서도 중앙기관이 관리하지 않는 예외 기업 존재

3) 듀얼 모델(Dual model)

- 듀얼 공기업 소유권 모델은 보통 한 공기업에 대해 한 주무부처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다른 하나의 정부기관이 그보다 많은 소유권을 행사하는 형태
브라질, 체코,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위스 등에서 사용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은 재정부임
결론적으로 개별 공기업에 대해 두 개의 기관이 소유권을 행사

4) 이중트랙 모델(Twin track model)

- 벨기에와 터키에서 사용하는 이중트랙 공기업 소유권 모델은 사실상 집중형 모델과 기능적으로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공기업 유형을 두 개의 정부기관이 각각 담당하는 형태
이중트랙 모델은 공기업 유형 각각의 소유권 기능이 실질적으로 한 기관에 의해 행사된다는 점에서 듀얼형 모델과는 다름
한 국가 내에서 두 가지 소유권 기능이 비경쟁적으로 행사된다는 점에서 집중형 모델과는 다름
벨기에에서 연방지주회사(Federal Holding & Investment Company)는 5개를 제외한 모든 공기업을 관리하며, 5개의 “자율적 공기업”은 정부가 관리
터키에서 민영화 대상인 공기업은 PA에서 담당하고, 민영화 대상이 아닌 공기업은 재무부 산하 차관부에서 담당

5) 조정기관형 모델(Coordinating agency model)

- 조정기관형 모델은 특정 정부기관이 공기업에 대한 조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임
이스라엘, 인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에서 사용
조정기관은 기타 국가 소유주체의 자문기관 역할을 함
조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공기업 성과 모니터링 또는 성과평가

조정기관형 모델은 공기업의 주무부처가 자율성이 크고 조정기관의 역할이 제한적일수록 분권형 모델과 상당부분 겹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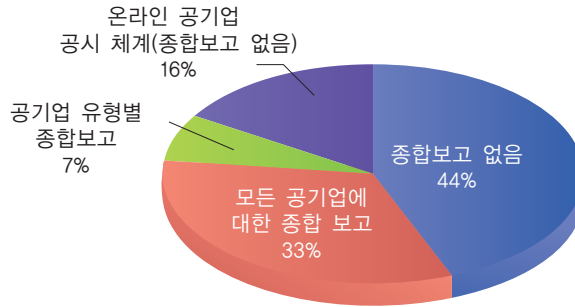
5) 분권형 모델(Decentralised model)

- 분권형 모델은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기관 또는 정부행위자가 하나가 아닌 다수일 때의 형태
 -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등에서 사용
 - 공기업 정책 수립, 경영성과평가, 이사선임, 민영화 등 다양한 소유권 기능을 다수의 기관에서 담당

3. 공기업 공시 및 보고체계

- 공기업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요함
 -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의 소유 주체로서 “일관된 보고체계를 개발해야 되며 공기업에 대한 종합 연차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공기업 정보에 대한 인터넷 웹 기반의 공시체계 개발을 권고
 - OECD는 2016년 51개의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기업 보고체계 현황”에 대해 조사

[그림 3] 국가별 공기업 보고체계 형태



1) 일반적 종합보고체계

- 51개 국가 중 약 50%의 국가에서는 모든 공기업 또는 대부분의 공기업을 포괄하는 종합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공기업 정보를 온라인에 공시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칠레, 중국, 네덜란드, 터키 등 5개국의 경우, 정부 소유주체 또는 지주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일부 공기업 유형의 정보만 보고
 - 오스트리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 6개 국가에서 종합 보고서를 자국어 이외의 언어로 제공

2). 공기업 정보의 온라인 공시

-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카자흐스탄, 한국,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등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7개 국가에서는 통합 재무제표 또는 연차보고서 형태로 공기업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국가재무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모든 공기업의 분기별 재무 및 고용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종합 자료를 제공함
 - 한국의 경우, ALIO 시스템을 통해 개별 공기업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공개

3. 정부 소유권정책의 보고

- 종합보고체계를 구축한 국가 중 절반 정도는 보고서에 자국의 공기업 소유권 정책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핀란드의 연차보고서에는 공기업 소유권 정책의 주요 내용 등을 포함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공기업을 주로 국가지주회사가 관리하는 국가에서는 보고서
에 지주회사의 의무사항과 국가 소유권 및 민영화 정책 방향이 제시됨
종합보고체계를 갖춘 모든 국가에서는 공기업의 재정 성과 및 상태에 대한 보고서에
포함하고 있음
종합연차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캐나다, 호주, 한국 등의 국가에서는 그에 상응하
는 공기업 핵심 재무성과 및 평가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고 있음

참고문헌

OECD, *Compendium on SOE Governance and Ownership Practices, Corporate Governance*, OECD, 2017, pre-publication version, 'Chapter 1, The State Enterprise Ownership Function' '1-2, SOE Ownership Models' 와 '1-3 Models for Annual Aggregate SOE Reporting'

베트남 공기업 개혁과제 추진현황

1. 베트남 중앙경영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회의

- 2017년 4월 11일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중앙경영위원회(Central Businesses Bloc's Party Committee, 이하 CBB) 설립 10주년 기념회의에서 은구옌 수안 폭 총리는 베트남 공기업의 발전을 위한 공기업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함⁰¹

CBB는 지난 10년간 1,100개의 기업 및 81,0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위원회로 성장하였음⁰²

민간기업, 공공기관, 은행들이 CBB에 속하여 베트남의 거시경제 견인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CBB에서는 베트남 국가예산수입의 3분의 1을 벌어들이며 백만명가량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음

또한 국가 사회안전망에 31조베트남동(약 1조 5천억원)을 투자하는 거대 단체임

⁰¹ Viet Nam News, "Personnel key for State-own companies' development," 2017.4.21, <http://vietnamnews.vn/politics-laws/374494/personnel-key-for-state-own-companies-development.html#hvEv7YqJ377yJBt.97>, 검색일자: 2017.5.4

⁰² Nhan Dan, "Party Committee of CBB celebrates 10 years of establishment," 2017.4.21, <http://en.nhandan.com.vn/politics/domestic/item/5126802-na-vice-chairman-reviews-khanh-hoa%E2%80%99s-socio-economic-situation.html>, 검색일자: 2017.5.4

- 이번 10주년 회의에서 은구옌 총리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축하하면서 특히 공기업의 기여가 국가 GDP 증가분의 30퍼센트가량을 차지한다고 역설
민간기업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온 노동생산성 향상, 브랜드 가치 창출, 투자자본 관리 등의 발전방향을 차용하여야 할 것을 주문함

-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공기업 영역에서 과학기술개발에 선구자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독려함
과학기술은 최종적 목표가 아닌 도구라면서 각 기업의 이사회 의장과 경영책임자들에게 대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발생하게 될 국가 간 통합경제에 대해 역설함
이를 위하여 기업경영에 연구와 전략적 비전을 통해 다가오게 될 미래에 대해 준비할 것을 주장함

- 국가경제발전에 공기업의 지대한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공기업 부패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함
공기업관리자들의 부정부패, 부당이득 취득이 사라질 때 도약의 발판이 마련된다면 서 기업가치 우선주의를 당부함
실제로 지난 4월 27일 베트남 공산당 산하 중앙조사위원회에서는 전 교통부 장관이자 호치민 당서기인 딘라탕 공산당 정치국원을 해임함⁰³
딘라탕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거대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의 회장을 맡으며 오션뱅크(OceanBank)사에 대한 투자과정에서 비리혐의가 드러나 해임당함
지난 2년간 페트로베트남에서 함께 근무한 딘라탕의 부하 중 두 명이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으며 딘라탕의 후임사장인 은구옌 수안 손 역시 2015년 오션뱅크의 수장으로 재직 중 부당거래 혐의로 체포된 바 있음
이번 사건 외에도 전 총리이자 정치 관료였던 은구옌 탄 텅 역시 선박회사이자 베트남

⁰³ Asia Times, "A top comrade's fall underlines divisions in Vietnam," 2017.5.4, <http://www.atimes.com/article/top-comrades-fall-underlines-divisions-vietnam/>, 검색일자: 2017.5.4

남 최고규모의 공기업인 Vinashin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40억USD에 달하는 횡령들에 연루되어 해임 위기에 빠진 전례가 있음⁰⁴

2. 베트남 공기업의 부패문제

- 베트남의 공기업은 엘리트 공산당원들의 부의 축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

공기업은 토지, 자본, 생산원자재 등의 사용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통해 정치권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는 정치 관료들로 하여금 심각한 부정부패에 쉽게 노출되게 하는 구조로 작용함
국제청렴도조사기관인 국제청렴도조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도 베트남을 부패 요주의 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 또한 이날 연설에서 공기업 운영에 내재된 과도한 부채비율, 투자자본의 비효율적 관리 등과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을 주문함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노동생산성이 국가 전반의 상품가치 창출에 장애물이 라고 주장

- 베트남의 국가적 재난문제인 메콩-델타 지역의 염수침입 문제를 언급하며 이보다 더 심각한 국가적 문제는 베트남 생산물자의 저품질 문제라며 공기업들에 대해 부패와 국가예산을 줄먹는 부당한 청탁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함

한편 공기업의 기업공개를 통한 지분매각정책(Equitisation)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함

이를 통한 민간자본 투입으로 기업운영 및 경영행태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를 강화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함

⁰⁴ BBC News, "Trial begins for Vietnam ship scandal executives," 2012.3.27., <http://www.bbc.com/news/world-asia-17520377>, 검색일자: 2017.5.4

3. 공기업 매각계획 발표

■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베트남 국가투자공사(Vietnam's State Capital Investment Corporation, 이하 SCIC)에서는 2020년까지 137개 공기업에 대한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함⁰⁵

아래 <표 1>과 같이 현재 SCIC로 소유권이 이전된 공기업 중 민간 대상 매각예정 기업들이 공개되어 있음

<표 1> SCIC에서 2017년 매각 예정인 공기업 목록

NO.	Code	Company name	Group	Dept. in charge	Chartered dap	State cap	State cap.
1	KTU08	Kon Tum Transportation Terminal JSC	B2	Central Region Branch	32,797,400,000	31,822,900,000	97%
2	BTH10	Binh Thuan construction material and mineral JSC	B2	Central Region Branch	35,516,010,000	23,625,440,000	67%
3	LDO13	Lam Dong Tea JSC	B2	Central Region Branch	45,000,000,000	20,250,000,000	45%
4	QNA12	Quang Nam Forest Products Export-Import JSC	B2	Central Region Branch	30,000,000,000	19,518,000,000	65%
5	LDO08	Lam Dong Pharmaceutical JSC	B1	Central Region Branch	67,998,860,000	21,674,980,000	32%
6	QBI02	Quang Binh Port JSC	A2	Central Region Branch	8,900,000,000	7,966,000,000	90%
7	DLA05	Dak Lak EXport-Import Investment JSC	B2	Central Region Branch	70,000,000,000	6,490,000,000	9%
8	LDO10	Da Lat Tourism Service JSC	B2	Central Region Branch	59,132,500,000	6,086,850,000	10%
9	QNA23	Quang Nam Export-Import JSC	B2	Central Region Branch	6,131,970,000	5,178,970,000	84%
10	BGT34	Khanh Hoa Road Management and Construction JSC	A2	Central Region Branch	10,100,000,000	3,344,000,000	33%
11	BGT38	Dak Lak 26 Road Management and Construction JSC	A2	Central Region Branch	10,000,000,000	3,162,900,000	32%
12	HUE07	Thuan An Port JSC	A2	Central Region Branch	4,600,000,000	3,042,570,000	66%
13	HUE15	Thua Thien Hue Transportation Work and Irrigation Investment and Construction JSC	B2	Central Region Branch	17,029,080,000	2,940,290,000	17%
14	NTH02	Phuong Hai JSC	B2	Central Region Branch	9,502,000,000	2,741,140,000	29%
15	GLA10	Gia Lai Bridge and Road Construction, Management and Maintenance JSC	B2	Central Region Branch	4,500,000,000	2,193,040,000	49%

출처: SCIC Portfolio List of Divestee Companies(2017)⁰⁶

⁰⁵ Vietnam Briefing, "Vietnam to Sell Stakes in 137 State Owned Enterprises by 2020," 2017.4.19, <http://www.vietnam-briefing.com/news/vietnam-sell-stakes-137-state-owned-enterprises-2020.html/>, 검색일자: 2017.5.4

⁰⁶ STATE CAPITAL INVESTMENT CORPORATION, "Portfolio List of Divestee Companies," <http://www.scic.vn/english/documents/List%20of%20divested%20companies%202017.pdf>, 검색일자: 2017.5.8

이전까지 행해진 공기업 지분의 매각 및 이로 인한 성공적인 투자결과들을 통해 해외투자자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제한요건을 완화하기에 이룸

일례로 베트남 최대의 유제품 기업인 Vinamilk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후 주가가 80배나 뛰어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한 바 있음

하지만 기업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 및 매각절차의 복잡성 등은 여전히 투자심리에 제약요소로 꼽히고 있음

- SCIC는 성과발표를 통해 2017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함과 동시에 2017년의 활동계획을 밝힘⁰⁷

SCIC는 2005년 6월 설립된 국가소유기금으로서 정부투자효율 향상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국가의 국영기업 소유권을 감독·규제하는 기구임(지난해 11월 동향 참고)

이곳에서 국영기업 재구조화 및 민영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신주발행 또는 금융상품 판매 등을 통해 국가수입을 창출함. 이로 인해 많은 수의 국영기업 소유권이 주무부처 및 지방정부로부터 이전되었음

2017년 1분기 동안 6,390억베트남동의 총수익과 5,030억베트남동의 세후순이익을 올렸음

발표된 2017년 운영계획에서는 2016년 12월 발표된 총리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무부처 및 지방정부 공산당 위원회에 귀속되어 있는 공기업들의 정부지분에 대한 매각속도를 올릴 계획

또한 국가가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공기업에 대한 매각 및 기업 재구조화에 속도를 올리는 한편 국가적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를 촉진할 계획

한편 주요 성과지표 발굴, 전문인재 확보 등을 통해 SCIC의 전략적 역량을 확보할 계획

⁰⁷ STATE CAPITAL INVESTMENT CORPORATION, 「Media Room(Press Releases)」, <http://www.scic.vn/english/index.php/thong-tin-bao-chi/190-scic-releasing-its-performance-results-for-1st-quarter-of-2017-and-business-plan-for-2017.html>, 검색일자: 2017.5.8

- 공기업 지분매각 절차에 앞서 베트남 정부는 해당 공기업의 소유권을 부처 또는 지방정부 위원회로부터 SCIC로 이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이후 SCIC는 이를 지분화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러한 소유권 이양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림
 - 소유권 부처 또는 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소유권 이양에 우호적이지 않으며 실패한 공기업에 한해 이양을 하려는 입장임
 - 실제로 2013년부터 소유권 이양대상인 234개 공기업 중 173개 기업이 이러한 지연 전략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4. 해외투자유치 확대계획

- 지난 수년간 해외투자자들은 베트남 중산층의 성장을 통한 베트남 경제 활성화 및 자산 가치 증대에 관심을 가져왔음
 -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 투자지분 상한 제한 완화조치는 해외의 큰손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하였음
 -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소유권 이양절차의 지연과 기업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공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여 투자시장에 큰 해로 작용하였음
 - 결과적으로 전략적 투자자들은 경영에 관여할 수 없는 소규모 지분에 대한 투자를 감행하는 데 신중하게 되는 기조가 형성되었음
 - 더불어 SCIC는 수익성이 좋은 기업의 매각절차에 있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지분의 확대를 통해 대규모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일 것을 주문받고 있음

참고문헌

- Asia Times, “A top comrade’s fall underlines divisions in Vietnam,” 2017.5.8.,
<http://www.atimes.com/article/top-comrades-fall-underlines-divisions-vietnam/>, 검색일자: 2017.5.4.
- BBC News, “Trial begins for Vietnam ship scandal executives,” 2012.3.27.,
<http://www.bbc.com/news/world-asia-17520377>, 검색일자: 2017.5.4.
- Nhan Dan, “Party Committee of CBB celebrates 10 years of establishment,”
 2017.4.11. <http://en.nhandan.com.vn/politics/domestic/item/5126802-na-vice-chairman-reviews-khanh-hoa%E2%80%99s-socio-economic-situation.html>, 검색일자: 2017.5.4.
- STATE CAPITAL INVESTMENT CORPORATION, 「Portfolio List of Divestee Companies」,
<http://www.scic.vn/english/documents/List%20of%20divested%20companies%202017.pdf>, 검색일자: 2017.5.8.
- STATE CAPITAL INVESTMENT CORPORATION, 「Media Room(Press Releases)」,
<http://www.scic.vn/english/index.php/thong-tin-bao-chi/190-scic-releasing-its-performance-results-for-1st-quarter-of-2017-and-business-plan-for-2017.html>, 검색일자: 2017.5.8.
- Viet Nam News, “Personnel key for State-own companies’ development,”
 2017.4.21, <http://vietnamnews.vn/politics-laws/374494/personnel-key-for-state-own-companies-development.html#vEv7YqJ377yjBEt.97>, 검색일자: 2017.5.4.
- Vietnam Briefing, “Vietnam to Sell Stakes in 137 State Owned Enterprises by 2020,”
 2017.4.19, <http://www.vietnam-briefing.com/news/vietnam-sell-stakes-137-state-owned-enterprises-2020.html/>, 검색일자: 2017.5.4.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공기업 이사회의 효과성과 구조(1)⁰¹

1. 도입

- 동 보고서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공기업의 이사회 효과성 및 구조 2016」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
 - 동 설문조사는 라틴아메리카 개발은행(CAF)의 회원국 내 공기업 이사회의 효과성과 구조를 분석하여 공공정책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다른 공기업들에게 모범이 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됨

2. 설문조사

- 동 설문조사에는 CAF 회원국의 50여개 공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음

⁰¹ 동 해외동향은 다음의 2017년 CAF 보고서를 요약 및 정리하였음

CAF, "Effectiveness and Structure of Boards of Directors at State-Owned Enterpris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ublic Policy and Productive Transformation Series*, No. 25, 2017.

설문조사에 참여한 공기업의 국가는 13개국임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

■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의 공기업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 전력, 기타 공기업 순으로 설문에 참여한 공기업의 수가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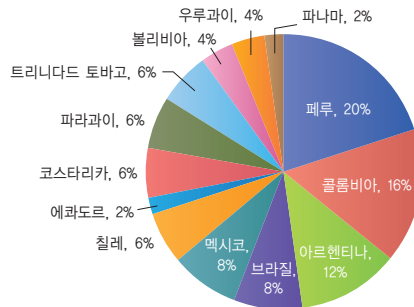
설문에 응답한 공기업들 중 65%는 정부가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였으며, 나머지는 정부가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음

설문에 응답한 공기업들 중 90%가 국가공기업이었으며, 6%가 주(州)와 같은 수준의 지방공기업, 4%가 시(市) 단위의 지방공기업임

설문에 응답한 공기업들 중 35%만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음(국내 상장 31%, 해외상장 4%)

- 설문에 응답한 상장된 공기업들 중 44%가 금융 및 보험분야에 속해 있고, 다음으로 전력(31%), 유틸리티, 석유 및 가스, 교통 및 물류, 기타 순이었음(각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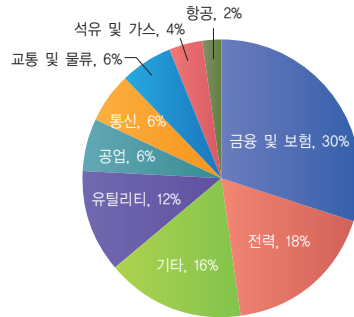
[그림 1] 국가별 참여도



출처 : CAF, "Effectiveness and Structure of Boards of Directors at State-Owned Enterpris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ublic Policy and Productive Transformation Series*, No. 25, 2017, p. 23.

(1)

[그림 2] 산업별 참여도



출처 : CAF, "Effectiveness and Structure of Boards of Directors at State-Owned Enterpris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ublic Policy and Productive Transformation Series*, No. 25, 2017, p. 23.

3. 설문 분석

1) 이사회 구성

- 질문에 응답한 공기업의 74%는 외부이사(external director)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음

외부이사는 본인의 개인적 혹은 직업적 여건으로 인해서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이며, 이들은 공무원이거나 정부의 도급업자(contractor)일 수 있음
 -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에서는 공무원만이 이사가 될 수 있다고 법령으로 규정해 놓은 경우도 존재함

- 질문에 응답한 공기업 중 50%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음

독립이사는 본인의 경험 및 지식으로부터 기업을 경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들로, 해당 기업 주주 또는 소유주, 이사 및 경영진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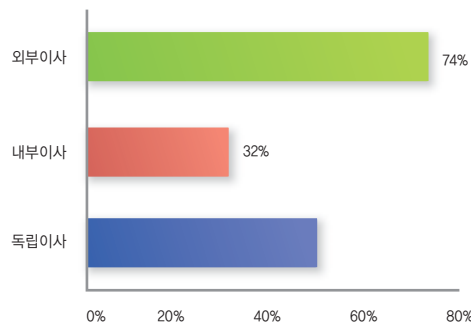
이사회당 독립이사의 구성비 평균은 53%이며, 13개 응답 국가들 중 11개 국가의 공기업 이사회는 최소한 1명의 독립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음

설문에 참가한 공기업들 중 모든 통신 공기업들에는 독립이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전력 공기업 중에서는 78%에서, 교통 및 물류 공기업들 중에는 67%에서 독립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음

- 반면, 유틸리티 공기업들 중 17%에서만 독립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음

- 설문에 응답한 공기업 중 32%에서는 경영진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음(내부이사)
정부가 지분을 100% 소유한 공기업들 중 65%에서 내부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반면에 정부가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들에서는 29%만이 내부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었음

[그림 3] 이사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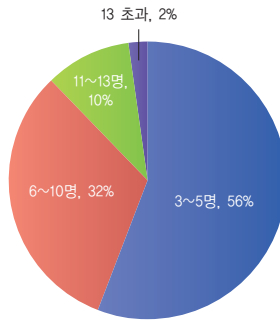
출처 : CAF, "Effectiveness and Structure of Boards of Directors at State-Owned Enterpris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ublic Policy and Productive Transformation Series*, No. 25, 2017, p. 23.

- 대부분의 공기업 이사회는 3~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56%), 이사회 정수의 평균은 7명이었음

응답한 공기업의 78%에서 이사회 정수가 홀수였음

(1)

[그림 4] 이사회 정수



출처 : CAF, "Effectiveness and Structure of Boards of Directors at State-Owned Enterpris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ublic Policy and Productive Transformation Series*, No. 25, 2017, p. 23.

-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공기업의 72%에서 ‘이사대리(substitute member)’가 존재하지 않았음

이사대리는 이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 또는 사임할 경우에 이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며, 이를 통해 이사회 정족수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함
최소 1명 이상의 이사대리가 존재하는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브라질 및 코스타리카임

- 설문에 응답한 공기업 중 64%는 소유권을 대행하는 공공기관이 이사를 임명하며, 40%는 주주총회가 이사를 임명함(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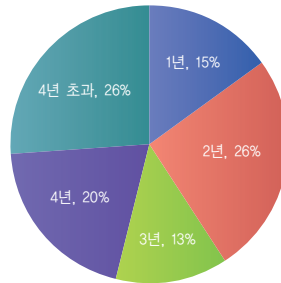
2) 이사의 선임 및 임기

- 이사회의 임기에 대해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없었으며, 2년 임기와 4년 임기가 각 26%의 응답률을 나타냄

멕시코, 파나마 및 우루과이는 이사를 평균적으로 매 5년마다 선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콜롬비아, 에콰도르 및 브라질은 매 1~2년 사이에 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6] 이사의 선임 간격



출처 : CAF, "Effectiveness and Structure of Boards of Directors at State-Owned Enterpris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ublic Policy and Productive Transformation Series*, No. 25, 2017, p. 23.

- 응답한 공기업의 31%가 시차 이사회 제도(staggered renewal system)를 도입하고 있음

시차 이사회 제도는 이사회 전원을 동시에 교체하지 않고 임기가 종료된 이사 일부만을 교체함으로써 이사회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제도임

시차를 두어 이사를 선임하는 공기업 이사회는 최소 2년을 이사의 임기로 하며, 대부분은 외부이사들로 구성됨(80%)

설문에 응답한 멕시코 공기업 중 75%는 시차 선임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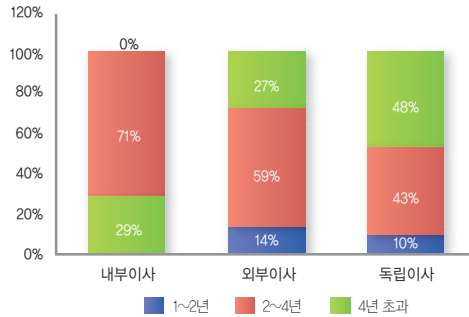
유틸리티, 금융 및 보험, 전력 부문이 시차 선임 방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분야임(각 33%)

- 내부 및 외부 이사의 재임 기간은 대부분 2~4년 사이임

독립이사가 이사의 재임기간 평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1)

[그림 7] 이사의 임기



출처 : CAF, "Effectiveness and Structure of Boards of Directors at State-Owned Enterpris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ublic Policy and Productive Transformation Series*, No. 25, 2017, p.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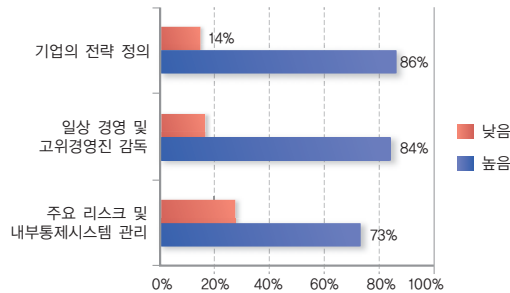
3) 이사의 프로파일(profile)

- 응답한 공기업의 54%는 이사 선임을 위한 프로파일을 정의하고 있음
46%의 공기업이 이사 선임을 위한 프로파일을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사의 선임절차가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높임
- 이사회를 평가하는 공기업들 중 31%만이 차기 이사 선임 과정을 위한 자료(inputs)로서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이사의 임용을 위해서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공기업들 중 67%는 이사회를 평가하고, 이 중 44%는 이사회 실적 평가 결과를 이사 임용 과정에서의 자료(inputs)로 활용하고 있음
응답한 공기업의 11%는 프로파일을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있음
- 이사회의 평가 결과를 임명 과정 중에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이사의 연임 결정 외에도 이사들의 자기계발을 촉진하고 이사회에 부족한 능력/역량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을 함

4) 이사회 역할 및 의사결정 참여

- 설문에 참여한 공기업 중 최소 70%는 이사회가 전략을 세우고, 고위 경영진을 감독하며, 리스크 및 내부 통제를 감독하는 데 깊이 관여하고 있음
 이사회가 가장 적게 관여하고 있는 부분은 리스크 및 내부통제의 감독임(27%)
 우루과이, 볼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및 에콰도르는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높은 관여도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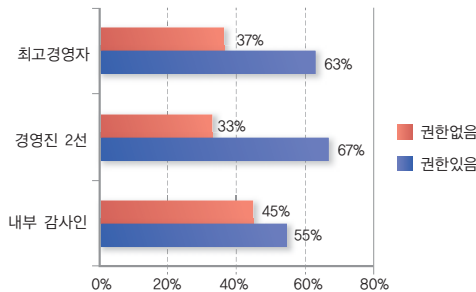
[그림 8] 이사의 역할에 따른 개입수준



출처 : CAF, "Effectiveness and Structure of Boards of Directors at State-Owned Enterpris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ublic Policy and Productive Transformation Series*, No. 25, 2017, p. 23.

- 설문에 참여한 공기업 중 다수는 경영진 및 최고경영자를 임명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
 다만, 내부 감사인을 임명하는 권한을 수행하는 이사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그림 9] 이사회 임명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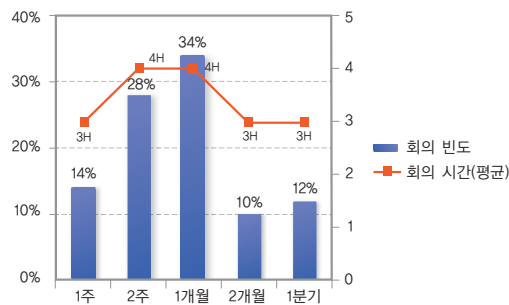
출처 : CAF, "Effectiveness and Structure of Boards of Directors at State-Owned Enterpris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ublic Policy and Productive Transformation Series*, No. 25, 2017, p. 23.

(1)

5) 이사회 회의의 빈도 및 시간

- 회의 빈도에 대해서는 설문 참여 공기업을 내에서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 회의 시간의 평균은 3시간 30분임

[그림 10] 이사회 회의 빈도 및 회의 시간



출처 : CAF, "Effectiveness and Structure of Boards of Directors at State-Owned Enterpris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ublic Policy and Productive Transformation Series*, No. 25, 2017, p. 23.

6) 이사회 회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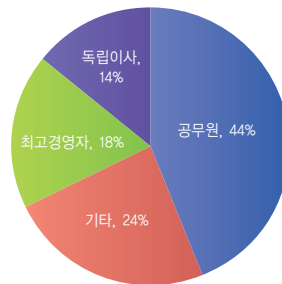
- 설문에 참여한 공기업 중 98%는 각 이사회 회의의 주제를 포함하는 회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음
- 설문에 참여한 공기업 중 81%가 회의 5일 전까지 회의에서 다루어질 아젠다에 관한 정보를 이사들에게 전송하고 있음

7) 이사회 의장

- 설문에 참여한 공기업 중 44%의 이사회 의장은 공무원이었음
공무원 이사회 의장은 콜롬비아,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및 에콰도르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는 법령이 공무원을 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설문에 참여한 공기업 중 18%는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가 겸직을 하고 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와 코스타리카에서 두드러진 현상임
 이사회 의장직을 독립이사가 맡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오직 14%의 공기업만이 해당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 칠레의 공기업들이 해당 권고사항을 가장 잘 준수하고 있음

[그림 11] 이사회 의장



출처 : CAF, "Effectiveness and Structure of Boards of Directors at State-Owned Enterpris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ublic Policy and Productive Transformation Series*, No. 25, 2017, p. 23.

8) 이사회 사무국

- 설문에 참여한 공기업 중 90%에서 이사회 사무국이 회의록을 정리하고, 규정, 내규, 우수사례 등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코스타리카의 일부 공기업에서는 이사회 사무국이 상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

참고문헌

- CAF, "Effectiveness and Structure of Boards of Directors at State-Owned Enterpris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ublic Policy and Productive Transformation Series*, No. 25, 2017.

정책동향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2016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04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개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22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확정·발표하였음
 - (제도 내용) 고객만족도 조사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직접 제공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음
 - 대상기관을 기관의 지정 유형과 제공 중인 서비스에 따라 그룹화하고 전문리서치 기관을 통해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S)-우수(A)-양호(B)-미흡(C) 등급을 부여함
 - (조사 결과) 최우수(S)기관은 23개, 우수(A)는 88개, 양호(B)는 94개, 미흡(C)은 18개 기관이 해당되고 조사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며 알리오를 통해 국민에게 공시함
- (조사 개요)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함
 - (연혁) '99년에 현재 공기업에 해당하는 당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도입하였고, '04년에는 현재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정부산하기관으로, '05년에는 현재의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 부처 자율혁신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함

(대상)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84개, 기타공공기관 115개로 총 22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출연연과 정원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의 경우 기재부 주관 통합조사에서 제외하고 주무부처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발전자회사 등 모회사가 주 고객인 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함

(시기·방법) '16.12.20 ~ '17.2.17일 중 전화·현장조사·이메일 등으로 총 11.7만 표본을 조사함

(실사업체) 조사 단계별로 기본설계자, 주간사업자, 실사업체에 위탁하였음

- 기본설계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대상사업선정, 고객정의)

- 주간사업자: 능률협회컨설팅, 리서치랩 등 4개 업체(조사관리)

- 실사업체: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등 10개 업체(전화, 현장조사)

(결과 활용) 공공기관 서비스 품질경쟁 강화를 위해 상대평가로 S-A-B-C 등급을 부여하여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함

- (조사 특징) 대상 기관을 그룹화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특히 '16년에는 객관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의 대상사업과 고객범위를 재검토함

(그룹화) 대상기관을 기관의 지정 유형과 제공 중인 서비스 성격에 따라 그룹화하였음

- 지정 유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였고, 서비스 성격에 따라 5개 유형인 산업진흥, 국민생활증진, 안전/평가관리, 시장경쟁, 시설 기반 서비스로 나누었음

(재검토) '16년에는 고객만족도 대상사업과 고객 범위를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누락·축소를 방지하였음

(대상 확대) 재검토 결과 '15년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이 177개에서 '16년에는 223개로 대폭 확대되었고, 대상사업 수도 15년 1,135개에서 1,393개로 증가하였음

- (조사 결과) 223개 기관의 조사 결과, 최우수(S)는 23개, 우수(A) 88개, 양호(B)는 94개, 미흡(C)은 18개 기관으로 나타남

〈표 1〉 그룹별 등급 현황

(단위: 개)

구분		S	A	B	C	비고(S등급 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산업진흥(38개)	5	13	17	3	코트라, 관광공사 등
	국민생활증진(24개)	2	10	9	3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안전/평가관리(22개)	2	12	7	1	도로교통공단 등
	시장경쟁(5개)	1	2	2	-	보훈복지의료공단
	시설기반서비스(19개)	6	10	2	1	국립공원, 수공 등
기타 공공 기관	산업진흥(26개)	3	6	14	3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국민생활증진(40개)	-	15	21	4	-
	안전/평가관리(21개)	1	9	9	2	코레일네트웍스
	시장경쟁(28개)	3	11	13	1	전남대병원 등
계(223개)		23	88	94	18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3.29.)

(전년 대비) 2015년 조사결과가 있는 1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등급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등급 상승기관은 44개, 하락기관은 29개, 변동이 없는 기관은 104개로 조사됨 (결과 활용) 조사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알리오에 공시함
- C등급을 받은 미흡기관의 경우(18개) 주무부처에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계획의 제출 및 컨설팅 교육 등을 추진함

출 처

-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16.9.
-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17.3.29. http://mosf.go.kr/nw/nes/detailNesDt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08562&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3.30

* 본 동향은 해당기사의 내용을 가공하여 재생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1

2016년 그룹별 · 기관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나다순)

III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상대 등급	산업진흥 (38개)	국민생활증진 (24개)		안전/평가관리 (22개)		
		15년	15년	15년	15년	
S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S	국민체육진흥공단	-	도로교통공단	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A	우체국물류지원단	A	한국석유관리원	A
	한국관광공사	S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A				
	해양환경관리공단	A				
A등급	기술보증기금	A	국민건강보험공단	B	교통안전공단	B
	농업기술실용화재단	B	국민연금공단	B	축산물품질평가원	A
	신용보증기금	A	근로복지공단	A	한국가스안전공사	A
	중소기업진흥공단	B	사회보장정보원	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B
	한국광물자원공사	A	예금보험공사	S	한국소방산업기술원	A
	한국광해관리공단	S	주택도시보증공사	S	한국시설안전공단	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에너지공단	A
	한국산업단지공단	A	한국노인인력개발원	A	한국인터넷진흥원	A
	한국산업인력공단	B	한국주택금융공사	B	한국임업진흥원	A
	한국세라믹기술원	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A	한국전력거래소	A
	한국언론진흥재단	B			한국철도시설공단	A
	한국정보화진흥원	B			한국환경공단	A
	한국환경산업기술원	A				
B등급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B	국제방송교류재단	B	선박안전기술공단	B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B	사학연금공단	B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C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C	한국과학창의재단	B	한국국토정보공사	A
	영화진흥위원회	B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B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B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B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C	한국소비자원	B	한국전기안전공사	A
	한국기상산업진흥원	B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	한국해양수산연수원	C
	한국농어촌공사	B	한국장학재단	C		
	한국디자인진흥원	B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B		
	한국무역보험공사	B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				
	한국산업기술진흥원	A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B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A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B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B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C					
C등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B	공무원연금공단	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
	한국문화예술위원회	B	한국고용정보원	C		
	한국콘텐츠진흥원	B	한국연구재단	C		

상대 등급	시장경쟁 (5개)	시설기반서비스 (19개)		
		15년	15년	15년
S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S	국립공원관리공단	A
			대한석탄공사	A
			한국가스공사	A
			한국도로공사	A
			한국마사회	S
한국수자원공사	A			
A등급	한국감정원	A	국립생태원	S
	한국철도공사	A	부산항만공사	B
			여수광양항만공사	A
			울산항만공사	A
			인천국제공항공사	A
			인천항만공사	S
			한국공항공사	A
			한국자산관리공사	S
			한국조폐공사	B
			한국지역난방공사	A
B등급	한국우편사업진흥원	B	독립기념관	A
	한국토지주택공사	A	한국전력공사	A
C등급			한국석유공사	C

■ 기타공공기관

상대 등급	산업진흥 (26개)	안전평가관리 (21개)			
		15년	15년	15년	
S등급	중소기업은행	-	코레일네트웍스	A	
	한국수출입은행	A			
	한국예탁결제원	S			
A등급	한국발명진흥회	B	국립광주과학관	-	
	한국벤처투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한국산업은행	A	부산항보안공사	A	
	한국원자력문화재단	A	우체국시설관리단	-	
	한국저작권위원회	A	인천항보안공사	B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	전쟁기념사업회	A
				주택관리공단	A
코레일관광개발				B	
			항로표지기술협회	-	

상대 등급	산업진흥 (26개)	안전평가관리		
		15년	(21개)	15년
B등급	노사발전재단	B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B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국립대구과학관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B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국립해양박물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B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A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워터웨이플러스	C
	중소기업유통센터	B	태권도진흥재단	B
	창업진흥원	B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한국데이터진흥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B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		
	한국어촌어항협회	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B			
C등급	전라물자관리원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B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한국보육진흥원	B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B		

상대등급	국민생활증진 (40개)	시장경쟁		
		15년	(28개)	15년
S등급			서울대학교치과병원	A
			전남대학교병원	S
			코레일유통	A
A등급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강원대학교병원	A
	대한법률구조공단	A	경북대학교병원	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A	경상대학교병원	A
	한국건강증진개발원	B	국립암센터	A
	한국건설관리공사	-	국립중앙의료원	A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서울대학교병원	-
	한국문학번역원	-	예술의전당	A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전북대학교병원	A
	한국문화재단	A	충남대학교병원	A
	한국문화정보원	B	충북대학교병원	A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한국원자력의학원	A
	한국사학진흥재단	A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영상자료원	A		
	한국해양조사협회	-		

상대등급	국민생활증진 (40개)	시장경쟁		
		15년	(28개)	15년
B등급	APEC기후센터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B
	건설근로자공제회	B	광주과학기술원	B
	게임물관리위원회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B
	국가평생교육진흥원	C	부산대학교병원	B
	국악방송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A
	대한장애인체육회	C	정동극장	A
	대한적십자사	B	제주대학교병원	B
	대한체육회	C	코레일로지스	B
	영상물등급위원회	-	한국과학기술원	C
	예술경영지원센터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B
	중소기업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B
	한국건강가정진흥원	C	한국잡월드	B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한국폴리텍대학	B
	한국상하수도협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약품안전관리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B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C등급	국제원산지정보원	-	강원랜드	B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B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참고 2

'15년 대비 조사등급 상승·하락 기관

■ 조사등급 상승기관(44개 기관)

번호	기관유형	조사그룹	기관명	15년 등급	16년 등급
1	공기업/ 준정부기관	산업진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B	A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C	B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A	S
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C	B
5			중소기업진흥공단	B	A
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A	S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	B
8			한국산업인력공단	B	A
9			한국언론진흥재단	B	A
10			한국정보화진흥원	B	A
11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C	B
12			해양환경관리공단	A	S
13			국민생활증진	국민건강보험공단	B
14		국민연금공단		B	A
15		우체국물류지원단		A	S
16		한국장학재단		C	B
17		한국주택금융공사		B	A
18		안전/평가	교통안전공단	B	A
19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C	B
2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B	A
21			한국석유관리원	A	S
2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C	B
23		시설기반	국립공원관리공단	A	S
24			대한석탄공사	A	S
25			부산항만공사	B	A
26			한국가스공사	A	S
27			한국도로공사	A	S
28			한국수자원공사	A	S
29			한국조폐공사	B	A

번호	기관유형	조사그룹	기관명	15년 등급	16년 등급
30	기타 공공기관	산업진흥	한국발명진흥회	B	A
31			한국수출입은행	A	S
32		국민생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C	B
33			대한장애인체육회	C	B
34			대한체육회	C	B
3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C	B
36			한국건강증진개발원	B	A
37			한국문화정보원	B	A
38		안전/평가	워드웨이플러스	C	B
39			인천항보안공사	B	A
40			코레일관광개발	B	A
41		시장경쟁	코레일네트웍스	A	S
4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A	S
43			코레일유통	A	S
44			한국과학기술원	C	B

■ 조사등급 하락기관(29개 기관)

번호	기관유형	조사그룹	기관명	15년 등급	16년 등급
1	공기업/ 준정부기관	산업진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B	C
2			한국광해관리공단	S	A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B	C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A	B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A	B
6			한국콘텐츠진흥원	B	C
7		국민생활증진	공무원연금공단	B	C
8			예금보험공사	S	A
9			주택도시보증공사	S	A
10		안전/평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	B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	C
12			한국국토정보공사	A	B
13		시장경쟁	한국전기안전공사	A	B
14			한국토지주택공사	A	B
15		시설기반	국립생태원	S	A
16			독립기념관	A	B
17			인천항만공사	S	A
18			한국자산관리공사	S	A
19			한국전력공사	A	B

번호	기관유형	조사그룹	기관명	15년 등급	16년 등급
20	기타공공기관	산업진흥	한국어촌어항협회	A	B
2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B	C
22		국민생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B	C
23		안전/평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A	B
2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B	C
25			한국보육진흥원	B	C
26		시장경쟁	강원랜드	B	C
27			경북대학교병원	S	A
28			부산대학교치과병원	A	B
29			정동극장	A	B

참고 3

최우수기관(S등급) 고객만족경영 사례

구분	기관명	고객만족경영 사례
공기업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JDC면세점 '본인 인증 무인시스템' 도입
	한국가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사(발전사, 도시가스사)와 천연가스 요금 동향 등 정보교류 강화를 통한 상호이해 및 상생발전 모색 도시가스요금 경감관리 시스템(GRMS)을 통해 경감대상 온라인 검증으로 도시가스사 업무편의 증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고가의 스마트 광고제작 인프라를 구축하여 영세업체 등에게 무료제공 'kobacco 고음디딤돌' 사업을 통해 양질의 광고일자리 연계로 광고구직자들의 취업경쟁력을 제고
	한국도로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을 "휴게소 화장실 문화혁신의 해" 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고급화 시설로 개선 ex-OIL 주유소 확대로 유가부담 경감과 ex-HUB 구축으로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

구분	기관명	고객만족경영 사례
준정부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전시회 미래세대 환경교육 등 다채로운 탐방콘텐츠를 개발 •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장애 탐방시설과 에코힐링 야영장 확대로 최근 트렌드에 맞춘 서비스 제공
	도로교통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고객만족 경영 선포를 통해 반복 민원 해결방안 마련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민원종합안내 시스템, 대기시간 안내, 민원안내실명제, 인터넷 예약제도 등을 통해 고객편의 제고
기타공공기관	코레일네트웍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혁신 전담팀’을 신설하고, 서비스 조직문화를 확산해 ‘고객중심경영’을 실천 • 긍정적 마인드(Yes), 눈맞춤(Eye-contact), 미소(Smile) 라는 ‘에스 쓰리업(YES 3UP) 캠페인’을 확산시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서울대학교치과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치과위생사를 배치하여 처음 내원한 환자의 진료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불편한 고객을 위하여 진료 및 절차 안내를 위한 동행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전문강사가 영업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영업점별 밀착 코칭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 • IBK CS왕 포상제도 신설로 자발적인 CS실천 분위기 조성과 우수직원의 노하우 공유, 전파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 (개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2016년 공공기관의 1분기 공시항목에 대한 경영정보를 공시하였음
 - (목적)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 (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 (대상) 2017년 지정된 332개 공공기관 및 부설기관
 - (항목) 총 40개 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며,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분류하여 공시함
 - 최근 새로 추가된 공시항목에는 징계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등이 있음
 - 통합공시 항목 중 1분기(4월말)에 공시대상이 된 항목은 27개임⁰¹

- (인력)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중 인력과 관련된 임직원 정원, 신규채용, 비정규직, 육아휴직 사용자수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음
 - (임직원 정원)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9.9만명으로 전년 대비 11,643명(4.0%)이 증가하였음
 - 2016년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별도 정원이 늘어나 전년에 비해 정원이 크게 늘어남

⁰¹ 자세한 통합공시 항목 현황은 아래 참고에 제시되어 있음.

(신규채용) 2016년 신규 채용 규모는 21,016명으로, 2015년에 비해 1,855명(9.7%) 증가하였음

-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노력 등으로 지속 감소하여 2016년에는 전년대비 5,282명이 감소하였음

(육아휴직)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2,215명으로 전년대비 1,111명(10.1%) 증가하였음

- 특히 남성 사용자가 크게 1,017명으로 전년대비 225명(28.4%) 증가하였음

〈표 1〉 공공기관 신규채용 및 비정규직 규모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A)	2016 (B)	증감	증감률
신규채용	16,662	17,483	17,744	19,161	21,016	1,855	9.7
비정규직	45,318	44,107	43,597	41,781	36,499	5,282	12.6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5.1)

■ (재무) 2016년도 공공기관의 재무실적은 부채는 감축하고 자본과 자산은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16~'20)의 '16년 전망치를 초과하여 달성함

(부채) 부채는 499.4조원으로 전년대비 5.4조원 감소(△1.1%)했고, 부채비율은 167%로 전년대비 16%p 감소하여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

- 비핵심 자산매각(7.2조원)과 영업이익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침

-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30%⁰²로 2010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함

(자산) 공공투자 확대 등의 따라 2016년 자산은 798.7조원으로 전년대비 17.4조원이 증가하였음

(자본) 자본은 299.4조원으로 영업이익과 정부 출자로 전년대비 22.8조원 증가하였음

02 2010년 이후 GDP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10)32% → ('11)35% → ('12)36% → ('13)36% → ('14)35% → ('15)32% → ('16)30%임.

〈표 2〉 2016년 공공기관 재무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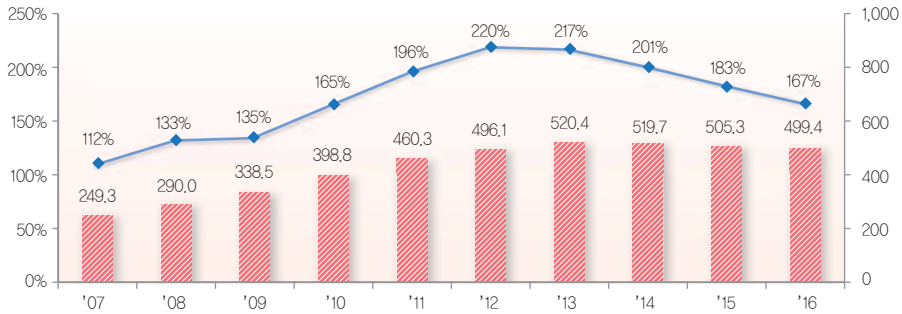
(단위: 조원)

구분	2015	2016	증감
부채(A)	505.3	499.4	△5.4
자본(B)	267.5	299.4	+22.8
자산(A+B)	781.3	798.7	+17.4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5.1.)

〔그림 1〕 공공기관 부채비율 및 부채규모

(단위: %,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5.1.)

(당기순이익) 저유가·저금리로 인한 매출원가·이자 등을 절감하여 2016년에 16.1조원으로 전년대비 3.6조원 증가하였음

- 저유가로 인한 한전의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 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고, 부채 감축, 투자확대 재원 등으로 활용됨

〈표 3〉 공공기관 영업이익

(단위: 조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영업이익	12.2	15.2	19.4	23.3	27.0
한전(연결)	△0.8	△1.5	5.8	11.3	12.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5.1.)

- (복리후생비)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중 복리후생비 항목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총액) 공공기관 인력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73억원(2.2%)이 증가하였음
 -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의 추진으로 2013년 대비 1,403억원 감소
 (항목별) 복리후생비 주요 항목 중 주택자금 지원, 경조사비, 학자금 등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보육시설 확대 등으로 보육비 지출은 전년대비 대폭 증가함

〈표 4〉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지출액

(단위: 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3년 대비		2015년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복리후생비	9,429	7,475	7,853	8,026	△1,403	△14.8	173	2.2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5.1)

출 처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16.9.

-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2017.5.1.
http://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09018&menuNo=4010100검색일자:2017.5.10.

-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 2017.5.1.
http://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09018&menuNo=4010100검색일자:2017.5.10.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http://www.alio.go.kr>,
검색일자: 2017.5.10.

* 본 동향은 해당기사의 내용을 가공하여 재생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1

통합공시 항목 현황

항 목		정기 / 수시	공시일
1. 일반현황		정기(연회)	4월말
2. 임직원 수		정기(분기별)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3. 임원현황		수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4. 신규채용 현황 및 유연근무 현황		정기(분기별)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5. 임원연봉		정기(연회)	4월말
6. 직원 평균보수		정기(연회)	4월말
7. 기관장 업무추진비		정기(연회)	4월말
8. 복리후생비		정기(연회)	4월말
9. 임원 국외출장 내역		수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10. 노동조합 관련현황	명칭 등	정기(분기별)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단체협약 등	수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11. 내부규정		수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12. 징계현황	운영현황	정기(연회)	4월말
	처분결과	정기(분기별)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13.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정기(분기별)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14.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현황		정기(분기별)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15. 요약 대차대조표	공기업 외	정기(연회)	4월말
	공기업	정기(반기별)	4월말/10월말
16. 요약 손익계산서	공기업 외	정기(연회)	4월말
	공기업	정기(반기별)	4월말/10월말
17. 수입 · 지출현황		정기(연회)	4월말
18. 주요사업		정기(연회)	4월말
19. 투자집행내역		정기(분기별)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20. 자본금 및 주주현황		정기(연회)	4월말
21. 장단기 차입금현황		정기(반기별)	4월말/10월말
22. 투자 및 출자현황	투출자 현황 등	정기(연회)	4월말
	채취업 현황 등	수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23. 연간 출연 및 증여		정기(연회)	4월말
24. 경영부담 비용추계	담보현황 등	정기(연회)	4월말
	기타 부담	수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25. 납세정보 현황	법인세	정기(연회)	4월말
	세무확정내역	수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항 목		정기 / 수시	공시일
26. 감사보고서		정기(연1회)	4월말
27. 국회 지적사항		수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28.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수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29.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등록	
30. 경영평가 지적사항		정기(반기별)	4월말/10월말
31.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등록	
32.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등록	
33. 이사회 회의록, 내부 감사결과		수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34. 경영혁신사례		수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35. 임직원 채용정보		수시	공고기간 시작일까지
36. 계약정보	공개입찰정보	수시	공고기간 시작일까지
	수익계약	정기(분기별)	4월말/7월말/10월말/1월말
37. 연구보고서		수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38. 기타정보공개		수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39.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정기(연1회)	4월말
40. 복리후생 관련 8대항목	퇴직금 지급 등	정기(연1회)	4월말
	경영·인사 등	수시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참고 2

① 임직원 수 현황(정원)

(단위 : 명, %)

	'12	'13	'14	'15(A)	'16(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263,794	272,539	279,950	287,966	299,609	11,643	4.0
· 공기업	108,287	111,110	113,679	115,695	119,570	3,875	3.3
· 준정부기관	72,566	74,776	77,479	79,341	82,973	3,632	4.6
· 기타공공기관	82,941	86,653	88,792	92,930	97,066	4,136	4.5

②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

	'12	'13	'14	'15(A)	'16(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16,662	17,483	17,744	19,161	21,016	1,855	9.7
· 공기업	4,792	4,800	4,793	5,201	5,633	431	8.3
· 준정부기관	3,955	4,036	5,073	4,903	5,878	975	19.9
· 기타공공기관	7,915	8,647	7,877	9,056	9,506	449	5.0

③ 비정규직 현황

(단위: 명, %)

	'12	'13	'14	'15(A)	'16(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45,318	44,107	43,597	41,781	36,499	△5,282	△12.6
· 공기업	10,928	10,363	11,292	11,103	6,635	△4,469	△40.2
· 준정부기관	8,689	8,678	7,967	7,118	5,736	△1,382	△19.4
· 기타공공기관	25,701	25,066	24,339	23,560	24,129	569	2.4

④ 육아휴직 사용자 수

(단위: 명, %)

	'12	'13	'14	'15(A)	'16(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7,192	8,089	9,596	11,097	12,215	1,118	10.1
· 공기업	1,717	1,982	2,287	2,489	2,619	130	5.2
· 준정부기관	2,509	2,792	3,273	3,784	4,239	455	12.0
· 기타공공기관	2,966	3,315	4,036	4,824	5,357	533	11.0

⑤ 재무현황

〈부채규모〉

(단위: 조원)

구분	'12	'13	전년 증감	'14	전년 증감	'15	전년 증감	'16	전년 증감
◇ 합계	496.1	520.4	24.4	519.9	△0.5	504.8	△15.1	499.4	△5.4
(명목 GDP 대비)	36%	36%	-	35%	△1%p	32%	△3%p	30%	△2%p
· 공기업	353.2	373.7	20.6	377.1	3.4	365.0	△12.1	362.6	△2.4
· 준정부기관	131.2	135.1	3.9	130.4	△4.7	125.1	△5.2	122.3	△2.9
· 기타공공기관	11.7	11.6	△0.1	12.4	0.8	14.7	2.3	14.5	△0.2
▶ 중장기재무관리	474.0	498.8	24.7	497.2	△1.6	480.3	△16.9	474.9	△5.4

〈부채비율〉

(단위: %)

구분	'12	'13	전년 증감	'14	전년 증감	'15	전년 증감	'16	전년 증감
◇ 합계	220	217	△3%p	201	△16%p	183	△19%p	167	△16%p
· 공기업	207	214	7%p	207	△7%p	194	△13%p	183	△11%p
· 준정부기관	335	283	△53%p	228	△55%p	184	△44%p	153	△31%p
· 기타공공기관	72	65	△7%p	65	△0%p	73	8%p	67	△6%p
▶ 중장기재무관리	235	233	△2%p	216	△18%p	194	△21%p	177	△17%p

〈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구분	'12	'13	전년 증감	'14	전년 증감	'15	전년 증감	'16	전년 증감
◇ 합계	△1.8	5.3	7.1	11.4	6.1	12.5	1.1	16.1	3.6
· 공기업	△3.4	△2.4	1.0	4.0	6.4	4.6	0.6	8.6	4.1
· 준정부기관	1.4	7.8	6.4	7.3	△0.5	7.9	0.5	6.9	△0.9
· 기타공공기관	0.3	△0.1	△0.4	0.1	0.2	0.1	0.0	0.6	0.5
▶ 중장기재무관리	△2.4	4.9	7.2	10.7	5.8	11.8	1.1	15.0	3.2

주: (회계기준) 공무원연금, 신보 등 일부 공공기관은 국가회계기준 적용으로 당기순이익이 산출되지 아니하고 재정운영결과가 산출되어 상기 수치에서 제외

⑥ 총 복리후생비

(단위: 억원, %)

	'12	'13	'14	'15(A)	'16(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9,665	9,429	7,475	7,853	8,026	173	2.2
· 공기업	5,044	4,730	3,130	3,598	3,613	15	0.4
· 준정부기관	1,925	1,906	1,777	1,779	1,819	40	2.3
· 기타공공기관	2,696	2,793	2,568	2,476	2,593	118	4.7

2016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개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였음

(목적)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

-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과 경영효율성 향상 및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
- 기관장·상임감사 평가는 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감사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대상) 기관평가는 119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29개, 상임 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 실적평가는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활용)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인사 조치, 차년도 예산반영 등을 추진

- 성과급을 종합등급뿐 아니라 범주별 등급도 연계하여 지급함
-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의결함
- 종합등급 '미흡(D)'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상경비를 조정함

- (특징) 올해는 경영평가단 외의 기관장평가위원회와 감사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였고, 종합등급뿐 아니라 범주별 평가도 실시하였으며,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함

(위원회 별도 구성) 경영평가단 외에 기관장평가위원회, 감사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 경영평가단은 109명이며, 기관장평가위원회와 감사평가위원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하였음

(범주별 평가 실시) 기존의 종합등급뿐 아니라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으로 나눈 범주별 평가를 실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성과급을 지급함

- 종합등급 또는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에 성과급을 지급함

(성과연봉제 항목 제외) 경영평가 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는 제외하고, 평가 제외로 인하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함

- 성과연봉제 경영평가 평가항목 제외는 '17. 6. 16일 공공기관운영회에서 의결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⁰¹을 통해 결정되었음

■ (결과)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총 119개 종합등급이 우수(A)인 기관은 16개이고,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등급 이하는 17개임

(종합등급)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우수(A)등급은 16개 기관(13.4%)이고 미흡(D)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17개(14.3%)임

〈표 1〉 연도별 경영평가 등급 분포

(단위: 개, ()는 %)

구분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계
'12년	-	16(14.4)	40(36.0)	39(35.1)	9(8.1)	7(6.3)	111
'13년	-	2(1.7)	39(33.3)	46(39.3)	19(16.2)	11(9.4)	117
'14년	-	15(12.9)	51(44.0)	35(30.2)	9(7.8)	6(5.1)	116
'15년	-	20(17.2)	53(45.7)	30(25.9)	9(7.8)	4(3.4)	116
'16년	-	16(13.4)	48(40.4)	38(31.9)	13(10.9)	4(3.4)	119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6.16)

01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17.6.16)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확정」에서 확인할 수 있음

(범주별 등급)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19개 기관이 우수(A)등급을 받았고, 주요사업 부문에서는 20개 기관이 우수(A)등급을 받았음

〈표 2〉 2016년도 범주별 등급 분포

(단위:개, ()는 %)

구분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계
종합등급	-	16	48	38	13	4	119
경영관리	-	19	48	35	11	6	119
주요사업	-	20	43	38	13	5	119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6.16.)

- (후속조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인사조치, 차년도 예산반영 등을 추진함

(성과급 지급) 성과급을 종합등급뿐만 아니라 범주별 등급도 연계하여 지급할 예정⁰²

 - 종합등급 또는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114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등급별·유형별로 차등하여 지급함
 - 성과급 지급 가중치는 종합등급 50%, 경영관리 25%, 주요사업 25%로 함

(인사조치)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24명)에 대한 경고조치를 의결함

 - 기관평가 종합등급 미흡(D) 이하인 17개 기관장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해 경고조치함
 - 기관평가 종합등급 미흡(D) 이하인 기관의 상임이사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8개 기관의 상임이사 15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함

(경영개선 점검) 종합등급 미흡(D)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함

(예산상 조치) 종합등급 미흡(D)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함

- (기관장·감사평가) 임기 중 1회 실시하게 되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상임감

⁰² 이와 관련해 자세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등급별 성과급 지급률은 [붙임 6]을 참고

사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함
 (평가대상) '16년말 기준으로 기관장 평가는 임용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고 감사 평가는 임용된 지 6개월 이상인 상임감사를 대상으로 함
 (기관장) 기관장 평가 대상 총 29명 중 우수는 3명(10.3%), 보통은 24명(82.8%), 미흡은 2명(6.9%)임
 (감사) 감사 평가대상 총 24명 중 우수는 1명(4.2%), 보통은 21명(87.5%), 미흡은 2명(8.3%)임

출 처

-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 2017.6.16.
http://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09527&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6.19.
-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확정」 2017.6.16.
http://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09527&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6.19.
- 기획재정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 2016.6.16.
http://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04199&menuNo=4010100
 검색일자: 2017.6.19.

* 본 동향은 해당 기사의 내용을 가공하여 재생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6년 경영실적 평가결과(공기업)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A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조폐공사 (4)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주)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6)
B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15)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13)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9)
C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5)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10)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12)
D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5)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2)	부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2)
E	대한석탄공사 (1)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	대한석탄공사 (1)

붙임 2

2016년 경영실적 평가결과(준정부-강소형 제외)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A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3)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7)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16)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16)
C	신용보증기금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 (9)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9)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7)
D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	기술보증기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교통안전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4)
E	한국무역보험공사 (1)	한국무역보험공사 (1)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2)

2016년 경영실적 평가결과(준정부-강소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A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9)	사회보장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1)
B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1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18)

등급	총 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C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립생태원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국제방송교류재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독립기념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고용정보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4)	(16)	(19)	
D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	(5)	(7)	
E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원	한국전력거래소
	(2)	한국지식재산전략원 (3)	(2)

붙임 4

기관장평가 결과

등급	공기업(4명)	준정부기관(25명)	강소형기관(15명)
우수 (3명)	해양환경관리공단 (1)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2)	
보통 (24명)	울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8)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독립기념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13)
미흡 (2명)			시청자미디어재단 영화진흥위원회 (2)

붙임 5

감사평가 결과

등급	공기업(9명)	준정부기관(15명)	강소형기관(3명)
우수(1명)		한국자산관리공사 (1)	
보통 (21명)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8)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1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연구재단 (2)
미흡(2명)	대한석탄공사 (1)		한국장학재단 (1)

붙임 6

성과급 지급률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단위: %)

구분		S	A	B	C	D-E
기관장	총 합	60	48	36	24	-
	경영관리	30	24	18	12	-
	주요사업	30	24	18	12	-
상임임원	총 합	50	40	30	20	-
	경영관리	25	20	15	10	-
	주요사업	25	20	15	10	-
직원	총 합	125	100	75	50	-
	경영관리	62.5	50	37.5	25	-
	주요사업	62.5	50	37.5	25	-
투자기관직원	총 합	150	120	90	60	-
	경영관리	75	60	45	30	-
	주요사업	75	60	45	30	-

* 기준: (기관장·상임임원) '16년도 기본연봉, (직원) '16년도 월기본급 및 기준월봉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단위: %)

구분		S	A	B	C	D-E
기관장상임임원	총 합	30	24	18	12	-
	경영관리	15	12	9	6	-
	주요사업	15	12	9	6	-
직원	총 합	50	40	30	20	-
	경영관리	25	20	15	10	-
	주요사업	25	20	15	10	-

* 기준: (기관장·상임임원) '16년도 기본연봉, (직원) '16년도 월기본급 및 기준월봉



소통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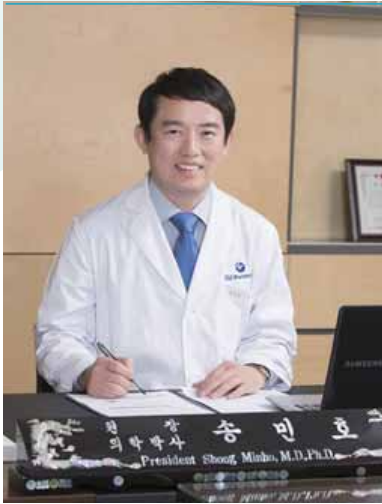
기관장 인터뷰

충남대학교병원 | 송민호 원장

전문가 좌담회

공공기관 통합공시 발전방향

05



경쟁력 있는 병원, 환자중심의 병원, 특성화된 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송민호 원장 | 충남대학교병원

■ 일시

2017. 6. 1

■ 장소

충남대학교병원 행정동 원장실
(대전시 중구 소재)

■ 진행

조임곤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정리

강석훈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지원

정예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학력

- 1980. 충남고등학교 졸업
- 1986.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학사
- 1989. 충남대학교 대학원 내과학 석사
- 1998. 충남대학교 대학원 내과학 박사

■ 경력

- 1986. 03. ~ 1990. 02. 충남대학교 전공의
- 1990. 03. ~ 1992. 02.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강사
- 1994. 09. ~ 1996. 08. 미국국립보건원(NIDDK/NIH) 연구원
- 2004. 04. ~ 현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수
- 2006. 06. ~ 2008. 03. 충남대학교 보건진료소장
- 2010. 05. ~ 2015. 03. 충남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질환특성화연구센터장
- 2011. 03. ~ 2012. 12.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 2013. 01. ~ 2015. 11.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 2015. 01. ~ 2015. 11.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 2016. 11. ~ 현재 제22대 충남대학교병원장(법인 8대)

금번 [기관장인터뷰(제54호)]에서는 충남대학교병원 송민호 원장과의 인터뷰를 담았음

Q. 올해로 개원 45주년을 맞은 충남대학교병원의 기능, 역할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충남대학교병원은 1972년 7월 1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개원하여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거 1995년 8월 21일 법인화되었다. 올해로 개원 45주년을 맞이한 우리 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및 정관에 의하여 의학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사업 중 하나인 교육사업은 의학계 학생, 전공의, 의료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충남대학교 외에도 타 대학 및 관련기관과의 MOU를 통해 실습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남대학교 실습생, 의뢰 실습생, 기타 임상교육 실습생을 포함하여 2014년 2,540명, 2015년 2,957명, 2016년 3,103명 등 매년 실습생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및 해외학회 참석 지원 등 수련환경 개선 및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전공의 수련의 질적 향상, 내부직원에 대한 경력별 생애주기 교육 활성화로 지역사회 의 거점병원으로서 현재 및 미래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의학계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생명융합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진료분야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협력연구 수행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융합적 중개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충청권 최초 임상시험 등 종사자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세계보건기구 WHO SIDCER(Strategic Initiative for Developing Capacity in Ethical Review) 산하에 아시아 서태평양지역 국가에서 실시되는 임상연구의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적인 IRB 연합기구(이하 FERCAP : Forum for Ethical Review Committees in Asia and the Western Pacific, 아시아-서태평양 윤리위원회 연합포럼)의 재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산·학·연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연구활동 수행 및 학술교류를 위하여 공동 연구지원 시스템(설명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진료사업의 경우는 우리 병원은 24개 진료과를 운영하며 2016년 기준 일평균 외래환자

3,575명, 일평균 재원환자 1,131.2명을 진료하였고 현재 1,318개의 허가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전권역응급의료센터, 대전지역암센터, 대전지역노인보건의료센터, 대전·충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센터까지 총 6개의 특성화센터가 있어 환자의 질환별 맞춤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현재 세종시 내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의원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5명의 전문의를 배치하여 24시간 순환근무를 하며 하루 평균 20여명을 응급치치하고 있으며, 세종시의 시립의원,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광역치매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기적으로 세종시민을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하며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개원 전 세종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전담부서로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을 두고 노숙인 무료 진료,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 농촌사랑 의료봉사, 해외 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 의료원과의 협약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교육 및 공동사업 개발, 암 예방 및 홍보·교육 사업 지원, 심뇌혈관질환 관리 및 예방관리 사업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력지원 및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건강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지방의료원 의뢰환자까지 포함하여 충청 권역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환자 조기발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이러한 주요사업별 활동을 통하여 충남대학교병원은 생명존중의 이념으로 최상의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하여 참의료를 구현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행복에 헌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충남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대전권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며, “대장암 적정성 평가(심사평가원)”1등급, “유전자 검사기관 정확도 평가(보건복지부)” A등급을 받는 등 선진종합병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들었다. 의료기관으로서 충남대학교병원의 강점은 무엇이며, 올해 중점추진사항은 무엇인가?

A.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병원은 대전지역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으로 반세기 동안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오고 있다. 우수한 의료진과 축적된 노하우, 첨단 의료장비 및 특성화된 각종 센터(대전권역응급의료센터, 대전지역암센터, 노인보건의료센터, 관절염센터, 재활센터 등)가 우리 병원의 강점이다. 또한 대장암 적정성평가 외에도 위암, 유방암, 폐암 적정성평가,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등 거의 전 진료영역에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한신장학회가 주관하는 인공신장실 인증평가에서도 우수인증을 받았다.

간호서비스 측면에서도 중환자실, 감염관리, 응급센터 1등급, 일반병동에서는 2등급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조기대응팀 시스템을 도입하여 악화될 위험, 징후 등이 있는 입원환자에 대한 스크리닝을 통해 조기에 적절한 처치를 하고 응급상황 시 기도관리, 기관삽관 등 술기 지원, 병동 교육 및 상담을 통해 환자의 심폐부전 예방 및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대전·충남지역의 메르스 확진환자 총 14명을 치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단 1건의 원내감염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신종감염병에 대한 견고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신종감염병 이송 전담팀 운영 및 교육, 권역응급의료센터 완전 음압 격리병상을 구축하였으며, 기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도 1인 음압병상 확충사업 진행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선제적인 감염예방 관리를 위해 지난해 감염관리 의사 5명과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10명을 배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감염관리 인프라 1등급을 구축하여 감염위험에서 더욱 안전한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도 자만하지 않고 착실히 준비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더불어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하여 올해 6월까지 병동별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여 RF ID카드(의료진) 또는 바코드 출입증(환자 및 보호자)으로 승인을 받아 출입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반 병문안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구축 사업 수행 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전·세종·충청 권역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간 상호 원활한 협력을 통한 지역의료 상생과 발전 노력으로 환자에게 의료기관 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을 강화

하고 불편 해소 및 의료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원의 가장 큰 현안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2019년 개원으로 지난 2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충남대병원 건립 지원 특별팀(T/F)’를 구성해 공동추진을 시작하였고, 4월에는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현재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충남대학교병원은
대전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우수한 의료진과 축적된 노하우, 첨단 의료장비 및 특성화된
각종 센터가 장점이며,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2019년 개원을
통해 병원의 저변이 확대될 것이다.**

”

이외에도 진료각과 및 센터에 병원정보 접근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진료각과의 진료 영역 및 수준은 각과(센터) 의사의 전문적 역량에 기반한다. 과별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잣대로 각과의 경영목표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각과가 주체적으로 발전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병원정보 접근성의 확대 및 활동원가 분석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올해에는 우선 활동원가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분원시스템을 갖게 될 우리 병원이 병원별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미리 도입해야 할 제도라서 이번 기회에 잘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지능형병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사업 신청을 준비하는 등 4차 산업혁명과 의료환경을 주제로 한 정부주도의 연구과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Smart Hospital을 실현하고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Q. 충남대학교병원은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2015년 경영실적 평가” B등급, “2016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A등급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을 받았다. 고객중심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강점,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청렴정책추진 전담TF를 구성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을 초청하여 청렴계약 실천 서약식을 개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반부패 모범사례를 많이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3등급이 향상된 1등급이라는 우수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병원에 있어 고객중심경영은 여러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자안전이다. 기존에도 환자안전 교육 및 안전라운딩 활동이 있었지만 ‘환자안전지킴이’를 34명에서 61명으로 확대 지정하여 진료각과 및 각 병동에서 환자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의료질 향상위원회를 통해 안전한 항암치료를 위한 항암지정병동 운영, DVT 예방 가이드 마련, CP 활성화를 위한 다학제 CP 지원 TF팀 운영 등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 병원에서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TF팀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다. 외래 진료 PIT팀 활동을 통해 병동 회진시간 안내 사인보드 부착, 의료진 진료개시 시각 문자 전송, 외래 대기 전광판에 진료지연 상황 표출, 외래 무인수납기 추가 배치 등을 실시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환경개선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조사(PCSI)에서 전년도 91.7점에서 95.5점으로 향상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기존에는 이러한 고객만족활동을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며 추진하여 통일된 추진체계가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 병원장 직속의 의료혁신실을 신설하여 하부조직으로 의료혁신팀과 고객만족팀을 두어 의료 질 향상과 고객만족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한다.

Q. 금년 4월 25일 세종충남대병원을 착공하였다.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세종시의 첫 종합 병원이 될 세종충남대병원 개원을 위한 준비상황과 인력확충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세종의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난해 11월 병원장에 취임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세종새병원 건립을 전담하는 부서인 세종충남대학교병원건립단 확대이다. 건립단은 세종시의 현재 인구구조와 앞으로 예상되는 구조, 개원 이후 최초 5년 등 주기별로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인력과 장비는 병원의 운영과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현재 큰 틀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여러 측면의 타당성검토와 구성원들의 협의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세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진료에 있어서 개원 초기부터 본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종시가 영·유아 비중이 높다는 특성, 정주환경에서 여성·가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여성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그 병원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런 점에서 소아청소년센터, 여성센터와 함께 응급의료센터와 심뇌혈관센터를 개원 초기부터 풀 버전(full version)으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계획이다. 암과 만성적 질환 등은 인프라가 풍부한 본원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의원은 세종시 출범 이듬해인 2013년 3월 18일에 개원하였다. 당시부터 현재까지 의료기반이 취약한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24시간, 365일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세종의원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 전까지 세종시민에게 1차 진료 및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지난 2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결하고, 세종의원 전담 전문의 5명을 임용하였다. 이후 환자 증가, 만족도 향상 등 의료서비스 여건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도 10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진료,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시 치료나 이송을 시행하고, 대형 재난재해 발생 시 본원 대전권역응급의료센터를 거점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Q. 병원장님께서 한국형 CIMT 구현의 최적으로 주장하신 대전·세종 보건의료 클러스터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우리 병원의 세종시 진출에 대한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우리 병원은 현재까지 권역별 특성화센터를 많이 유치하며 규모의 성장을 해왔지만 의료서비스는 균질화되지 않았고, 앞으로 충남대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 당진 송악지구에 제2병원 건립을 추진해온 상태에서 세종시 역시 건설 초기부터 분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당진의 경우 개발사업의 사업자 미선정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세종시는 공식 출범과 함께 정부부처들이 속속 입주하는 등 정주환경 조성속도가 빨랐다. 이에 당진 제2병원 건립은 도시개발 정도에 맞춰 진행할 필요가 있고 세종시는 충청권 발전과 우리 병원의 발전을 위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병원 구성원 간에 형성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세종시의 정주환경이 좋아진다는 점도 있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심 역할을 할 의료기관이 한 군데가 있어야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재검토 끝에 국가개발사업의 추진과 병원의 장기적 발전전략 차원에서 세종시와 당진 분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세종시 선진출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진 제2병원을 위해 노력하시던 충남도 및 당진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느라 어려웠다.

이렇게 결정된 세종충남대병원에서는 우선 시기적으로 먼저 세종시민이 원하는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겠지만 의료산업화를 일궈낼 현장

Innovation Research Center로서 오송, 오창, 대덕밸리를 잇는 Research Base와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R&D는 미래성장 동력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사업, 임상시험 관련 중개연구사업 등에서 품목허가 및 임상시험 취득 지원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업화가 5%에 불과하고 인허가 등이 국내 시장에 국한돼 이뤄졌다는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한국형 CIMIT는 연구제안에서부터 과제선정, 개발, 진행,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사자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우수한 아이디어가 성공적 비즈니스로 연계되도록 할 수 있는 체계로 앞서 말씀드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임상현장에서의 아이디어를 학교, 연구소, 기업이 연계해 활발한 중개·임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실제 사업화 비율을 높여 투자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신기술 개발과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미래성장 동력의 요람을 만드는 것이다.

대전·세종은 이러한 모든 당사자가 지리적으로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다. 국가 과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초과학연구원, 대학, 카이스트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연구소 및 벤처·중소기업들은 상급종합병원과 단기간 내 임상적용을 목표로 하는 연구 인프라 혹은 프로그램을 구축해 보건의료 R&D의 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자발적 노력들을 이미 하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허법원 등 클러스터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과 제도적인 여건 조성도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함에도 현재 이 지역 30km 안에 Clinical Research Center가 없다. 한국형 CIMIT 구현의 최적지로 대전, 세종에 보건의료 클러스터가 구축되어야 할 이유이다.

Q. 병원장님은 1986년 충남대학교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내과 전문의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강사, 충남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장,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시고 제22대 충남대병원장에 임명되셨다. 동 대학 의사 출신으로서 병원장님의 경영철학과 미래 비전이 궁금하다.

A. 사실 저는 내분비대사내과 의사이고, 병원에서는 내분비대사내과장과 충남대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을 거쳐 교수의 신분으로 경영자가 되었다.

처음 병원,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될 때에는 같은 분야의 경쟁자들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설정하고 나름대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저의 전문분야를 많은 환자를 보는 것 대신 질병의 원인과 기초에 집중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교수생활을 하며 정부수주연구비 264억원을 받아 연구에 집중하며 국내·외, 교내·외를 가리지 않는 학문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충남대병원의 브랜드파워가 1등이 안되면, 충남대병원 교수가 어디에 가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향하는 브랜드파워에서 1등을 유지하는 방법을 몸으로 체득하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내 비전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를 생각해왔다.

그래서 병원장을 처음 맡았을 때 너무 어려웠다. 충남대 출신이라 출신 이기주의적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1등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병원이 해야 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브랜드파워를 유지해 나갈 것이냐를 생각했고 병원장 공모 당시 경영계획서를 쓰며 6가지 아이템을 생각했다.

먼저, 선도적인 국립대병원 모델로의 혁신이다. 여기서 선도적 모델이라 함은 수익적인 면이 아닌 의료의 질적 개선에 관한 선도이다. 특히, 암과 심장질환, 퇴행성질환에서 질적 개선이 일어나야 한다. 암에 대한 질적 수준이 높아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발전과의 접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는, 미래의료에 대한 교육이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조직, 기계, 시스템 모든 것이 새로 들어가야 되는 곳으로 기술발전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세종충남대병원을 테스트 베드로 하려고 한다. 특히 미래의학을 주도하기 위한 내부보상시스템 마련에 관심이 있다. 그동안 보상시스템은 개인 능력 위주, 이를 테면 의사 개인이 환자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를 기준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다보니 개인의 실적에 대한 보상은 되는데 팀웍 형성이 어려웠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필요한데, 협업문화가 굉장히 약하다. 의사 개인의 수익 증가가 질병의 해결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폐암환자를 많이 본 것과 잘 해결한 것은 분명히 다른 것으로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에 대한 보상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병원경영에 기여하는 연구혁신에 관한 것이다. 대전은 연구브랜드가 굉장히 강하다. 제가 실제 연구를 하면서 연구단지를 봤을 때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는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항상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지향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약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성공하면 정말 좋지만 직접 투자 시 10년 내 10개가 나올까 말까 한다. 저는 그것보다는 수익이 낮더라도 성공모델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서로 융합하여야 한다.

제가 병원장 취임 후 처음 3개월 간 카이스트,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6개 기관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눈 것도 이러한 부분이다. 그간 너무 하이리스크-하이리턴, 과제지향적이다 보니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도 성공요소를 평가하기 어려웠고, 병원 교수들은 임상분야에서 늘 일을 하는데 너무 높은데서 일을 하다 보니 현장 적응성이 떨어진다는 점, 연구 분야에서는 현장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현장의 일을 모르다보니 비전문 제시하는 수준임을 논의하였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산업 발전과 연관된 아이템 리스트를 받아 병원의 리스트와 연계하는 기관 간 커플링 작업을 실시하였다. 현재 제일 커플링이 잘 된 곳이 한국기계연구원이다. 현재 연구원 측 아이템 3개와 병원 아이템 3개를 매칭시키고 한국기계연구원의 담당연구원과 병원의 교수를 연결한 상태이다.

과거 병원의 연구는 교수가 이런이런 연구를 하겠다고 제안하면 심사를 해서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비는 얼마 주지 않으면서 논문을 냈느냐 안 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연구결과는 나왔지만 그저 결과보고서에 머무르는 것에서 끝나게 되는 상호작용이 없는 연구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연구에 관하여 서로 상호교류한 내용만 있어도 연구물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연구자들끼리 만나서 논의를 하고 협업을 하는 지속적 활동만 증빙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병원은 그런 연구의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과제의 커플링을 통해 학문적 분야의 연구가 의료현장에서 실현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병원은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네 번째, 공공의료 역시 국립대병원으로서 실현해야 할 중요과제이다. 우리 병원에서는

약 19개 부서에서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의료가 단순히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적 시혜였는데, 이 역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나 단순히 그것만을 공공의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시행하는 전 진료영역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병원에는 대전권역응급의료센터, 대전·충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좋은 인프라가 있고 그 덕분에 우리 병원 주변은 경제력은 낮은 지역이지만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은 가장 낮다.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제일 높은 곳은 안타깝게도 세종시, 조치원이다. 그래서 우리 병원 공공보건의료의 추진방향은 공공의료네트워크의 체계화이다. 공주, 홍성, 서산, 천안의료원 다 있지만 거의 시혜계층에 대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진료경험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 상급병원의 기술, 진찰, 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 전에 충남도청과 업무협의를 한 내용도 이런 안심네트워크를 상급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간 형성하자는 것이다. 상급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이 모두 그저 시혜계층에 대한 의료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체계적인 공공의료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의료원과의 협약, 협업을 위해서는 도청 등 다른 지자체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중요하다. 이미 우리 병원은 대한공공의학회 충청지회를 창립하여 보건소를 포함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섯 번째, 사회적으로 의료기부를 확대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병원에 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돈을 버는 기관에 왜 기부를 하나?' 하는 생각으로 고려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공의료서비스, 진료프로세스 개선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의료프로그램 중 인공와우 이식 프로그램이 있는데 세종시 베어트리파크 이선용 대표님은 인공와우 관련 프로그램에 기부를 하시며 노인과 난청환자 치료를 요청하셨고,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기부를 하시는 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를 위해 기부하시는 분도 있다.

우리는 재능을 기부하고, 후원자분들은 재원을 기부하여 함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에서 연탄과 다른 물품을 기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회성이 아닌 문제해결의 의료봉사를 위한 구

체적 아이টে을 개발하는 것은 더욱 가치가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진료정보교류의 확대이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이지만 진료정보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 개인병원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에 올 때 진료정보 미연계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환자를 의뢰하는 의사가 성의가 있으면 상세하게 그간의 진료내용을 다 써 주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단명만 써주는 경우도 있다. 진료정보 일체가 공유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건 상급종합병원이 회송할 때도 마찬가지다. 즉, 담당의사의 성의 정도에 따라 진료정보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자, 환자가 옮긴 병원에서 동일한 검사를 또 할 필요가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진료정보교류 사업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이고 우리 병원이 대전, 세종 권역의 진료정보교류사업을 모범적으로 시행하며 거점병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Q. 새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국공립어린이재활병원·감염전문병원 설치,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 의료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충남대학교병원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목표로 하는 새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치매국가책임제’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치매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보험혜택, 치매지원센터 증설, 국공립요양시설 확대 등의 핵심사항으로 구성되고, 새 정부는 정책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자원 마련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과 경제를 위협하는 중요한 질환이고, 유병인구가 70만명을 상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병원은 2013년 10월 대전광역치매센터를 개소하여 선제적으로 치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일정부분 감당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충남대학교병원은 대전·충남·세종 권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최고수준의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역 차원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의료인력 교육·훈련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 관리사업, 응급의료 서비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노인건강 관리사업, 치매 예방관리 사업,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 등 다양한 전문질환센터를 갖추고 있어 의료안전망 기능과 질병 관리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보장과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뿐만 아니라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안전망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의료문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미혼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주민, 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기타 저소득층들에게 정부지원 또는 민간후원기관의 의료비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 대상자 등 현재까지 2천여명의 환자에게 45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노숙인지원단체, 충남지역 4개(공주, 서산, 홍성, 천안) 지방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에는 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보건·의료·복지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취약계층, 중증질환 분포 등을 매핑(mapping)기법을 통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병원별·권역별 공동수행을 지원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취약계층까지 연결하는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진료소-보건지소-보건소, 지방의료원, 1차병원-대학병원을 조정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원내 내부직원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공감 및 자긍심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인식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의 공공보건의료 역량개발을 위하여 대한공공의학회 충청지회와 협력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든든한 공공보건의료”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Q. 또한, 새 정부는 공공부문 8만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제로화 및 처우개선 등 공공 기관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다. 2017년 1/4분기를 기준으로, 현재 충남대학교병원은 정규직 1938명 대비 무기계약직 421명과 비정규직 399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의 평균연봉 2,724만원은 국립대병원 중 최저 수준이다.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충남대학교병원의 고용대책과 함께, 기관이 찾는 인재상과 채용제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가 '비정규직 제로화' 인데, 어려운 점이 비정규직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노조 측 주장은 우리 병원의 비정규직이 25%라고 하는데, 무기계약직 포함 여부에 따라 15% 정도 될 것이다. 우리 병원은 아시다시피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하나는 정부시책에 따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규제의 완화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기관은 고용창출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지금도 용역직원을 제외하고 2,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금의 저수가 체계화에서는 늘어날 재원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수가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전 분야에서 대두되며 병원 안팎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 우리 병원은 내부적으로도 국립대병원 선진화 모델 구축 등 진료역량 극대화를 위한 체질 변화 시기에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병원에 맞는 인재상을 정립할 필요성을 느껴 올해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재상을 결정하였다. 첫째, 인간애와 최고의 실력을 겸비하여 생명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인재(가치인), 둘째, 꿈과 열정으로 미래의료에 도전하는 인재(도전인), 셋째, 배려와 진정성으로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인재(성실인), 넷째, 존중과 공감으로 조직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인재(협력인)의 면모를 갖춘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해 미래의료에 도전하는 열정적인 인재'가 충남대병원의 인재상으로, 채용·교육·인사관리 전반에 활용된다.

“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설정한
충남대학교병원의 인재상은 가치인, 도전인, 성실인
그리고 협력인이다!

”

현재 내부 인력현황 및 계획에 따라 병원 자체 채용공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채용 전형
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은 공통과목(영어) 외 직종별 과목을 자체시험을 보고 있지만 공공
기관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한 채용을 의무화한 만큼 우리 병원도
현재 NCS 기반 채용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

100세 고령화시대, 의료기기 발전, 인공지능(AI)치료 상용화 등 국내외적으로 의료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의료에 영향을 끼치는 메가트렌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GDP 성장속도의 둔화이다.

둘째는, 노령화이다. 노령화에 대한 대책은 양날의 칼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노령화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약해질 것
이기 때문에 현재 관련 정책의 규모를 너무 넓혀놓으면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
이 있다.

셋째는, 기술의 변화로 의료영역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과거에는
의료기술 안에서의 기술의 변화로 의료분야의 혁신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CT, MRI가 발달해서, 카테터가 좋아져서 의료기술의 혁신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의료분야
바깥의 기술이 안에 있는 의료기술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기술혁신
이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혁명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것이고 로봇기술이 의료분야로 들어오고 커넥티비
티(Connectivity)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환자-의사 뿐 아니라 병원-병원, 도시-병원 간
연계성이 강화될 것이다.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전향적인 태도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여야 한다. 실제 최근 국내 일부 대형병원은 IBM 왓슨을 도입하여 암 진단에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IBM 왓슨은 자연어를 포함하여 검색 시 적절한 치료법을 추천해주는 것으로 가장 초보적인 인공지능 형태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스스로 학습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 내는' 완성형 인공지능 인프라를 국내기업과 함께 만들어어나가는 것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Q.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공공기관 기관장의 한 분으로서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된 제언이나,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충남대학교병원은 기타공공기관이자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병원 경영은 이미 대부분 규제하에 있어서 과거 타 기관처럼 경영평가를 세계 받지 않았다. 현장실사까지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솔직히 경영평가에 대한 노하우가 아직 약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경영평가가 가져온 좋은 효과도 있고, 순기능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병원 문화로 자리잡지는 못한 것 같다.

그리고 경영평가에서의 우수한 성적이 의료브랜드의 질로써 선전되는 것은 좀 막아야 하지 않나 싶다. 경영평가에서 1등을 했다고 그게 의료 질에서의 1등으로 알려지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의료의 질과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공공의료에서의 역할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 그런지 국립대병원에 대한 기대가 남달라 보여 새로운 정부의 경영평가는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이 많다.

병원장으로서 교육, 연구, 진료, 사회공헌 전 분야에서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료정책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고 하여 과학기술계를 뿌리째 뒤흔들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의료계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금번 정부에서 국립대병원에 가지고 있는 기대에 아직은 대체적으로 공감하나 결국 시행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고 본다.



충남대학교병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교육부		기타공공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1599-7123 / www.cnuh.co.kr)		()	송민호 (2016.11.10.~2019.11.9)
('15)	납입자본금	주주 구성		
		정부	공공기관	기타
	-	-	-	-
	•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제5조			1972.7월
	• 고등교육법에 다른 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유능한 의료요원을 양성하고, 의학발전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07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개원 • '84.10월 충남대학교병원 신축 이전 개원 • '95.08월 법인 충남대학교병원으로 전환 • '13.03월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의원 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대학교 의학·간호학·약학 등의 학생 임상교육 •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 의학계 관련 연구 • 임상연구 • 진료사업 • 연구개발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 기타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공공기관 통합공시 발전방향

※ (편집자 주) 본 좌담회 원고 내용은 참석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각 참석자 소속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일자 2017. 6. 9.

장소 프리미엄 라운지 다이아몬드룸

사회 하세정 KPF 공공기관연구센터 경영연구팀장

참석자 김수영(인천항만공사 기획조정실 주임)
(가나다순) 윤진수(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정의범(한국철도공사 인재경영실 과장)
최대식(선진노무법인 대표)

정리 박성훈 K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하 세 정(사회자)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경영연구팀장

본 좌담회에서는 공공기관 통합공시 발전방향을 주제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통합공시는 2007년 27개 항목으로 시작하여 현재 40개 항목까지 정보공개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다. 통합공시가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우수사례로 꼽힐만큼 잘 발전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0년간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해온만큼 이제는 정보로서의 가치 제고, 효율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이번 좌담회에서는 공공기관 통합공시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최 대 식

선진노무법인 대표

통합공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공시는 경영공시와 통합공시로 나뉘는데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통합공시는 이 중에서 전체 공공기관에 있어 주요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합공시 운영방식이 이러한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제

가 보기에는 경영공시와 통합공시가 개념과 실질에 있어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통합공시의 도입 효과를 보면, 과거 정부에서는 정보의 정확성보다는 공개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효율성과 방만경영 통제, 국민으로부터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정보의 정확성·투명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기초 하에 기획재정부 경영정보과 신설, 인력 충원, 정기적인 공시점검 실시 등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공시정보의 정확성은 상당부분 제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자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공개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대국민 정보 제공인지, 전문가를 위한 것인지, 정부의 관리 목적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상장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를 비교하면 일단 공시행위의 대상에서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공시 정보 이용자가 되는데 이 중 가장 주요한 이용자는 주주와 투자자가 될 것이다. 반면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공시의 내용이나 성격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상장기업 공시에서 중요한 요소는 정확성, 적시성, 형평성, 이용 효율성 등인데 공공기관은 적시성 등의 측면에서는 상장기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경고나 주의 등이 주어지게 되는데, 상장기업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시장 교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공시가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공시규정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주어지게 된다. 공시

되는 정보에 따라 주가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고 이는 투자손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주식시장이 훨씬 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시자료의 보존 측면을 보면 상장기업은 공시정보가 상장시점부터 회사가 존속하는 한 유지되므로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의 과거 자료에 접근하기 용이한데, 공공기관은 과거 5년치에 한정하여 정보를 공시한다는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공기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련 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최근 5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의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정보접근의 용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공시정보의 양적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 경영공시가 상장기업 공시보다 일부는 더 정확하고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이사회 회의록 등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상장기업에서는 단순히 어떤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는 식으로 제한된 내용이 공개되는 반면 공공기관은 논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와 연결되기 때문에 투자내역, 투자계획, 차기 수익예측 등에서 공공기관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통합공시를 보면 정보제공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알리오나 해당 기관의 공시정보 메뉴를 보면 항목들을 각각 확인해야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보다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통합공시의 자료 활용주체는 정부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 국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이 주로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이 주요 관심사라고 판단된다면 매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분기별로 각각의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하여 공공기관의 사업계획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 측면에 대한 공시내용 내실화도 필요하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어떤 사정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자금지원이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 하 세 정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상장기업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것이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궁금하다. 일각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도치 않게 공공기관과 국익에 해가 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윤 진 수

앞서 말씀드린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즉, 조직 내부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없는지 사후적으로라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도 공공기관처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반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일부 공시규정은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경우 10만원 미만의 소액까지 건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의 중요성과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업무추진비는 분기별로 합산하여 공시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

또한 공지사항 등 일부 수시항목의 경우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불필요하게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업무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의 공시항목은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국익이나 민간협상력 차원의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는데 상장기업 등 공공기관은 대부분 독점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시장에서 민간 상장기업과 경쟁할 일이 많지 않다고 본다.

• 최 대 식

이사회나 노사협의회 항목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논의 중인 내용 등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원자료(raw data)를 그대로 올리도록 하고 있어 왜곡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우려가 있다. 예컨대 논의 중인 사항에 불과함에도 마치 확정된 내용으로 잘못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다. 정보공개는 필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공개 범위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 하 세 정

통합공시 사이트 이외에도 나라장터 등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소스들이 존재한다. 정보의 원천이 흩어져 있는 경우 정보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가외성(redundancy) 차원에서 보면 중복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통합공시 사이트에 모아놓으면 일반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상장공기업을 제외하면 민간기업보다는 정보제공의 적시성이 덜 중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금보다는 정보제공의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셨다.

• 윤 진 수

기관이나 기업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상장기업의 경우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 중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해당 정보들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이나 한국거래소의 상장공시시스템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지만 주요한 정보는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상장기업이나 일부 상장공기업을 경우 정보의 공시시점에 따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일부 투자자들이 중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적시성과 정보의 형평성을 통해 정보비대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상장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분초를 다투는 정보가 많지 않으므로 적시 공시에 대한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 측면에서 과도한 업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반드시 수시로 공시할 필요가 없는 정보는 분기·반기 주기로 공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하 세 정

현 공시 항목의 범위나 방식에 대해 기관 입장에서 효율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린다.



정의범

한국철도공사 인재경영실 과장

철도공사는 인원이 약 2만 8천명으로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많다. 이에 비례하여 입찰 건수도 1년에 약 2만건이 넘는데, 매일 담당자가 관련정보를 건별로 공시하고 있다. 현재 ‘나라장터’와 ‘알리오’는 연동이 된 상황이지만 우리는 나라장터 외에도 자체 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알리오와 연동되도록 하려면 예산투입은 물론 보안상으로도 쉽지 않다고 한다. 또한 공사 자체 시스템에서 나라장터로 올리는 입찰건은 알리오로 연동되지 않고 있다. 많을 때는 하루에 약 50건씩 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이트 주소부터 관련 서류까지 건별로 입력하기가 쉽지 않아 담당자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계약건수 대비 담당자 수도 매우 적은 상황이다.

수의계약의 경우 기관이 계약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분명히 알 권리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입찰정보의 경우 알리오에서는 나라장터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만 걸어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은 나라장터나 우리 공사 입찰시스템으로 직접 와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입찰에 참가하지 굳이 알리오를 통하지는 않는 것 같다.

내부감사보고서도 수시공시로서 건별로 모두 올리도록 되어 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기관의 부담도 존재한다. 업무량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지만 조직 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다. 물론 국민들도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하므로 공개는 해야 하지만 수시공시보다는 분기별 공시가 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할 것 같다.

연구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민감한 자료를 그대로 공개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 공사의 경우 분할이 추진된 바 있으며 경쟁자도 등장하여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부담이 되고 있

다. 현재 공시매뉴얼에는 민감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는 비공개할 수 있는 7개 사유가 있지만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데 정부 등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수송수요예측의 경우 사실 이는 우리만 알고 있어야 하는 영업상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판단권한은 기관장에게 있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

• 최 대 식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모든 연구보고서를 성실하게 업로드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아예 올리지 않는 기관도 있다.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하 세 정

업무에 대한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이 맞지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 등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는 접근법이 필요해 보인다. 대중 공개의 사회적 순비용이 클 경우 정보공개청구나 국회의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김 수 영

인천항만공사 기획조정실 주임

인천항만공사는 현원이 약 200명 정도로 소규모 기관이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경영관리 분야에 대한 자료생산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공시자료의 경우 임직원 현황, 급

여, 복리후생 등이 중시되고 있는데 중복적인 내용이 많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내부교육을 하는데 비슷한 내용을 중복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복리후생 관련 항목의 경우 같은 원자료를 가지고 약간씩 다른 기준들을 적용하여 비슷한 자료를 생산한 후 양쪽⁰¹에 올려야 하는 측면이 있다. 공시매뉴얼만으로는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시에 도움받기가 쉽지 않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공시기간은 정해져 있고 의사결정은 빨리 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다.

• 최 대 식

인사·노무, 노사관계 관련 항목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는 항목인데 현업담당자가 바로 작성하기에는 오기의 위험성이 있다. 공시매뉴얼에서 자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 담당자의 부담이 상당하다.

한편 소통의 문제가 있다. 공시기준은 매뉴얼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마련되는데, 짧은 공시기간에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적시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관별 특수성도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응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부족한 듯하다. 사전에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정 의 범

1~2월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통합공시 항목을 결정하여 통보하고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2월 말 정도에 기관 대상 공시기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충분한 소통기회를 가져 안정적인 공시 규칙 등을 마련한 후 4월에 공시를 하면 좋을 것 같다.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공시매뉴얼과 양식이 바뀔 경우 이에 대응하는 기관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 최 대 식

공공기관과 공시 운영자 간의 상시적인 소통창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과 자원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적어도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기회를 만들어

⁰¹ 8번 복리후생비 항목과 40번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

야 한다. 공시매뉴얼의 개선 필요사항을 그 자리에서 바로 논의·정리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면 기관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통합공시제도는 과거에 비하면 매우 발전하였다. 다만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면 공시담당자가 내부 징계를 받게 되어 담당자에게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기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의 안내와 정보제공이 강화되면 좋을 것 같다.

• 정의법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은 존재하는 반면 우수공시 기관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미약하다. 2년 연속 무벌점 기관이 되어야 부총리 표창이 수여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과거에는 무성의하거나, 의도적 불성실 공시도 존재하였으나, 최근에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실수에 의한 오기가 간헐적으로 발생한다. 며칠 밤을 새우면서 자료를 작성하고 여러 번 다시 확인해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를 전혀 하지 않기는 어렵다. 한번은 실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벌칙에 비해 지원과 보상은 미흡한 것 같다.

• 윤진수

공공기관의 경우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에 반영되다 보니 실무자 입장에서는 공시업무가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공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2년간 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상점을 적립하였다가 차후에 공시관련 벌점을 부여받을 경우 누적된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적절한 보상도 함께 주어진다면 공시에 대한 실무자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고, 동기부여도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의법

우리 공사는 기관장이 주기적으로 공시업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공시는 잘해도 칭찬듣기 어려운 반면,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자는 물론 기관도 부담이 커진다. 총괄담당자 입장에서는 공시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 하 세 정

현재와 같은 공시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 담당자를 필두로 한 기관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공시수준이 우수한 두 기관처럼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기관들이 유사한 수준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 최 대 식

작은 기관의 경우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시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타 공공기관 등에 물어봐도 정답인지 확신할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서도 모든 문의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의 관행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교육받을 곳이 부재한 상황이다. 예컨대 노동법을 잘 안다고 해서 반드시 관련 공시를 잘 하는 것은 아닌데 양자를 모두 충족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생각건대 기관에 제공되는 정보공개 가이드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후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제 기관들은 공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다 많은 정보제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1년에 적어도 2회 정도 공시매뉴얼에 대한 해석과 질의응답, 자료작성 및 올리는 과정에서의 기술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의 장이 마련된다면 통합공시제도가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 윤 진 수

상장기업 공시와 관련하여 상장사협의회가 주기적으로 공시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공시교육은 상장사 의무사항으로 업무담당자에 대한 의무이수 교육시간이 설정되어 있다. 상장사협의회는 매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주주총회, 공시 등 상장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하고 있다. 업무담당자는 상장사협의회가 제시한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강하고, 필요시 질의응답도 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질의내용의 경우 협의회가 전문가를 연결하여 주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시내용이 잘못되면 회사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왜곡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공시목적이 단순히 별점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의무교육을 통해 공시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단지 점검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 하 세 정

마지막으로 통합공시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제언과 기관 입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최 대 식

통합공시제도가 체계화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다. 향후 통합공시제도의 발전방향을 생각해 보면 국민의 알 권리라는 통합공시의 기본 목적을 살려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으로부터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다만 일반국민이 해석 가능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일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영공시와 통합공시의 개념 차이가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감시하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고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가? 이 기관은 무엇을 하는 기관이며 이름이 비슷한 다른 기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통합공시의 의미가 될 것이다.

예컨대 경영실적보고서의 주요사업 부문에 제시되어 있는 PDCA(Plan-Do-Check-Act) 등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하면 해당 기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만경영이 지적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보수·복리후생분야 공시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제도·법 준수, 비정규직 전환, 임금·고용안정 등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통합공시는 1차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2차적으로는 전문가집단, 국회, 언론 등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고객별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 범위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복공개는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감한 정보도 문제가 되지만 쓸모없는 정보 역시 문제가 되므로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항목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주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기관 간 비교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윤진수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초에 내놓은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기관이 매년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기관의 경영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공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태 점검과 함께 공시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련 교육을 통해 공시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정의범

기관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은 규정이 개정되거나 공시항목이 추가되면 과거 5년치의 자료를 새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의 원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인력규모가 큰 기관은 2주의 공시기간은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거 5년치 자료를 생성·정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었으면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은 공시자료를 국회 등 외부에 제출하는 공식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어 최대한 완벽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김수영

강화된 공시점검에 발맞추어 기관에서도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그러나 알리오에 상세한 자료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감사원 등에서 계속적으로 비슷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이용자들에게 알리오가 공식적인 자료를 공유하는 창구로 자리매김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는 주체마다 복리후생비나 인건비 등에서 각각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서 기관에서는 각 대상마다 설명하고 자료도 새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급적 기준이 통일되어서 알리오의 정보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도 타 기관의 정보를 통계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리오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 추후 기능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 하 세 정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편집위원

하 세 정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연구팀장 (편집장)
민 경 석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출판 총괄)
유 승 현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전문가의 눈)
장 광 남	공공기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심층동향)
송 신 형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해외동향)
서 영 빈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정책동향)
강 석 훈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기관장 인터뷰)
박 성 훈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전문가 좌담회)

※ 「KIPF 공공기관 이슈 포커스」의 모든 콘텐츠는
공공기관연구센터 홈페이지(<http://soe.kipf.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044-414-2204)

KIPF 공공기관 이슈포커스 | 2017 vol. 22

2017년 7월 5일 인쇄
2017년 7월 10일 발행

발행인 박 형 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대표)
<http://soe.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인 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ISBN 978-89-8191-878-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